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이지혜·이철희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연구보고서 2023-25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79-9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3.25>

발|간|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동은 유례없는 현상으로 장기화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된 지도 40년이 지났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아동수당은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보편적 현금 지원 제도이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고찰하며, 자료 분석과 일반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수당의 소요 재정을 추계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이소영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에서 이지혜 전문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과 원내 자문위원으로 큰 도움을 주신 이상정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인 입장임을 밝혀 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아동수당 및 국내 유사 정책	17
제2절 국외 아동수당	29
제3절 아동수당 평가 연구	46
제3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51
제1절 분석 개요	53
제2절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64
제3절 지원금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의 변화	94
제4절 소결	114
제4장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117
제1절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정책 개선 욕구	119
제2절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의 인식	175
제3절 전문가 의견	193
제4절 소결	201

제5장 아동수당 재정 전망	205
제1절 추계 방법	207
제2절 추계 결과	211
 제6장 결론	 227
제1절 결과 종합	229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240
 참고 문헌	 247
 부 록	 253
[부록 1]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 설문지	253
[부록 2]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설문지	264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69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21
〈표 2-2〉 아동수당 지급률 및 만족도	22
〈표 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례	22
〈표 2-4〉 독일의 아동수당 정책 변화	33
〈표 2-5〉 독일 아동수당 월 지급액	34
〈표 2-6〉 일본 아동수당 연도별 주요 내용	36
〈표 2-7〉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액	38
〈표 2-8〉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 관련 연소득 기준	38
〈표 2-9〉 프랑스 가족수당 소득 기준표 (2021년 소득 기준, 2023.12.31.까지 적용) ...	41
〈표 2-10〉 프랑스 가족수당 소득 기준표에 따른 월 가족수당 지급액 (2023.04.01.~ 2024.03.31. 까지 적용)	42
〈표 2-11〉 스웨덴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	44
〈표 2-12〉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2023년 아동수당	45
〈표 2-13〉 아동수당 관련 국내 연구	47
〈표 2-14〉 아동수당 관련 국외 연구	50
〈표 3-1〉 시군구 출산지원금 효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65
〈표 3-2〉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69
〈표 3-3〉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	70
〈표 3-4〉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71
〈표 3-5〉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72
〈표 3-6〉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74
〈표 3-7〉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76
〈표 3-8〉 기간별 시군구 출산지원금 효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	78
〈표 3-9〉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86
〈표 3-10〉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	87
〈표 3-11〉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89

〈표 3-12〉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90
〈표 3-13〉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92
〈표 3-14〉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93
〈표 3-15〉 2020년 지원금 규모별 시군구 출산지원금 효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96
〈표 3-16〉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106
〈표 3-17〉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분석	108
〈표 3-18〉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분석	110
〈표 3-19〉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분석	112
〈표 4-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온라인 실태 조사 내용	120
〈표 4-2〉 아동수당 수급 가구 온라인 실태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22
〈표 4-3〉 FGI 참여자의 특성	123
〈표 4-4〉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126
〈표 4-5〉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131
〈표 4-6〉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막내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33
〈표 4-7〉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0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34
〈표 4-8〉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1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36
〈표 4-9〉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2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38
〈표 4-10〉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3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39
〈표 4-11〉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4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41
〈표 4-12〉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5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43
〈표 4-13〉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6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44
〈표 4-14〉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7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146



〈표 4-15〉 생후 6개월 이후 아동수당을 수급한 경우 아동수당 수급 전후 자녀 양육비 지출 변화	149
〈표 4-16〉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인지 시기	151
〈표 4-17〉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	155
〈표 4-18〉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56
〈표 4-19〉 아동수당이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첫 아 동수당 수급 자녀 임신 전 아동수당 인지자	157
〈표 4-20〉 아동수당이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이후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58
〈표 4-2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 계획 시 아동수당의 긍정적 영향 여부	160
〈표 4-2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중복 응답)	164
〈표 4-23〉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도 및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	168
〈표 4-24〉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169
〈표 4-25〉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내용	176
〈표 4-26〉 신혼 무자녀 가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77
〈표 4-27〉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	180
〈표 4-28〉 신혼 무자녀 가구의 일반적 특성별 아동수당 정책 인지 정도	182
〈표 4-29〉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 특성별 아동수당 정책 인지 정도	183
〈표 4-30〉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의 영향에 대한 인식	185
〈표 4-31〉 신혼 무자녀 가구의 특성별 자녀 1인당 예상 양육비	188
〈표 4-32〉 신혼 무자녀 가구의 특성별 예상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	189
〈표 4-33〉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도 및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191
〈표 4-34〉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192
〈표 4-35〉 전문가 조사 문항	194
〈표 4-36〉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203

〈표 5-1〉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209
〈표 5-2〉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율: 2012~2022년	210
〈표 5-3〉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1	211
〈표 5-4〉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2	213
〈표 5-5〉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3	214
〈표 5-6〉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4	216
〈표 5-7〉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의 연령별 지급 금액	217
〈표 5-8〉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5	219
〈표 5-9〉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6	221
〈표 5-10〉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7	223
〈표 5-11〉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8	225
〈표 6-1〉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도 및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238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년	9
[그림 1-2] 연구 체계도	14
[그림 2-1] 2023년 중앙정부의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24
[그림 2-2] 시도의 출생 순위별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26
[그림 2-3] 시군구의 첫째아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27
[그림 2-4] 시군구의 둘째아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28
[그림 2-5] 시군구의 셋째아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29
[그림 3-1]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	66
[그림 3-2]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25~39세 다음 연도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67
[그림 3-3]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 출산율	67
[그림 3-4]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 출산율	68
[그림 3-5]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79
[그림 3-6]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81
[그림 3-7]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82
[그림 3-8]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84
[그림 3-9]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98
[그림 3-10]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100
[그림 3-11]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 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102

[그림 3-12]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 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104
[그림 4-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양육비	125
[그림 4-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130
[그림 4-3]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사용처	132
[그림 4-4] 0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34
[그림 4-5] 1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36
[그림 4-6] 2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37
[그림 4-7] 3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39
[그림 4-8] 4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41
[그림 4-9] 5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42
[그림 4-10] 6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44
[그림 4-11] 7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145
[그림 4-1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인지 시기	150
[그림 4-13]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의견 ...	152
[그림 4-14]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	154
[그림 4-15]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추가 자녀 계획	160
[그림 4-16]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164
[그림 4-17]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 정도	167
[그림 4-18]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	179
[그림 4-19]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 시기	181
[그림 4-20]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지원 정책 인지 정도	184
[그림 4-21]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한 인식	185
[그림 4-22]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의 영향에 대한 인식	186
[그림 4-23]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예상 양육비	187
[그림 4-24]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189
[그림 4-25]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 정도	190



[그림 4-26] 아동수당의 목적	195
[그림 4-27] 아동수당의 효과성	197
[그림 4-28] 아동수당의 적정 연령	198
[그림 4-29] 아동수당의 연령별 적정 금액	199
[그림 4-30]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책임 분담 비율 차이	200
[그림 6-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 목적에 관한 인식 · 230	
[그림 6-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자녀 1인당 실제 양육비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예상 양육비	232
[그림 6-3]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233
[그림 6-4]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 정도	235
[그림 6-5]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정부 적절 지원 금액	237



Abstract

Child Allowance as a Policy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in Korea

Project Head: Lee, So-Young

The child allowance was introduced to promote the basic rights and well-being of children 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of raising them. While child allowance has been promoted as a key countermeasure to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rigorous research on it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s still lack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debate on child allowance and identify ways to improve it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purpose of the child allowance, constructs a scenario that reflects the appropriate amount of support and the target population, conducts financial estimation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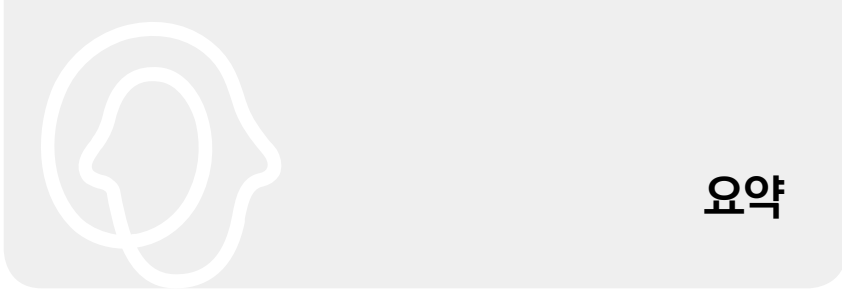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uture child allowance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arget and amount of the child allowance, with the ultimate goal of responding to the declining birth rate.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show that long-term support for children is needed, and this is expressed in the need to increase the age of eligibility for child allowance. If the child allowance is to fulfill its purpose as set out in Article 1 of the Child Allowance Act, i.e., to provide cash

Co-Researchers: Yi, Jihye · Lee, Chulhee

2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support to ensure children's basic rights and healthy development, it should be redesigned with a benefit amount and benefit period that are consistent with this. In addition, it should be expanded if it is to be an effective policy response to Korea's low fertility rate.

Keyword : child allowance, demographic change, low fertil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은 주된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엄밀한 실태 파악이나 개선 방안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나 잠재적인 수요자(예컨대 무자녀 부부 등)의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기반해 아동수당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래 아동 인구 전망에 기초하여 각 아동수당 개선 방안을 실현하는 데 소요될 재정지출 규모를 정확히 전망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아동 대상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본 아동수당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조사한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토대로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해 검토해 본다. 나아가 적정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관해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74.8%),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8.9%), ‘아동의 기본권 보장’(8.6%), ‘부모의 돌봄권(자녀를 돌볼 권리) 보장’(3.6%), ‘저출산 완화’(3.6%)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74.6%)이었다. 이어 ‘부모의 돌봄권 보장’(7.2%), ‘저출산 완화’(7.2%),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5.5%), ‘아동의 기본권 보장’(5.5%)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가지 목적 중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조사 결과를 요약할 때 체감하고 지향하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인 만큼 아동과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월평균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 기간은 대체로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연령대는 96% 이상이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초등학생 연령대는 87~92%, 중학생 이상 연령대는 77~ 82%가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적정 지원 금액은 평균 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아동수당의 적정 연령과 적정

지원 금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만 11세까지는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후 연령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정 금액은 0세부터 만 19세까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할 경우 평균적으로 월평균 약 18만 2천 원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요자 대상 조사 결과 지금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기존 자녀에 대한 혜택, 초·중고등학생 자녀까지 생각한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며, 이것이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의 욕구로 나타났다. 현재의 아동수당은 보편적이며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상징적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액과 급여 기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현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가 최근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결과는 아동수당 정책의 저출산 완화의 효과성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투입은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향후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령 기준, 정책 수요자가 기대하는 지원 연령, 전문가가 판단하

6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는 적정 연령을 감안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장기적으로 만 17세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은 단기적으로 현재 월 10만 원인 지급 수준을 적어도 월 20만 원 수준으로까지 증액해야 한다. 정책이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의 국제적인 급여 수준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결국 아동수당의 목적,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부담과 정책에 대한 욕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아동수당의 확대는 필연적인 경로이다.

주요 용어 : 아동수당, 인구 변화, 저출산 대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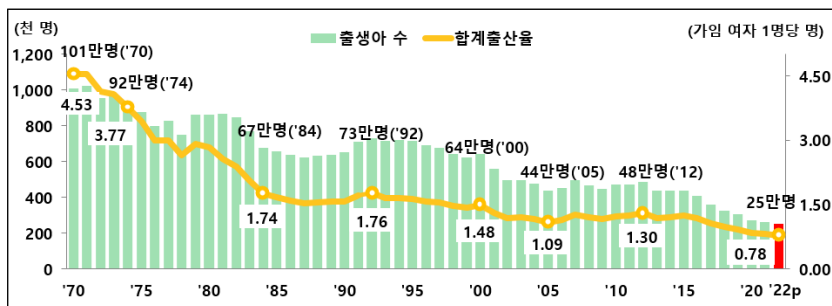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가임 기(15~49세)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회 현상이다. 1983년 합계출산율은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저출산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1.3명 이하로 하락하였고 2018년부터는 1.0명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여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2023)의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되며 고착화하고 있다.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2년



자료: 통계청 (2023). 2022년 출생 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6806에서 2023.9.2. 인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인구 변화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공식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동법 제20조를 토대로 2006년부터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이 추진되었고,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이 추진되었으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및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이 추진되었다.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20년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증가라는 기존의 목표 대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특히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관점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저출산 대책 영역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에서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비용 지원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초에서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에 대한 보편적 현금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되었고 2019년에는 지급 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 인정액 90% 이하의 만 5세 아동까지 지급되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했으며 2019년 9월부터는 만 6세까지, 2022년 1월부터 만 7세까지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2. 4.22.).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영아기 집중 투자’ 과제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대상 연령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은 주요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엄밀한 실태 파악이나 개선 방안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아동수당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축적되었지만 대부분 아동 빈곤이나 가구소득 분배에 미친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강지영, 2020;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출산 결정이나 아동 발달 등에 미친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엄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는 2022년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이다(고제이 외, 2022). 따라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나 잠재적인 수요자(예컨대 무자녀 부부 등)의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기반해 아동수당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래 아동 인구 전망에 기초하여 각 아동수당 개선 방안을 실현하는 데 소요될 재정지출 규모를 정확하게 전망하여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상자의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사용 사례,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며, 아동 대상의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아동수당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소요 재정을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 영역의 핵심 과제이자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의 추진 과제인 아동수당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이들 기본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계량 분석, 설문 조사, 초점 집단면접(FGI),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및 간담회, 재정 추계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아동수당 관련 논의 자료와 아동수당 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국외 아동수당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아동수당의 목표로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및 이를 통한 아동의 빈곤 해소와 건강한 성장 발달), 아동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출산을 제고, 인구의 질 향상(아동 투자) 등을 검토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기준과 지급액의 수준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량적인 분석과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식 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면접이 필요한 문항 중심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계량 분석을 통해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현금 지원 규모에 따른 출산을 제고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초지자체 출산

지원금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한계적인 효과가 지원금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현금 지원 규모를 모색하여 아동수당 개선 방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하고, 기초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의 성격, 자녀 수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추정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외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의 효과 및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수당 수급 가구 및 무자녀 가구 2,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아동수당 수급 경험이 있는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수급 현황, 아동수당 관련 사항(사용처, 양육비 지출 변화, 목적, 효과, 개선 사항, 만족도 등), 자녀 계획 관련 사항, 정책 욕구,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자녀가 없는 신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자녀 계획 관련 사항, 자녀 대상 현금 지원 정책 관련 사항(인지도, 목적, 적정 지원 금액 등), 응답자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이메일(E-mail)을 통한 서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문항은 아동수당의 목적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 아동 대상의 현금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추가로 아동수당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요자의 관점에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FGI)은 온라인 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자녀 양육 관련 사항과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에 대한 경험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자녀 양육 방식과 자녀 양육비,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 관련 사항과 각종 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방법과 사용처,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 및 개선점 등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는 온라인 실태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주양육자 중 심층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는 대상에게 다시 한 번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의 장래 소요 재정을 추계하였다. 최근(2021년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현행 제도 유지 시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지급액 및 지급 대상 조정) 적용 시 시나리오별 아동수당의 장래 소요 재정을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 추계는 2021년 12월 통계청 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연구 체계도

서론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의 배경	• 아동수당 및 국내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현황 • 국외 아동수당 사례 • 아동수당 평가 관련 선행 연구	문헌 분석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의 출산을 제고 효과 및 시기별 정책 효과의 차이 • 현금 지원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	계량 분석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 아동수당의 효과, 정책 욕구 •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대상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온라인 설문 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 (FGI)
	• 아동수당의 목적, 효과성,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조사
아동수당 재정 전망	• 온라인 조사, 전문가 조사, 국외 사례 분석,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별 향후 10년간 아동수당 소요 재정	재정 추계
결론	• 연구 결과 종합 및 정책 개선 방안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수당 및 국내 유사 정책

제2절 국외 아동수당

제3절 아동수당 평가 연구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수당 및 국내 유사 정책

1. 아동수당

가. 아동수당의 도입과 변화

아동수당은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의 하위 정책으로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4).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수당법은 2018년 3월 28일 제정되었고,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을 토대로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아동수당법에는 목적, 정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수급 아동의 사후 관리 등 아동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법 제1조 목적에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수당법 제1조, 2023). 즉 아동수당의 목적은 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②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③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인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 급여액은 도입 당시부터 2023년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변화가 없으며(부모급여나 영아수당 제외) 대상 아동의 소득 기준과 연령만 변화해 왔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보편적 급여가 아닌 선별적 급여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보편 지급으로 확대하였다(2019년 4월에 1~3월분 소급 적용하여 지급).

보편 지급으로 확대된 배경은 아동수당법 개정 이유에서 볼 수 있다. 개정 이유로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 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3). 즉 보편 지급으로 확대한 것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보다는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측면을 더 강조한 것이다.

대상 아동 연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 만 5세까지였으나 1년 후인 2019년 9월 만 6세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 4월부터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되었다. 대상 아동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 이유에서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3). 대상 아동 연령을 몇 살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나 논의가 없으나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을 기준으로 현재의 아동수당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아동수당의 현황(2023년)¹⁾

아동수당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나 가정 양육 여부, 취학 여부 등은 상관없다. 국적 요건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복수 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부터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아동수당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아무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이 보호자 계좌로 이체 되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한다.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방문 신청 시

1)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는 부모 교육(양육 방법)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등 홍보 자료를 배부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하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부모 교육 동영상은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계좌 이체)이 원칙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은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부모이면 아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소득 90% 이하 0~5세 아동 238만 명에서 2019년 소득 기준 없이 8월까지 6세 미만 아동,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총 247만 명, 2020년 7세 미만 아동 263만 5천 명, 2021년 7세 미만 아동 247만 2천 명, 2022년 8세 미만 아동 273만 2천 명, 2023년 8세 미만 아동 249만 9천 명이였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 증가 시 지원 대상 아동 규모가 증가하고,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출생아 수 감소로 지원 대상 아동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대상 아동 규모의 증감에 따라 총 예산도 변한다. 즉 2018년 7,096억 원에서 2019년 2조 1,627억 원, 2020년 2조 2,834억 원, 2021년 2조 2,195억 원, 2022년 2조 4,039억 원, 2023년 2조 2,564억 원으로 증가 및 감소하였다.

〈표 2-1〉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단위: 만 명, 억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아동수당 지원 대상	238	247	263.5	247.2	273.2	249.9
아동수당 예산	7,096	21,627	22,834	22,195	24,039	22,564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다. 아동수당의 성과 관리

아동수당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및 성과 평가에서 볼 수 있는데, 성과 지표로 아동수당 지급률과 아동수당 만족도 두 가지를 이용하여 관리한다(대한민국 정부, 2022). 아동수당 지급률은 매년 연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한 아동의 비율로, 2020년과 2021년, 2022년의 지급률은 각각 97.2%, 97.7%, 97.5%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수당 대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당초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며, 출생아동이나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우편물,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만족도가 74.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21년, 2022년에는 만족도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경덕 외, 2023). 이는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동일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아동수당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22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표 2-2〉 아동수당 지급률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동수당 지급률	-	-	97.2	97.7	97.5
아동수당 만족도	71.4	71.5	74.6	73.0	73.0

주: 1) 지급률은 대상 연령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자 수/대상 연령 주민등록인구(연말 기준) * 100임.
2) 만족도는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1) 2018~2020년: 장인수, 정찬우, 이소영, 이도훈, 김세진. (2021). 2020년도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21년: 이소영, 장인수, 이철희, 고은아, 김세진, 김은정, ... 최선영. (2022)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및 심층평가 모델개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 보건사회연구원.
3) 2022년: 최경덕, 이소영, 장인수, 황남희, 오신휘, 최인선. (2023). 2022년도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아동수당 관련 입법 사례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아동수당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아동수당의 대상은 12세 미만, 13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금액에서는 연령과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등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례

발의 연도	대표 발의자	아동수당 관련 내용
2021년	고영인 의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18세 미만으로 확대
	허종식 의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8세 미만으로 확대
	이규민 의원	(아동수당 금액 확대) 2세 미만 월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 원 지급
	유기홍 의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13세 미만으로 확대; 1세 미만에게 월 50만 원, 1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 원
	이해식 의원	(아동수당 재원) 재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
	이종성 의원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보호자 교육 증명 서류 첨부 의무화

발의 연도	대표 발의자	아동수당 관련 내용
2022년	전용기 의원	(아동수당 금액 확대) 1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및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
	김희재 의원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12세 미만으로 확대; 둘째아 매월 5만 원, 셋째 이상 매월 10만 원 추가 지급
	허종식 의원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023년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13세 미만으로 확대; 매월 20만 원 지급; 2세 미만 매월 80만 원 추가 지급
	박성준 의원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18세 미만으로 확대; 매월 30만 원 지급, 둘째아 매월 40만 원, 셋째 이상 매월 70만 원 추가 지급
	김태년 의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을 포함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의안 현황 (<https://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32&cntsDivCd=BILL>) 2023.9.2. 인출 자료를 토대로 정리.

2. 아동수당 유사 정책 사례

가. 중앙정부의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아동수당 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보육료 및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다. 부모급여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아동 대상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이와 같은 아동 대상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 중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가장 넓지만 아동수당도 만 7세까지만 한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지원하고 있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 원으로 비교적 적다.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연령 증가 시 대체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다.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는 보육(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어린 자녀일수록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학령기로 진입하면 보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무상 교육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고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1] 2023년 중앙정부의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		연 200만 원							
부모급여	보육 시설 미이용	월 70만 원	월 35만 원						
	보육 시설 이용	월 51.4만 원 (바우처)+ 월 18.6만 원 (현금)	월 51.4만 원 (바우처)						
보육료 및 유아학비	(택1)			월 37.5만 원	월 28만 원				
가정양육 수당 (0~85개월, 취학 전)				월 10만 원					
+α		지자체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등							

주: 방과후 과정, 농어촌, 장애아동 등 추가 지원은 제외한 기본 지원 금액 기준임.
자료: 필자 작성.

나. 지방자치단체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²⁾

2022년 현재 지방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아동 대상 정책은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지원금, 출생축하금, 양육기본수당, 육아기본수당, 행복키움수당, 출산축하쿠폰, 육아지원금 등을 출생 시점이나 출생 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출산(출생)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 육아, 입양에 대한 지원금, 축하금, 장려금 명칭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 일시금과 분할금 혼합, 분할금 등이며, 지급 횟수도 1~78회까지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현재 11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제주)이다. 충북, 전남, 경남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2년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이 도입됨에 따라 2021년 추진했던 영유아 대상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일몰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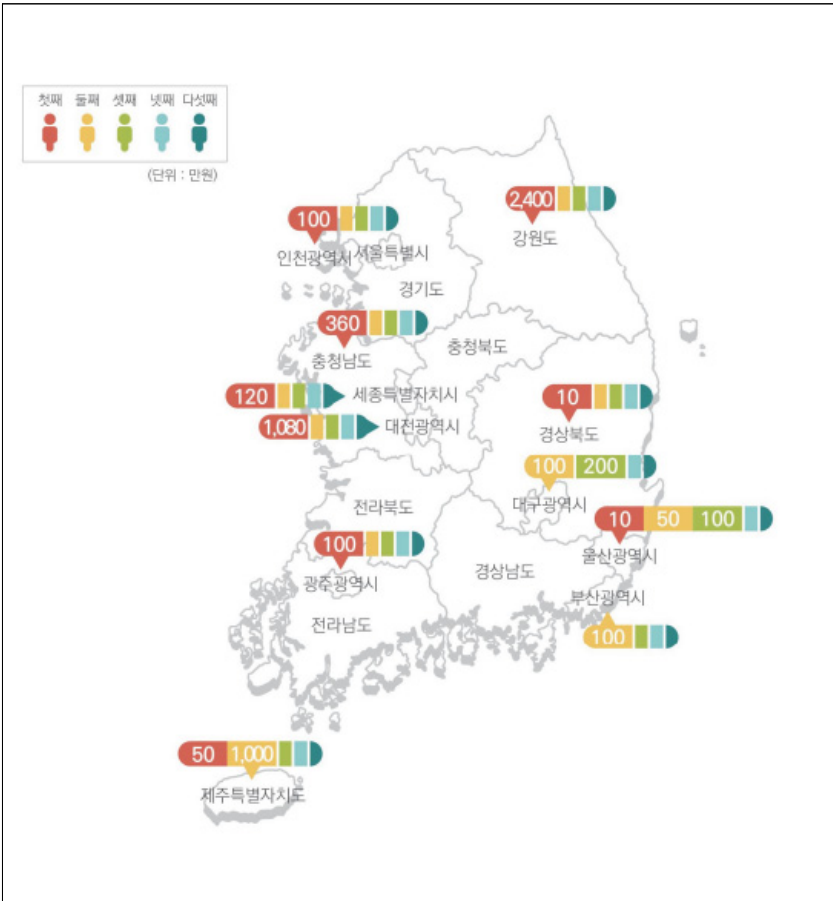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2022년 기준 시도별 지원금 규모를 출생 순위별로 보여준다. 지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첫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상북도와 첫째아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울산광역시이다. 가장 지원금의 규모가 큰 지역은 첫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2,400만 원을 지급하는 강원도이다.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와

2) 지방자치단체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a).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6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부산광역시이다. 대구광역시는 둘째아에게 10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는 둘째아 이상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림 2-2] 시도의 출생 순위별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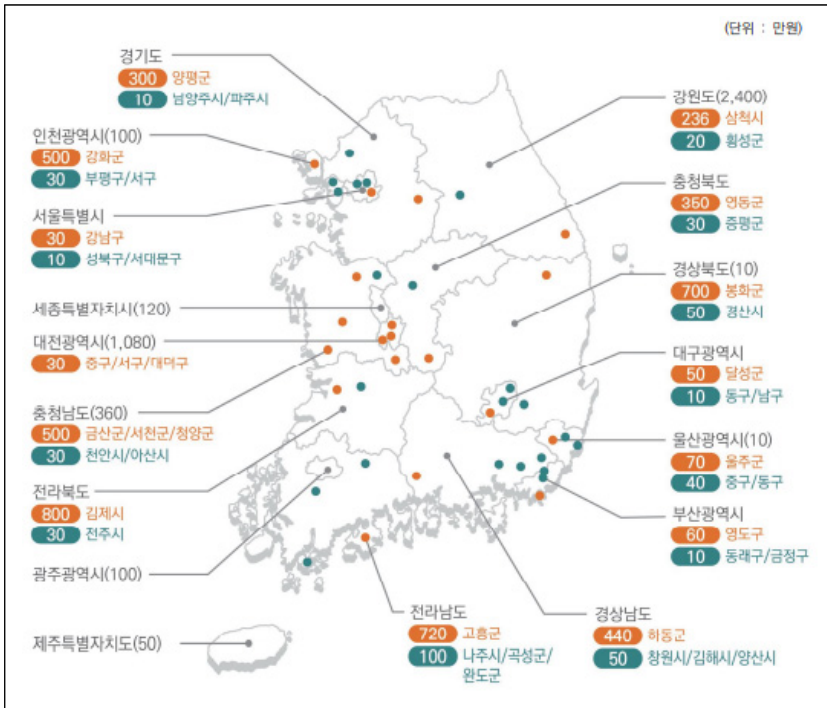


주: 지원금 미지급 지역 미제시, 출생 순위별 동일 금액 지급 시 상위 출생 순위만 지원 금액 표기.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2023a).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 337.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출생 순위에 따라 현금을 지원한다. 첫째

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시군구는 2022년 기준 161개이다. 지급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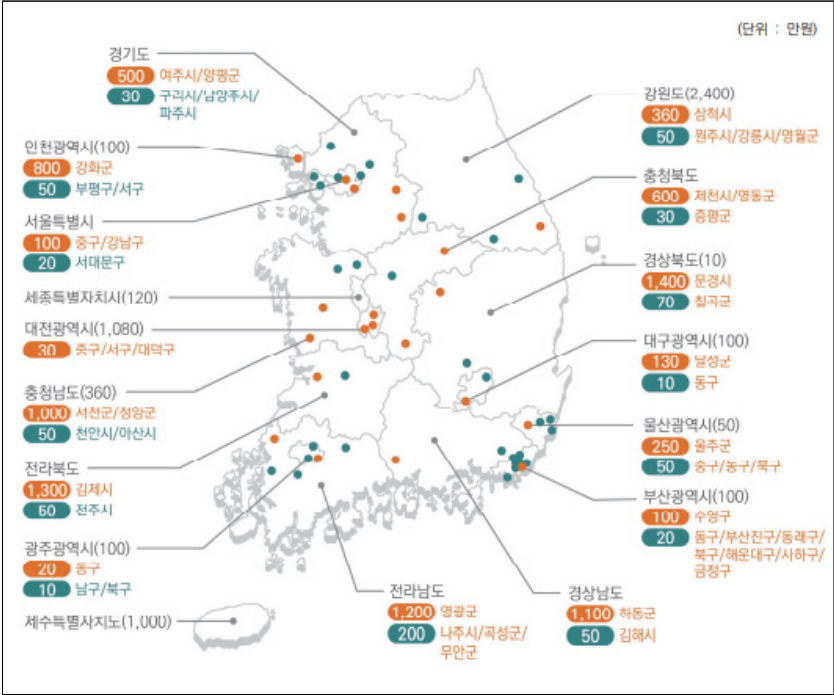
[그림 2-3] 시군구의 첫째아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2023a).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 345.

2022년 현재 180개 시군구에서 둘째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400만 원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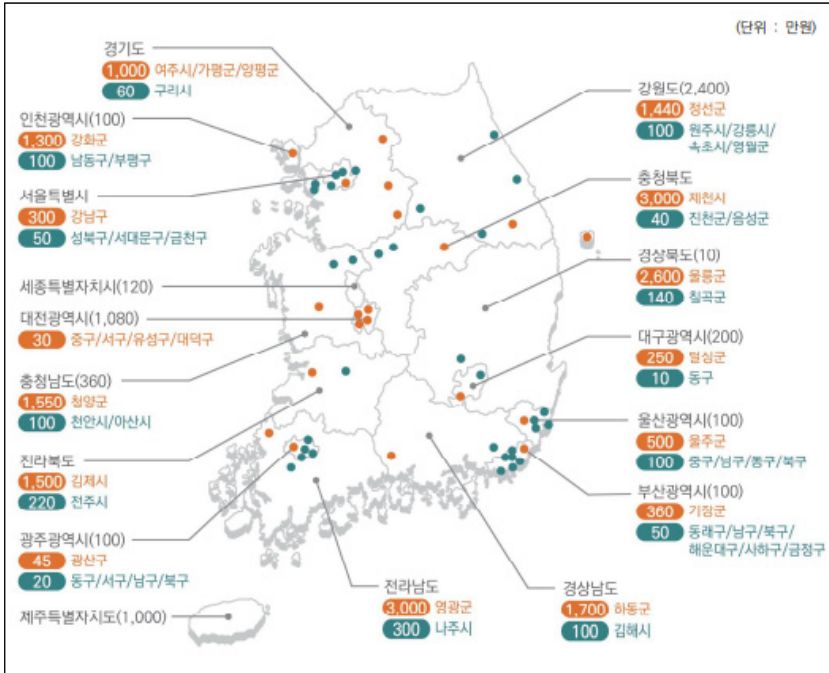
[그림 2-4] 시군구의 둘째아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2023a).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 346.

셋째아의 경우는 198개 시군구에서 1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넷째아는 202개 시군구에서 1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림 2-5] 시군구의 셋째아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 규모(2022년)



자료: 17개 광역 및 시도청(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내부 자료; 보건복지부, (2023a),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p. 347.

제2절 국외 아동수당

1. 국외 아동수당의 개요

가. 목적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저임금 빈곤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유럽 국가들은 자녀가 많은 노동자 가구의 임금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부가급부 방식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은 1926년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이어 벨기에(1930년), 프랑스(1932년), 캐나다 및 영국(1934년), 스웨덴(1948년)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이소영 외, 202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국가의 아동수당은 가구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부터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보전, 출산 장려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 중인 아동수당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와 권리(아동의 생존권 등)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 빈곤 감소, 소득 재분배,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 통합, 출산 장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최영, 2017).

나. 국외 아동수당의 유형³⁾

대부분의 OECD 국가는 16세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 대상(연령 등), 아동수당 지원 수준(지급액), 재원 조달 방식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2015)에 따르면 ILO 회원국 183개국 중 법률에 의거하여 아동가족 관련된 수당을 운영하는 국가는 총 108개국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기여, 고용 연계, 자산 조사 등의 여부에 따라 아동가족 관련 수당을 5개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기여를 기반으로 고용 관련 체계로 운영되는 유형, 기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유형, 기여를 기반

3) 최영(2017). 세계 각국 아동수당 제도의 성격 및 유형(p.11~12)을 요약함.

으로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수당으로 지원하는 유형, 고용 관련 체계로 운영하며 보편적인 수당으로 지원하는 유형, 고용 관련 체계로 운영하며 자산 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기여를 기반으로 고용 관련 체계로 아동수당을 추진하는 국가는 32개국(18%)이다. 기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추진하는 국가는 32개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수당으로 아동수당을 추진하는 국가는 26개다. 고용 관련 체계로 운영하며 보편적인 수당으로 아동수당을 추진하는 국가는 1개국이고, 고용 관련 체계로 운영하며 자산 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17개국이다. 나머지 75개 국가는 국가 법률로 아동 가족수당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사회부조의 성격으로 운영되거나 아동을 특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 사회 보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 다른 유형화는 사회보장 제도(Social Security Programs)의 유형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세계 사회보장 프로그램(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6)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을 보편주의 유형, 사회부조 유형, 고용 연계 유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편주의 유형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해당 국가는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다. 사회부조형은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기반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유형은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다. 고용 연계 유형은 근로자의 고용 상태(status)를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임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수당을 지급한다. 해당되는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다.

2.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

이하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과 일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이 촘촘하게 설계된 프랑스, 인구 위기를 겪고 출산율을 반등시킨 스웨덴에서 추진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인 수당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다.

가. 독일

1) 도입 배경 및 주요 변화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아동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직접적인 현금 이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으며(Rainer et. al., 2012), 1954년 구서독(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 추진한 아동수당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Böhmer, Matuschke, & Zweers, 2008). 처음 도입될 당시 아동수당의 급여액은 25마르크(약 13유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64년 이전까지 재원은 사회보험급여 방식으로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서 각출했고 이후로는 연방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Rainer et. al., 2012).

아동수당 정책은 약 4단계에 걸쳐 변화하였다. 1단계인 1954년에서 1974년까지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 체계였다. 1974년 아동수당 개혁으로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자녀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아동수당만 지급되었다. 3단계인 1983년부터 1995년까지는 듀얼 체계가 재도입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1986년에는 부모 수당의 전신인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이 도입되었다. 마지막 1996년부터 시작된 4단계에서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되며 자녀세액공제는 주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Rainer et. al., 2012).

〈표 2-4〉 독일의 아동수당 정책 변화

구분	내용
1단계 (1954~1974)	- 듀얼 체계(Duales System) →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 동시 적용
2단계 (1975~1982)	- 아동수당만 지급/자녀세액공제 한시적 폐지(1974년의 아동수당 개혁으로 인한)
3단계 (1983~1995)	- 듀얼 체계(Duales System) 재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아동수당 도입(Kindergeldzuschlag) - 1986년에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육아수당(Erziehungsgeld) 도입 → 부모 수당(Elterngeld)의 전신
4단계 (1996~현재)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선택하게 됨. -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점차 증액 - Kindergeld(아동수당)과 Kinderfreibetrag(자녀세액공제) 여부는 Finanzamt(세무국)에서 부모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 후 자동으로 결정됨. 자녀세액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함.

자료: Rainer et al. (2012). Kindergeld (No. 60). ifo Forschungsberichte. pp. 14~17 내용 요약.

2) 아동수당의 현황⁴⁾

2023년 현재 독일 아동수당은 태어날 때부터 최소 18세까지, 최대 25세까지 지급한다. 아동이 성장하여 취직하면 18세까지만 지급하고 취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21세까지,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거나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지급한다. 장애가 있으면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25세 이후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 제출 시에는 아동수당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거주지의 가족기금(Familienkasse)에

4) 2023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은 <https://www.kindergeld.org> 사이트 내용을 정리함.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제출 시에는 연방 고용청(Bundersagemtur fur Arbei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자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자녀의 세금 식별 번호(세금 ID)를 반드시 기재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총 6개월분까지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누락분은 출생 후 4년 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하여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6개월분이다.

지급액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왔다. 2021년에는 둘째자녀까지 월 219유로, 셋째자녀 월 225유로, 넷째 이상 자녀는 월 250유로를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월 250유로로 상향되었다.

〈표 2-5〉 독일 아동수당 월 지급액

	202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첫째, 둘째자녀	250유로	219유로	204유로
셋째자녀	250유로	225유로	210유로
넷째 이상 자녀	250유로	250유로	235유로

자료: 독일 아동수당 관련 웹사이트(<https://www.kindergeld.org/>). 2023.6.2. 인출.

고소득층에 유리한 자녀세액공제(Kinderfreibetrag)는 2023년부터 연간 8,952유로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 보너스수당(Kinderzuschlag)은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자녀 한 명당 최대 월 250유로이나 부모 소득이나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나. 일본⁵⁾

1) 도입 배경 및 주요 변화

일본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과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1971년 「아동수당법」을 제정하고 1972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전일주, 최영진, 2015). 이 당시 아동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의 5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월 3,000엔을 지급하였으나 1971년 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전일주, 최영진, 2015). 재원은 피용자(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70%, 국가 2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고 비피용자(자영업자 등)는 2/3를 국가가, 1/3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다(전일주, 최영진, 2015). 1982년에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노령복지연금의 소득 제한 수준까지 강화하면서 소득 제한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례 급부 소득 한도액 미만인 경우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례 급부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였다(전일주, 최영진, 2015). 이후 일본의 아동수당은 재원의 한계로 지급 대상 아동 및 지급액은 확대하는 반면 지급 대상 연령을 변경하여 둘째자녀까지 확대되었고 아동수당 금액도 일부 확대하였으나 대상 아동 연령은 확대되다가 다시 축소(전일주, 최영진, 2015)되는 등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1988년부터 아동수당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5) 도입 배경 및 주요 변화는 전일주, 최영진(201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지급 대상, 신청 방식, 금액 등)은 2023.06 기준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8.cao.go.jp/>)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제한도 완화하는 등 아동수당이 확대되었고 2007년 아동수당 개정법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세 미만 영유아 수당을 증액하였다(전일주, 최영진, 2015). 이후 2009년 정권 교체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자녀수당법을 도입하여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 자녀의 연령과 수당 금액을 확대하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다시 아동수당으로 회귀하여 소득 제한을 부활시켰다(전일주, 최영진, 2015). 2012년 4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2023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없을 시 지급하는 월 5,000엔의 특례 급부의 경우 2022년 6월분(10월 지급분)부터는 소득 상한액을 두어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액 미만일 때만 지급하고 소득 상한액 이상이면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표 2-6〉 일본 아동수당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1972	- 대상: 일정 소득 이하의 5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 - 금액: 월 3,000엔 - 비용 부담: 피용자(근로자)는 사업주가 7/10, 국가가 2/10, 지방자치단체가 1/10 부담, 비피용자(자영업자 등)는 국가가 2/3, 지방자치단체가 1/3 부담
1973	- 10세 미만으로 연령 확대
1974	- 의무교육 수료 전, 월 4,000엔으로 연령과 금액 확대
1975	- 월 5,000엔으로 금액 확대
1982	- 소득 제한 강화 - 특례 급부 도입(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 사업주 전액 부담)
1986	- 2세 미만 둘째자녀, 의무교육종료전 셋째 이상 자녀로 둘째자녀로 대상 확대 - 둘째자녀는 월 2,500엔, 셋째 이상 자녀 월 5,000엔
1987	- 4세 미만 둘째자녀, 9세 미만 셋째 이상 자녀로 둘째자녀는 연령확대, 셋째자녀는 연령 축소
1988	- 의무교육 종료 전 둘째 이상 자녀로 연령 확대
1991	- 3세 미만 아동(첫째자녀까지 대상 확대하였으나 연령 축소) - 둘째 이하 자녀는 월 5,000엔, 셋째 이상 자녀는 월 10,000엔으로 증액
2000	- 의무교육 취학 전으로 지급 대상 아동 확대
2001	- 소득 제한 완화
2004	- 초등학교 3학년 수료 전으로 지급 대상 아동 확대

연도	주요 내용
2006	- 초등학교 수료 전으로 지급 대상 아동 확대 - 소득 제한 완화 - 비용 부담 비율 변화: 피용자는 사업주 7/10, 국가 1/10, 지방자치단체 2/10, 비피용자는 국가 1/3, 지방자치단체 2/3로 변경 (특례 급부는 비용 부담 변경 없음)
2007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세 미만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월 10,000엔으로 수당 증액
2010.4	- 자녀수당으로 변경 - 대상: 중학교 수료 전 자녀 (소득 제한 없음) - 금액: 월 13,000엔 - 비용 부담: 아동 수당분의 비용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 규정에 따라 부담,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
2011.10~ 2012.3	- 3세 미만 자녀, 셋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자녀는 월 15,000엔 -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둘째 이하 자녀, 중학생 자녀는 월 10,000엔 - 유학을 제외하고 일본 국내 거주하는 경우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요건 강화
2012.4~	- 아동수당으로 복귀 - 대상: 일정 소득 이하(소득 제한 부활) 중학교 수료 전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유학 중인 경우 국내 거주 예외로 간주하여 지급) - 금액: 3세 미만 자녀, 셋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자녀는 월 15,000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둘째 이하 자녀는 월 10,000엔, 중학생과 소득 제한을 넘는 경우(특례 급부) 월 5,000엔 - 비용 부담: 피용자는 0~3세 미만은 사업주 7/15, 국가 16/45, 지방자치단체 8/45, 피용자 3세 이상 중학교 수료 전과 비피용자는 국가 2/3, 지방자치단체 1/3

자료: 전일주, 최영진 (2015). 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23(2), pp. 181~196
을 토대로 작성함.

2) 아동수당의 현황

2023년 기준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출생 후 중학교 졸업까지 (15세의 생일 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다. 기본적으로 아동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만 유학을 위해 해외에 살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출생이나 전입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 시구청촌으로 신청하며, 신청 지연 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인 시구청촌이 아닌 근무처로 신청하고 근무처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일본 아동수당 금액은 3세 미만인 경우 월 1만 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 엔이다. 다만 3세부터 초등학교 수료 전까지 연령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인 경우 월 1만 5천 엔을 지급한다. 수당은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월, 2월에 전월 수당까지 지급한다. 즉 6월에 2월에서 5월까지의 수당이 지급되고, 10월에 6월에서 9월까지, 2월에 10월부터 1월까지의 수당이 지급된다.

〈표 2-7〉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액

아동 연령	아동수당액(1인당 월액)
3세 미만	일률 15,000엔
3세 이상~초등학교 수료 전	10,000엔 (셋째 이상 자녀는 15,000엔)
중학생	일률 10,000엔

주: 셋째 이상 자녀는 양육 자녀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18세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의미함.

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 2023.6.2. 인출.

양육자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이고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급부금 월 5천 엔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표 2-8〉 일본의 아동수당 지급 관련 연소득 기준

(단위: 만 엔)

부양 친족 등의 수	①소득 제한 한도액		②소득 상한 한도액	
	소득 제한 한도액	수입액의 기준	소득 상한 한도액	수입액의 기준
0명 (전년도 말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622	833.3	858	1,071
1명 (자녀 1명의 경우 등)	660	875.6	896	1,124
2명 (자녀 1명 + 배우자 연소득 103만 엔 이하 등)	698	917.8	934	1,162

부양 친족 등의 수	①소득 제한 한도액		②소득 상한 한도액	
	소득 제한 한도액	수입액의 기준	소득 상한 한도액	수입액의 기준
3명 (자녀 2명 + 배우자 연소득 103만 엔 이하 등)	736	960	972	1,200
4명 (자녀 3명+배우자 연소득 103만 엔 이하 등)	774	1,002	1,010	1,238
5명 (자녀 4명+배우자 연소득 103만 엔 이하 등)	812	1,040	1,048	1,276

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 2023.6.2. 인출.

그러나 일본의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시다 정부가 2023년 6월 아동미래전략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2024년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하며, 셋째 이상 자녀는 월 3만 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2023.6.13., *こども未来戦略会議*).

다. 프랑스6)

1) 도입 배경 및 주요 변화

프랑스의 오늘날과 비슷한 가족수당은 20세기 이후 고용주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나(노대명 외, 2018: 319; 손동기, 2022)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되어 1930년대에는 임금 정책이 아닌 가족 정책으로 전환되었다(손동기, 2022). 1932년부터 고용주가 가족이

6) 프랑스의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https://expat-in-france.com/child-benefit-in-france/>, <https://www.welcometofrance.com/en/fiche/family-allowances>, 노대명·김대중·김영아·김은경·나병균·박찬용·박혜미·신윤정·심창학·이성애·봉인식(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있는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고용주가 지불하던 특별수당은 1939년 「가족법」 제정과 1945년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철폐되고(노대명 외, 2018: 320; 손동기, 2022)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도입되어 특별수당이 가족 보조금으로 대체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가족수당 도입 초기에는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과 미혼 또는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가족 간 생활 수준의 차이가 없도록 수평적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만 지급되었고 재원은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에 기초하였으며, 급여는 자녀 수와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적이었다(노대명 외, 2018: 320). 이후 1967년 홀벌이 수당 개혁(Allocation de Salaire Unique)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선별적 개념이 도입되었고, 1972년 자녀양육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을 마련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0). 이 시기에 선별적 수당으로 고아수당, 장애수당, 개학수당, 한부모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만들어짐에 따라 1977년 이를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홀벌이 수당, 가정주부수당, 자녀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5가지 수당을 가족 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창설하여 대체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1). 1984년에도 자녀 및 가족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노대명 외, 2018: 321). 이후 보편적으로 지급하던 가족수당에 대해 1997년 조스팽 정권이 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결정하였으나 선별적 복지는 가족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 1998년 철폐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1). 2015년에는 사회보장재정법을 개정하여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급여액은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3).

2) 아동수당의 현황

프랑스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 Af)은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되며, CAF(가족수당기금공단)에 등록되어 있다면 둘째자녀 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소득 제한은 없으나 지급액은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14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그리고 자녀가 20세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면 20세가 되는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 이상인 경우 21세 생일 전 달까지는 정액 수당을 받게 된다. 2023년 가족수당은 2021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수별, 과세 구간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9〉 프랑스 가족수당 소득 기준표 (2021년 소득 기준, 2023.12.31.까지 적용)

부양 자녀 수	과세 구간 1	과세 구간 2	과세 구간 3
2명	€ 71,194 이하	€ 94,893 이하	€ 94,893 초과
3명	€ 77,126 이하	€ 100,825 이하	€ 100,825 초과
4명	€ 83,058 이하	€ 106,757 이하	€ 106,757 초과
추가 아동당	+ € 5,932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 관련 웹사이트. (https://expat-in-france.com/child-benefit-in-france/#Family_allowance) 2023.6.2. 인출.

프랑스의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자녀가 많을수록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두 자녀인 경우 가구소득에 따라 최소 월 35.5유로(약 5만 원)에서 최대 월 141.99유로(약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세 자녀인 경우에는 최소 월 80.98유로(약 11만 5천 원)에서 최대 월 323.91유로(약 46만 원)가 지급된다. 네 자녀 이상이면 세 자녀 가족수당 금액에 자녀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14세 이상일 때는 자녀 수별, 소득별 가족수당 금액에 추가로 일정 금액이 더 지급된다.

〈표 2-10〉 프랑스 가족수당 소득 기준표에 따른 월 가족수당 지급액 (2023.04.01.~ 2024.03.31.까지 적용)

부양 자녀 수	과세 구간 1	과세 구간 2	과세 구간 3
2명	€ 141.99	€ 71	€ 35.50
3명	€ 323.91	€ 161.95	€ 80.98
추가 아동당	€ 181.92	€ 90.97	€ 45.49
14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	€ 71	€ 35.50	€ 17.76
20세 자녀 수당	€ 89.78	€ 44.89	€ 22.45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 관련 웹사이트. (https://expat-in-france.com/child-benefit-in-france/#Family_allowance) 2023.6.2. 인출.

가족수당은 소득 제한은 없으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외에 영아환영수당(PAJE) 등 자녀 관련 다양한 수당이 있으며 한 자녀일 때는 대체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영아환영수당의 경우 출산 및 입양수당, 기본수당, 보육 관련 수당이 있다. 영아환영수당 중 기본수당은 자녀가 3세 전까지 매달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84,81유로 또는 월 92,40유로를 받을 수 있다.

라. 스웨덴

1) 도입 배경 및 주요 변화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1937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스웨덴 사회에서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문제 해결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다(이용복, 2004). 이후 1948년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Lag (1947:529) om allmänna barnbidrag)」이 제정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유해미, 박은정, 홍희정, 신윤정, 송신영, 2021). 1982년에는 다자녀 가족 보조금이 도입되었으나 1990년대에 보수 정권이 집권하며 사회복지 비용을 축소하여 아동수당도 축소되고 다자녀 가족 보조금도 폐지되었다(유해미 외, 2021). 그러나 1998년 정권 교체로 아동수당이 인상되었고 다자녀 가족 보조금도 부활하였으며, 이후 보편적 복지 관점의 아동수당이 유지되면서 금액도 인상되고 있다(유해미 외, 2021).

2) 아동수당의 현황⁷⁾

2023년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보편적 아동수당의 경우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16세 이상이지만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가 대상이며, 보호자와 자녀 모두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⁸⁾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 자동으로 매달 지급된다. 자녀가 16세가 되면 아동수당이 종료되고 학생수당이나 연장 아동수당으로 변경되는데, 자녀가 16세가 되면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자녀수당 대신 학생수당을 받는다. 자녀가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면 아동수당이 연장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 아동수당을 받는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아동수당이나 학생수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자녀 수당을 받게 된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과 다자녀

7)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https://www.forsakringskassan.se/>)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8) 보호자와 자녀가 스웨덴에 거주하고 스웨덴 시민권 또는 거주 허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스웨덴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수당이 보호자 2명에게 각각 반씩 지급되며, 그 이전 출생 자녀는 보호자 중 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변경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스웨덴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250크로나로 약 15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 수당이 있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아동수당과 다자녀 추가 수당을 합한 전체 금액을 자녀 1인으로 환산한 금액은 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금액도 더 커진다. 아동수당이나 다자녀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표 2-11〉 스웨덴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

(단위: SEK)				
자녀 수	아동수당	다자녀 추가 수당	합계	(자녀 1인 환산)
1	1,250	-	1,250	(1,250)
2	2,500	150	2,650	(1,325)
3	3,750	730	4,480	(1,493)
4	5,000	1,740	6,740	(1,685)
5	6,250	2,990	9,240	(1,849)
6	7,500	4,240	11,740	(1,957)

주: 1) SEK는 스웨덴 화폐 단위인 크로나이며 2023.9.26. 기준 1크로나는 약 122.5원임(환율은 네이버 웹사이트 검색).

2) 자녀 1인당 환산 금액은 필자가 아동수당과 다자녀 추가 수당 합계 금액을 자녀 수로 나눈 값임.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2023.9.26. 인출.

마. 소결

앞서 살펴본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2023년 기준 아동수당의 대상과 월 지급액은 〈표 2-12〉와 같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일본과 스웨덴이 대체로 중학교 연령까지이며 독일은 18세 이하(미취업 시 21세까지, 대학이나 직업교육 시 25세까지), 프랑스는 20세 미만(세자녀

이상, 미취업 시 21세 미만)이다. 다만 스웨덴은 16세 이상 고등학생에게는 아동수당 대신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에 따라서는 스웨덴만 완전히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고 독일과 일본, 프랑스는 소득 기준이 있거나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일본은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저소득인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고소득인 경우 아동수당 대신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가족수당 금액에 차이가 비교적 커서 저소득과 고소득 간 약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과 프랑스, 스웨덴은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본은 셋째 이상 자녀인 경우 3세에서 초등학교 수료 전 자녀는 월 5천 엔을 추가로 지급한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자녀 1인당 수당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

〈표 2-12〉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2023년 아동수당

구분	독일	일본	프랑스(가족수당)	스웨덴
대상	- 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 소득 기준 없음	- 중학교 졸업까지 - 소득 기준 있음	-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 - 소득 기준 없음	- 16세 미만 - 소득 기준 없음
월 지급 금액	- 월 250 유로 * 저소득인 경우 아동보너스수당 추가 지급	- 연령별, 출생 순위별 차등 - 3세 미만: 월 1만 5천 엔 - 3세 이상: 월 1만 엔 * 3세~초등학교 수료 전 셋째 이상 월 1만 5천 엔	- 가구소득, 자녀 수별 금액 차등(자녀 수에 비례하지 않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 지급) - 두 자녀는 소득에 따라 월 35.5유로~ 월 141.99유로, 세 자녀는 월 80.98유로 에서 월 323.91유로 등	- 월 1,250크로나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 수당 별도 지급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수 비례 금액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이 추가됨)
기타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 하나만 적용됨	- 아동수당 수급 가능 소득 이상~일정 소득 미만은 특별 급부금 지급(월 5천 엔)	- 14세 이상 자녀 추가 지원	- 16세 이상 고등 학교 재학 시 학생 수당으로 변경

자료: 독일은 <https://www.kindergeld.org>, 일본은 <https://www8.cao.go.jp>, 프랑스는 https://expat-in-france.com/child-benefit-in-france/#Family_allowance, 스웨덴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제3절 아동수당 평가 연구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되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추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평가한 실증적인 연구 규모는 제한적이다. 아동수당 도입 전에 수행된 연구는 주로 아동수당의 기대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남상호, 2018; 이경희, 민인식, 2018; 정은희 외, 2018; 정찬미, 2017). 특히 정은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아동 가구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책 효과 분석과 모의실험 분석을 통해 불평등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불평등 완화 수준은 정책에 따라 달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추가로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와 OECD 사회지출통계(SOCX) 자료를 이용한 국제 비교 결과는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가 아동 빈곤율 감소 수준이 높으나, 국가별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이를 평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나 빈곤에 미친 영향,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 소비나 지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여러 연구에서 아동수당이 가구소득 증가나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강지영, 2020; 김미곤 외, 2019; 이영숙 외, 2021).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미곤 외(2019)의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아동 빈곤율과 빈곤 겹 감소 효과가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회귀분석을 수행한 강지영(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빈곤의 완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에 수

행된 아동수당 사례 연구인 이영숙 외(2021) 연구에서는 2015~2017년 가계동향조사 및 2015~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 결과 아동수당이 빈곤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아동수당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2017~2019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노동패널 자료 보조적으로 활용)를 이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남재현(2021)의 연구에서 아동수당 수급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소득을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효과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수당이 가구의 소비나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영, 전용, 안서연, 2020; 이래혁, 남재현, 2020). 강지영 외(2020)의 연구에서는 2018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 회귀분석과 표면상 무관회귀분석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지출 빈곤 및 엔젤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엔젤지수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이래혁과 남재현(2020)의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지출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소득을 감소시켰는데 이러한 아동수당 효과의 크기는 아동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평가를 수행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2-13〉 아동수당 관련 국내 연구

선행 연구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김미곤 외 (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 지원 방안 모색	- 문헌 고찰 - 국의 사례 고찰 - 계량 분석 - FGI 등
강지영 (2020)	아동수당이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 안정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회귀분석

48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선행 연구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강지영·전용·안서연 (2020)	•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2018~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회귀분석과 표면상 무관회귀분석을 결합하여 분석
이래혁·남재현 (2020)	•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7년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 연간 지출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
남재현 (2021)	• 아동수당 제도가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7~2019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노동패널 자료 보조적으로 활용)를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
이영숙 외 (2021)	• 아동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찰과 주요국의 아동수당 사례 연구를 통해 아동 대상 현금 급여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 문헌 고찰 • 2015~2017년 가계동향조사 및 2015~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

국외에서는 아동에 대한 현금 수당 제도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캐나다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과 보편적 아동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폴란드 아동수당(Family 500+), 러시아 아동수당(Child Subsidy)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수행되었다. 우선 1974년 캐나다 퀘벡 지역의 가족수당 확대(60 캐나다 달러에서 240 캐나다 달러로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Parent and Wang(2007)의 연구에서는 1976년, 1981년(단기 비교), 1986년과 1991년(장기 비교) 캐나다 공공 이용 마이크로 데이터 가족과 개인 자료와 출생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DiDiD 분석을 통해 캐나다의 가족수당 금액이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출산율이 증가되었는데 특히 높은 출산 순위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보편적 아동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수급이 기혼 남녀의 경제활동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Schirle(2015)의 연구는 2003~2009년 캐나다 경제활동조사(Canadian Labou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캐나다의 보편적 아동양육수당(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이 기혼 남녀의 경제활동

(노동 공급, 주당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만 효과의 정도는 학력별, 성별에 따라 달랐다. 캐나다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 정책이 아동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헌 고찰을 수행한 Fuller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아동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에서 2016년 도입된 아동수당(Family 500+)의 효과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빈곤과 불평등, 가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활동조사(Polish Labou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Magda, Kiełczywska와 Brandt(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교육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Paradowski, Wolszczak-Derlacz와 Sierminska(2020)의 연구에서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uxembu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결과, 아동수당이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ovanska-Farrington(2021)의 연구에서는 폴란드 패널조사(Polish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아동수당이 식료품비나 문화 활동 지출을 증가시키고, 공공요금 지불이나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을 감소시키는 등 가구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러시아에서 2007년 도입된 아동수당(Child Subidy)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Sorvachev and Yakovlev(2020)의 연구에서는 회귀단절 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10%, 장기적으로 20%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2-14〉 아동수당 관련 국외 연구

선행 연구	연구 목적	연구 방법
Parent and Wang (2007)	• 캐나다의 가족수당의 확대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976, 1981년(단기간 비교), 1986년과 1991년(장기간 비교) 캐나다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 가족과 개인 자료와 출생 통계 자료를 이용한 DiDiD 분석
Schirle (2015)	• 캐나다의 아동양육수당 수급이 기혼 남녀의 경제활동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 2003~2009년 캐나다 경제활동조사 (Canadian Labou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이 분석
Magda et al. (2020)	• 폴란드 아동수당(Family 500+)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폴란드 경제활동조사 (Polish Labour Forc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Paradowski et al. (2020)	• 폴란드 아동수당(Family 500+)이 불평등과 빈곤에 미친 영향 분석	• 룩셈부르크 소득연구 (Luxemberg Income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Sorvachev and Yakovlev (2020)	• 러시아 아동수당(Child Subidy)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회귀단절 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으로 분석
Milovanska-Farrington (2021)	• 폴란드 아동수당(Family 500+)이 가구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 폴란드 패널 조사(Polish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
Fuller et al. (2022)	• 자녀가 있는 가족 현금 지원 정책이 아동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분석	• 문헌 고찰

본 연구는 아동수당 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와 정책 경험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아동수당의 이용 경험을 파악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적 금액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전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제3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제3절 지원금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의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아동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러 국가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이 아동의 건강과 인적 자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증거들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사례는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도 보여준다. 반면 다수의 연구는 아동수당 지급이 여성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애초 상위 10%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9년 1월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되었다. 근래에는 저출산 대응책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수혜 대상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추후 아동수당 제도를 적절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액의 변화에 따라 수당 지급의 한계적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해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의 효과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아동수당 지급액을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역적인 변이를 활용하여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여러 국외 연구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지급 액수(월 10만씩 8년, 총 960만 원)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정책 도입에 따른 출산율의 단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각종 출산율 지표의 추이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연구는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도입되었으며, 지급 액수와 변화 추이는 지자체 간 큰 변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이를 활용하여 현금 지급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지자체별 자료를 활용하여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상당수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첫째, 지역의 고정적인 특성을 잘 통제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산율 지표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박창우, 송헌재, 2014; 김우영, 이정만, 2018; 이철희, 2019; Hong, Kim, Lim, & Yeo, 2016). 둘째,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첫째자녀 출산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출생 순위가 내려가면서 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희, 2019; Hong et al.

2016; 이철희, 이소영, 2022). 셋째, 출산지원금이 주로 소득 중상위 가구의 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이철희, 2019; 2022).

그러나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들도 남아있다. 첫째, 현금 지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근래 들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김현숙(2021)의 연구는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2015년까지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였지만, 2016년 이후 기간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이철희와 이소영(2022)의 연구는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440만 원을 지급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입이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을 상당한 규모로 높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 액수가 증가할 때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느 정도 지급 규모에서 한계 효과(marginal effect), 즉 일정한 단위 현금 지원 추가 지급에 의한 출산율 지표 증가 규모가 최대치에 이르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과 민규량(2023)의 최근 연구는 특정한 액수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소수 지자체 사례들을 이용한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및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추정을 통해, 대체로 일시금 환산 1,000만 원이 넘으면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 수의 제약으로 인해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가용한 최근(2021년)까지의 기초지자체별 출산율 지표 및 출산지원금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분석하여, 추후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최

근까지의 기간을 분석에 포함할 때, 현금 지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는가? 둘째, 현금 지원이 출산율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의 나이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셋째,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근래에 들어(2015년 이후) 약화되거나 사라졌는가? 넷째, 출산지원금 지급 규모에 따라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추후 아동수당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배우 출산율

이론적으로 볼 때, 아동수당이나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같이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은 결혼의 결정보다는 결혼한 가구의 출산 결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지자체별 총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등을 출산율의 지표로 이용하였다(박창우, 송헌재, 2014; 김우영, 이정만, 2018; Hong et al., 2016). 이 연구들은 지자체 간 유배우 비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 지역 조혼인율을 통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조혼인율은 해당 지역 가임기 여성 인구의 유배우 비율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 수 같은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 분석 결과에는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와 결혼에 미치는 효과가 혼재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결혼 결정과 유배우 여성의 출산 결정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철희(2012)의 분석 결과는 연도별·시군구별 무배우 여성 혼인율과 유배우 여성 출산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각 연도 및 시

군구의 특성들(예컨대 출산지원금, 보육시설, 복지예산 비율, 1인당 지방세 규모, 주거비용 등)이 무배우 여성 혼인율과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철희, 2018).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과 같이 결혼한 부부의 출산 결정과 관련된 정책 효과는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분석에 이용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선행 연구는 현금 지원이 합계출산율보다는 유배우 출산율에 더 강한 양(+)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이철희, 2019; 이소영, 이철희, 2022).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이철희, 2012; 2018)의 방법을 이용하여 혼인 상태에 따라 구분한 여성들의 출산율을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유배우 출산율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인구동향조사(출생편)를 이용하여 유배우 출산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유배우 여성의 출산 수를 계산하였다. 둘째,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인구 자료(인구주택센서스 2% 표본 마이크로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연령 및 혼인 상태별 여성 인구를 추계하였다. 그리고 출산율의 분자와 분모를 여성 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을 매개로 하여 연결하였다. 예컨대 2015년 특정 시군구의 30~3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2015년 인구동향조사 원시 자료에서 계산한 해당 시군구 30~34세의 유배우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를 같은 연도의 주민등록인구에서 계산한 동일 인구 특성을 가진 여성의 연앙 인구(mid-year population)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혼인 상태별 인구는 주민등록 자료에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구주택센서스 원시 자료 2% 표본을 이용하여 각 센서스 연도에 대해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여성 인구의 유배우 비율을 계산한 다음, 이것을 주민등록 자료에서 얻은 성별·연령별 인구에 적용하여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유배우 여성 인구를

추정하였다. 센서스 연도가 아닌 연도의 각 시군구 성별·연령별 여성 인구 유배우 비율은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2. 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

이 연구는 전체 유배우 출산율뿐만 아니라 출생 순위별 유배우 합계출산율도 함께 추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외 사례는 가족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출생 순위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Gauthier and Hatzius, 1997; Cohen, Dehejia, & Romanov, 2013; Riphahn and Wiynck, 2017; Garganta, Gasparini, Marchionni, & Tappatá, 2017). 한국의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효과도 출생 순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박창우와 송헌재(2014)의 연구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첫째와 둘째자녀 출산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지만, 셋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였다. Hong et al. (2016), 이철희(2019), 이철희와 이소영(2022)의 연구 결과는 출생 순위가 낮아질수록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도 출생 순위별 출산율 분석 결과는 유용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유배우 출산율을 출산지원금 효과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분석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 시군구의 연령별·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2000년 이후 인구센서스 2% 마이크로 표본을 이용하여 각 시군구 연령별 여성 인구 가운데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 인구, 자녀가 1명인 유배우 여성 인구, 자녀가 2명 이상인 유배우 여성 인구의 비율을 추정하였다. 센서스 연도가 아닌 연도의 각

특성별 여성 인구 비율은 선형 보간(linear interpo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한 각 시군구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에 시군구 연령별 여성 인구를 적용하여 각 연도·시군구연령별로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 둘 이상 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를 추정하였다. 각 연도·시군구·모 연령·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는 인구 동향조사 마이크로 자료에서 추정하였다. 이 두 추정치를 결합하면 각 시군구의 모의 연령 및 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을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율은 해당 시군구의 30~34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를 해당 시군구의 30~34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인구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3. 종합적인 유배우 출산율 지표

유배우 출산율은 결혼한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 산출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한 여성이 생애에 걸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로 정의되는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각 연령(혹은 연령대) 출산율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조건으로 정의되는 유배우 출산율의 경우, 개인마다 결혼하는 나이가 달라서 앞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계산한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을 더한 결과로 평균적인 유배우 여성의 기대 자녀 수를 구할 수 없다.

여기서는 종합적인 유배우 출산율 지표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변수를 생성하여 이용하였다. 첫째로, 분석 기간 한국의 핵심적인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5세~39세 유배우 여성의 조출산율(25~39세 유배우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지표는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도 및 시군구별 유배우 여성 인구의 연령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25~39세 유배우 여성 인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배우 출산율이 높은 20대 후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구의 유배우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시군구의 유배우 출산율에 비해 과대평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배우 조출산율을 산출하는 나이를 정의하는 것도 문제다. 핵심적인 가임기의 연령대를 넓히면(예컨대 20~39세), 지역 간 연령 구조 차이로 발생하는 편이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대상 인구의 연령대를 좁히면 연령 구조 차이로 인한 편이(bias)는 줄어들지만, 유배우 출산율 지표 산출에서 제외되는 인구 비중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로, 특정한 나이에 결혼하여 남은 가임기 동안 유배우 상태를 유지하는 가상의 여성 인구를 대상으로 유배우 합계출산율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예컨대 25세에 결혼하여 유배우 인구에 포함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이하 25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25세부터 49세까지의 각 5세별 유배우 출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현재 25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 지표는 대다수 유배우 여성 인구를 포함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실제로는 비교적 소수인 20대 후반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초혼 나이에 가까운 30세에 결혼한 여성의 유배우 합계출산율(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을 추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지표는 30세부터 49세까지의 각 5세별 유배우 출산율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 지표는 현재의 평균적인 유배우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20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4. 지자체 출산지원금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액수와 지급 방식에 관한 데이터는 2005~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특정한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녀를 낳는 경우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지원금 총액은 해당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그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출산지원금을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출생 순위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특정한 출생 순위별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에 도입하는 경우 각 출생 순위 출생아에 대한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이용하였다. 모든 출생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여성의 평균적인 출산율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 각 시군구 해당 인구집단의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출산지원금의 가중평균을 산출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예컨대 특정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경우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출산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해 이 연령층 여성들의 출생 순위별 신생아 수를 계산하여 가중치로 이용하였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경우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출생아 전체 수를 가중치로 이용하였다.

5. 출산지원금 수급 유인에 따른 지자체 간 이주 고려

복지 지출의 지역 간 차이가 이주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의 기원은 18~19세기 영국 구빈법(the Poor Law)이나 19세기 미국의 빈민 구호 등 역사적인 사례로 거슬러 올라간다(Boyer, 1990; Kauffman and Kiesling, 1997). 한국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지역 간 지급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금 수급을 위한 이주 유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헌재와 김현아(2014)의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군구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높을수록 가임기 여성의 순 유입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우영과 이정만(2018)의 연구는 2000~2016년 충청남북도 시군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높은 출산지원금이 15~49세 여성 인구의 순 유입에 양(+)의 효과를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순 유입률을 통제하더라도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미친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전국 데이터를 이용한 이철희(2019)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자체 간 이주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청 인구이동 통계를 이용하여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인구의 유입률, 유출률, 순 유입률 등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핵심적인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5~39세 여성의 각 5세별 순 유입률을 추정하여, 회귀분석에 통제 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는 지역 간 이주 경로로 발생한 출산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최대한 제거하고, 현금 지원이 직접적으로 거주민의 출산 유인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6. 추정 모형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군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본적인 회귀모형으로 이용하였다.

$$(1) \quad F_{i,t} = \alpha + \beta B_{i,t-1} + \gamma X_{i,t-1} + \delta M_{i,t-1} + \theta_t + \mu_i + \epsilon_{i,t}$$

이 식에서 i 와 t 는 각각 시군구와 연도를 나타내는 첨자이며, F 는 합계 출산율 혹은 유배우 출산율, B 는 출산지원금, X 는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시군구의 특성들, M 은 가임기 여성 순 유입률, θ 는 연도고정효과, μ 는 관찰할 수 없는 시군구의 고정적인 특성, ϵ 는 고전적인 선형 회귀모형의 통상적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각 지역 출산율은 해당 지역의 고정적인 특성들, 예컨대 금방 바뀌기 어려운 문화적인 특성, 주거 환경, 양육 및 교육 여건, 일자리의 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패널고정효과 모형은 이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각 기초지자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출산의 결정이 실제로 출산율 지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짧아도 9개월이 걸린다. 출산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을 인지하고 이를 출산 결정에 반영하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지급 및 지자체 특성 변화와 실제 출산 간에는 그 이상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기 위해 모든 설명 변수는 출산율 지표가 산출된 시기보다 한 해 앞선 연도의 값을 이용하였다.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군구별 특성 변수로는 2005년 이후 거의 모든 시군구에 대해 구할 수 있는 아동 1,000명당 보육시설 수,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납부액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환경, 출산지원금의 제외한 다른 복지 수혜, 경제적인 여건 등을 대리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가임기 여성 순 유입률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지리적 이동을 매개로 한 출산지원금의 간접적인 효과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분석 기간, 출산율의 시간적인 변화 추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했으며, 이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인 시기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도 고정효과를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제2절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1.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기본적인 분석 결과

가. 기초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여기서는 전체 기간 및 전체 여성을 포함하는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1절에서 제시한 회귀식 1에 소개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료가 가용한 최근의 기간까지 분석을 확장하고, 시군구의 고정적인 특성의 영향을 제거한 후, 시군구 출산지원금 지급이 합계출산율 및 세 가지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표 3-1〉은 분석에 이용된 출산율 지표, 지자체 출산지원금 관련 변수, 기타 지자체 특성에 관한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보고해 준다. 분석 기간, 시군구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1.21이었고,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111.32명이었다. 연령별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누어서 보면, 20대 후반의 유배우 조출산율이 219.05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감소하여 30대 후반에는 47.78을 기록하였다. 자녀 수별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이 426.4로 가장 높았고, 한 자녀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이 144.39로 그 뒤를 이었으며, 둘 이상 자녀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은 23.9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분석 기간, 지자체 일시금 환산 출산지원금의 평균(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가중평균)은 약 199만 원이었다. 첫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평균은 45만 원,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평균은 97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평균은 284만 원으로 다자녀에 대해 높은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 영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15.13개, 지자체 복지예산 비율은 28.86%,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약 100만 원이었다. 마지막으로 25~39세 여성 순 유입률은 0에 가까운 규모(-0.0071)인데, 이는 한 지자체의 유출이 다른 지자체의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이론적인 예상과 부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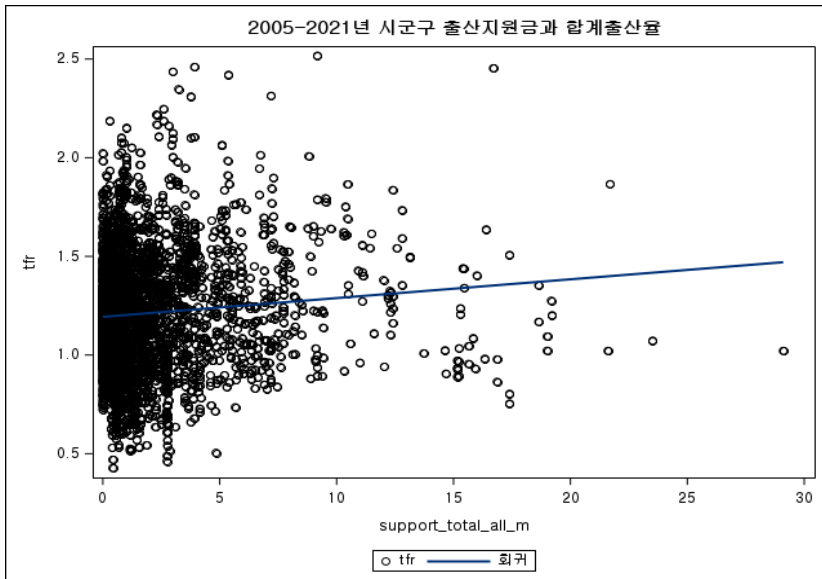
〈표 3-1〉 시군구 출산지원금 효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 합계출산율	1.2124	0.2943
시군구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111.3242	17.6074
시군구 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천 명당)	817.0951	165.0584
시군구 25세 결혼 여성 유배우 여성 출산율(천 명당)	2116.61	369.2596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219.0481	58.0112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150.0325	29.0431
시군구 3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47.7847	16.0294
25~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천 명당)	426.4117	220.4341
25~3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둘째자녀 출산율(천 명당)	144.3875	41.865
25~39세 다자녀 유배우 여성 추가 자녀 출산율(천 명당)	23.9309	7.843
전체 평균 출산지원금(백만 원)	1.9866	2.7797
첫 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0.4518	1.5385
둘째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0.9724	1.8991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2.8363	3.8367
보육시설 수(천 명당)	15.1268	4.5016
복지예산 비율(%)	28.863	15.014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9955	0.9337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0.0071	0.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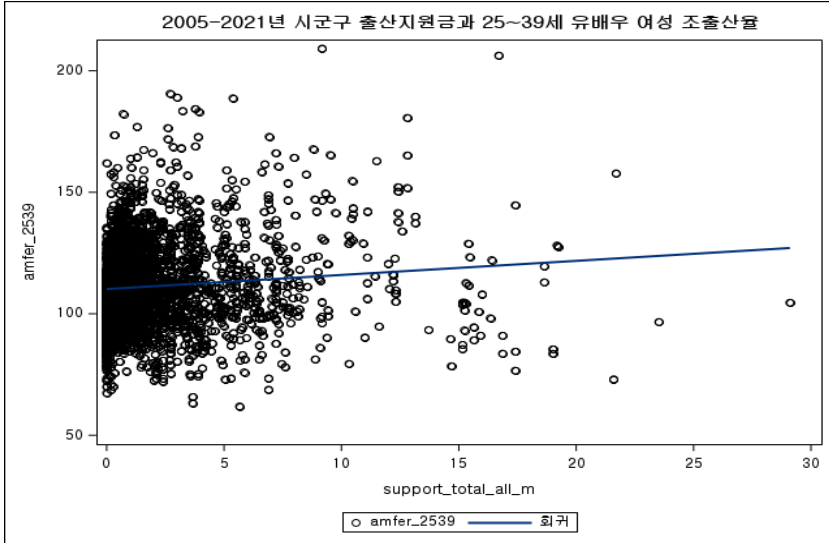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전 연도 각 시군구의 출산지원금과 네 가지 출산율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3-1] 부터 [그림 3-4]는 각 지자체의 시군구 출산지원금 평균과 다음 연도 합계

출산율과 세 가지 유배우 출산율 지표 간 관계를 보여준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가지 출산율 지표는 모두 전년도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가장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피어슨 상관 계수(이하 상관계수)는 0.2292($p < .0001$)로 추정되었다. 반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가장 약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상관계수는 0.0495($p < .0054$)로 추정되었다. 합계출산율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에 대해 추정한 지자체 출산지원금과의 상관 계수는 각각 0.0896($p < .0001$)과 0.0908($p < .0001$)이다. 이상의 결과는 지자체의 고정적인 특성, 각 시기의 공통적인 여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다양한 출산율 지표와 비교적 약하지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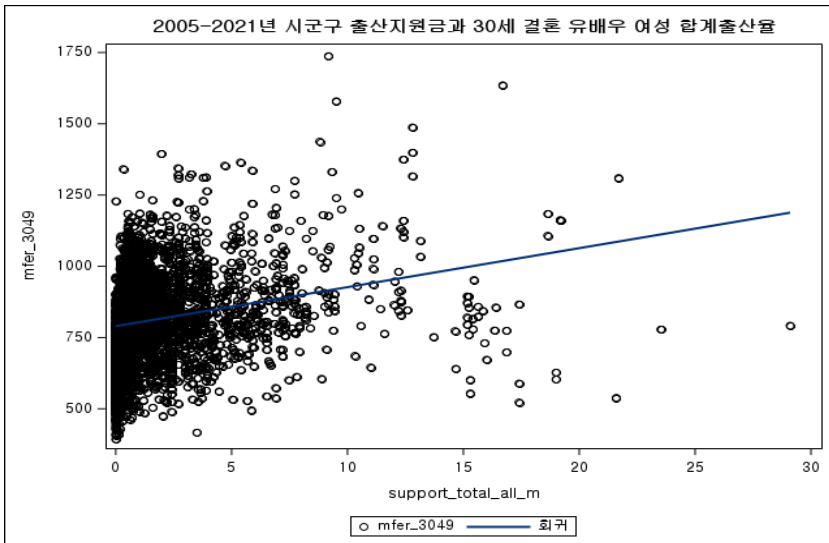
[그림 3-1]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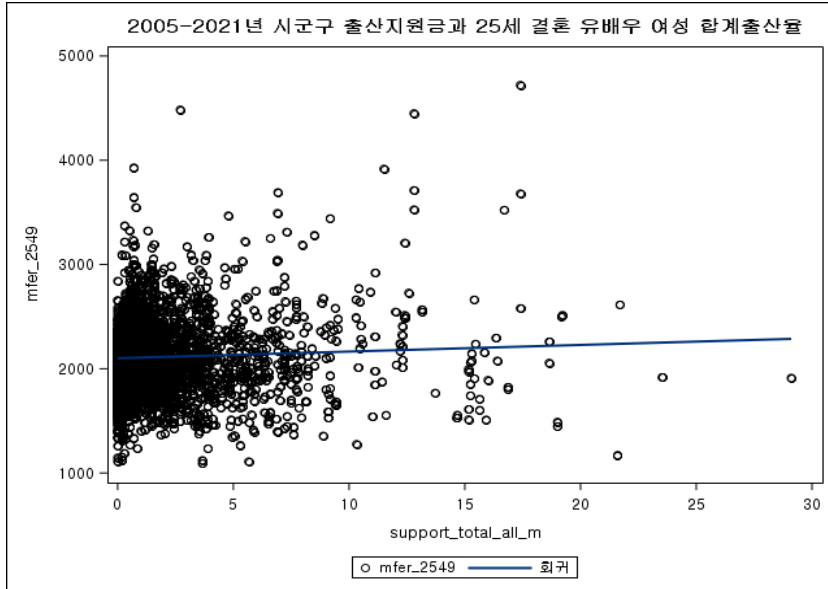
[그림 3-2]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25~39세 다음 연도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그림 3-3]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 출산율



[그림 3-4]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 출산율



나. 전체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전체 여성 인구에 대해 산출한 네 가지 출산율 지표를 이용하여 제2절의 회귀식 1에 제시된 시군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에는 세 가지 모형을 도입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지자체 출산지원금만은 설명 변수로 이용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는 보육시설 수, 복지예산 비율, 1인당 지방세액,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등의 시군구 특성 변수를 통제하였고, 세 번째 모형에는 여기에 연도고정효과를 추가하였다. 모두 16개 연도, 227개 기초지자체를 분석에 포함했다. 출산율 지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16개 연도에 대한 데이터에서 산출했고, 출산지원금과 다른 설명 변수들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16개 연도에 대한 데이터에서 산출했다.

〈표 3-2〉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에 관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이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모형 1과 2). 연도고정효과가 모형에 추가되면 출산지원금의 계수가 유의한 양수로 바뀌었다. 이는 분석 기간의 상당한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이 높아지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국적인 출산율 추이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순수한 효과가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3을 이용하여 추정된 계수의 규모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약 0.011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1.21)의 약 0.9%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표 3-2〉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016 (0.0014)	<.0001	-0.0064 (0.0013)	<.0001	0.0109 (0.0009)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117 (0.0013)	<.0001	-0.0083 (0.001)	<.0001
복지예산 비율(%)			-0.0106 (0.0005)	<.0001	-0.0007 (0.0005)	0.1536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0622 (0.0076)	<.0001	0.0182 (0.0052)	0.0005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6001 (0.0984)	<.0001	1.1168 (0.0652)	<.0001
절편	1.3549 (0.0449)	<.0001	1.4231 (0.0399)	<.0001	1.3025 (0.0268)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7/16		227/16		227/16	
고정효과 F-test	24.26	<.0001	16.10	<.0001	38.64	<.0001

〈표 3-3〉은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출산율 지표로 이용한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세 모형 모두에 대해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조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조출산율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도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할 때 출산지원금이 미친 양(+)의 효과가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결과는 2012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되고 유배우 출산율은 떨어졌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3의 추정계수의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약 1.24명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111.32)의 약 1.1%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표 3-3〉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7623 (0.1123)	<.0001	0.5942 (0.112)	<.0001	1.2361 (0.0905)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1.5476 (0.1096)	<.0001	-0.8032 (0.0983)	<.0001
복지예산 비율(%)			-0.1037 (0.0429)	0.0157	-0.0217 (0.045)	0.630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3.8658 (0.6529)	<.0001	0.2617 (0.4976)	0.5990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29.6597 (8.4678)	<.0001	76.4315 (6.2515)	<.0001
절편	119.3459 (3.6002)	<.0001	117.788 (3.4366)	<.0001	102.1319 (2.5653)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7/16		227/16		227/16	
고정효과 F-test	7.77	<.0001	9.77	<.0001	14.46	<.0001

〈표 3-4〉는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출산율 지표로 이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 유배우 조출산율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형 모두에 대해 출산지원금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할 때 출산지원금의 추정계수 규모가 약간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2012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이 감소했을 때,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늦게 시작되었고, 그 감소 폭도 작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3을 이용한 추정 결과를 따를 때,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9.35명 늘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817.10)의 1.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3-4〉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21.7871 (1.0411)	<.0001	11.5138 (0.9077)	<.0001	9.3513 (0.7212)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16.3825 (0.888)	<.0001	-4.9746 (0.7838)	<.0001
복지예산 비율(%)			5.7117 (0.3476)	<.0001	-0.128 (0.3588)	0.721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3.347 (5.2903)	0.5270	9.4013 (3.966)	0.0178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967.6333 (68.6145)	<.0001	490.508 (49.8248)	<.0001
절편	896.3406 (33.3671)	<.0001	801.9446 (27.8466)	<.0001	651.3162 (20.4454)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7/16		227/16		227/16	
고정효과 F-test	7.29	<.0001	11.55	<.0001	14.38	<.0001

〈표 3-5〉는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출산율 지표로 이용하여 수행한 패널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유배우 조출산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즉 세 가지 모형 모두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였으며, 이 효과가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3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이 확대될 때, 특히 20대의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했던 것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모형 3 추정 결과를 적용하면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증가는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29.71명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2116.61)의 1.4% 규모이다.

〈표 3-5〉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19.4388 (2.3799)	<.0001	19.1068 (2.4322)	<.0001	29.7093 (2.2624)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27.3748 (2.3794)	<.0001	-10.0933 (2.459)	<.0001
복지예산 비율(%)			-3.9811 (0.9313)	<.0001	-2.7663 (1.1256)	0.0140
1인 지방세액(백만 원)			-80.5905 (14.1751)	<.0001	-13.5893 (12.4417)	0.2748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2118.09 (183.8)	<.0001	1248.436 (156.3)	<.0001
절편	2187.804 (76.2763)	<.0001	2184.319 (74.6131)	<.0001	1884.984 (64.1398)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7/16		227/16		227/16	
고정효과 F-test	7.47	<.0001	7.71	<.0001	9.84	<.0001

다. 나이 및 출생 순위별 출산율 분석 결과

현금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나이와 기존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식 1에 소개된 패널고정 효과 모형을 나이와 기존 자녀 수별로 구분한 표본에 대해 추정하였다. 유배우 여성의 연령대는 25~29세, 30~34세, 35~39세 등으로, 유배우 여성의 기존 자녀 수는 무자녀, 한 자녀, 둘 이상 자녀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령별 분석에는 위에 제시한 전체 여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출생 순위별 출산지원금의 가중평균을 출산지원금 지표로 이용하였다. 반면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분석에서는 해당 순위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이용하였다. 무자녀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과 한 자녀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 경우 각 출생 순위 출생아에 대한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그대로 이용했다. 둘 이상 자녀 여성의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출생아 수를 가중치로 이용한 평균 액수를 이용하였다.

〈표 3-6〉은 세 연령층 유배우 여성에 대해 지자체 특성과 연도고정효과 등 전체 설명 변수를 포함한 모형(전체에 대한 분석에서의 모형 3)을 추정한 결과이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세 연령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금의 계수는 25~29세 3.604, 30~34세 1.898, 35~39세 0.405 등,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유배우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기간 각 연령대 유배우 출산율 평균 대비 출산지원금 계수의 비율은 25~29세 1.65%, 30~34세 1.27%, 0.85% 등으로 계수의 절대적인 규모에 비해 연령대 간 차이가 줄어든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이 상

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여성의 출산에 더 큰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령대 간 차이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상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여성의 잠재적인 선택성(selectivity)을 반영할 수 있다. 20대에 결혼하는 여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고려할 때 20대 후반 유배우 여성은 출산에 대한 태도 등에서 나이가 많은 유배우 여성들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여성들의 출생아는 첫째자녀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 제시하겠지만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첫째자녀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연령대별 분석 결과는 부분적으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표 3-6〉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변수	(1) 25~29세		(2) 30~34세		(3) 35~39세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3.604 (0.3882)	<.0001	1.8983 (0.1491)	<.0001	0.4052 (0.0644)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0.775 (0.4219)	0.0663	-0.6898 (0.162)	<.0001	-0.5026 (0.07)	<.0001
복지예산 비율(%)	-0.5212 (0.1931)	0.0070	-0.1362 (0.0742)	0.0663	0.0685 (0.032)	0.0325
1인 지방세액(백만 원)	-5.0682 (2.1348)	0.0177	0.3453 (0.8197)	0.6736	1.649 (0.354)	<.0001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27.0602 (26.8201)	<.0001	88.2404 (10.298)	<.0001	28.3858 (4.4471)	<.0001
절편	214.1678 (11.0055)	<.0001	119.2275 (4.2257)	<.0001	36.35 (1.8248)	<.00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7/16		227/16		227/16	
고정효과 F-test	8.55	<.0001	11.97	<.0001	11.21	<.0001

〈표 3-7〉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여성의 출생 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출생 순위가 내려갈수록 출산 지원금 효과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자녀 출산지원금 100만 원 증가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 1,000명의 기대 출생아 수를 9.96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426.41)의 2.34% 크기이다.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한 자녀 유배우 여성 1,000명의 기대 출생아 수를 1.46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144.39)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셋째 이상에 대한 평균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두 자녀 이상 여성 1,000명의 기대 출생아 수를 0.25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기간 평균(23.93)의 1.04%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이상의 결과는 현금 지원의 효과가 특히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 강한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한 선행 연구들도 유사한 결론을 얻은 바 있다(Hong et al., 2016; 이철희, 2019; 이소영, 이철희, 2022). 이러한 결론은 추정계수의 절대적인 규모와 유배우 출산율 평균에 비교한 상대적인 규모 모두로부터 도출된다. 추정계수의 절대적인 규모로 볼 때는 출산지원금이 둘째 출산에 미친 효과가 셋째 이상 출산에 미친 효과보다 크지만, 유배우 출산율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인 규모는 유사하다. 현금 지원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다수의 결혼한 부부가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는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출산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무자녀 유배우 여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출산의 경계에 더 가까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은 비교적 소액의 현금 지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를 가질 결정을 하거나 출산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클 것이다.

〈표 3-7〉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변수	(1)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		(2)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두 번째 자녀 출산율		(3) 둘 이상 유배우 여성 셋 이상 자녀 출산율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9.9587 (2.0146)	<.0001	1.4592 (0.3059)	<.0001	0.2507 (0.0292)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1.8221 (1.427)	0.2017	-1.4229 (0.2377)	<.0001	-0.1815 (0.0428)	<.0001
복지예산 비율(%)	0.6745 (0.6453)	0.2960	0.2309 (0.1079)	0.0323	-0.037 (0.0196)	0.0585
1인 지방세액(백만 원)	7.6234 (7.2147)	0.2908	2.3566 (1.2027)	0.0502	-0.4071 (0.2165)	0.0602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444.1147 (90.6223)	<.0001	59.2704 (15.122)	<.0001	3.4366 (2.7144)	0.2056
절편	371.8988 (37.151)	<.0001	173.799 (6.1794)	<.0001	32.9359 (1.1108)	<.00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7/16		227/16		227/16	
고정효과 F-test	9.91	<.0001	16.45	<.0001	12.20	<.0001

2.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의 기간별 차이

가. 기초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하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시기에 따라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금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최근 들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현숙 2021).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금 지원의 종합적인 편익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이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무게를 실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절에 제시된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을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 각각에 대해 수행한다. 기간 구분은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계속 빠르게 하락했던 점과 2015년을 기점으로 출산지원금 효과가 사라졌다는 선행 연구(김현숙, 2021)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편의상 아래에는 2005~2014년은 ‘전기’, 2015~2021년은 ‘후기’로 지칭하기로 한다.

〈표 3-8〉은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두 기간에 대해 제시하였다. 시군구 합계출산율 평균은 전기 1.30에서 후기 1.0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배우 출산율 지표는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았고, 특히 30세 이상의 유배우 출산율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평균은 전기 111.87, 후기 110.56으로 유사했고,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은 전기 764.24에서 후기 890.12로 약간 높아졌다. 연령별로 볼 때 20대 후반의 유배우 출산율은 전기 233.75에서 후기 198.72로 감소했지만, 30~34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3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더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전기에 비교한 후기 합계출산율 저하의 상당 부분이 유배우 비율 감소와 20대 후반 여성 유배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철희 외, 2023). 자녀 수별로 나누어 보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은 전기(512.80)에 비해 후기(307.03)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 반면 한 자녀 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율과 둘 이상 자녀 여성의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은 전기와 후기 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2012년 이후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였던 사정을 반영한다(이철희 외, 2023).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평균 액수는 전기 118만 원에서 후기 31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평균은 전기 172만 원에서 후기 438만 원으로 높아졌다.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평균은 전기 55만 원에서 후기 155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첫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평균도 전기와 후기 사이 세 배 이상 커졌지만,

후기에도 78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영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의 평균은 전기 14.1개에서 후기 16.5개로 약간 많아졌고, 복지예산 비율 평균은 전기 24.6%에서 후기 34.8%로 높아졌다. 1인당 지방세액 역시 전기 83만 원에서 후기 122만 원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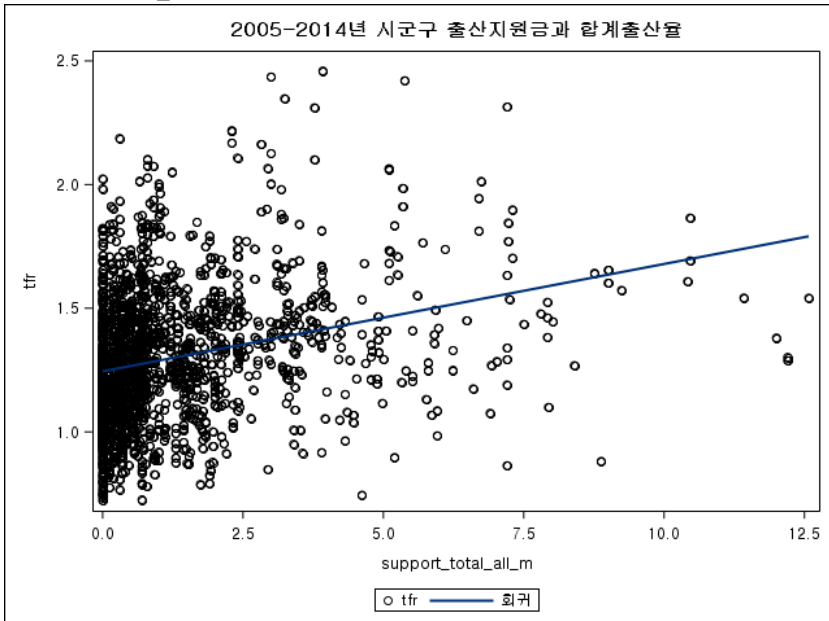
〈표 3-8〉 기간별 시군구 출산지원금 효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2006~2014년		2015~2021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 합계출산율	1.2976	0.2657	1.0947	0.2915
시군구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111.8738	17.3173	110.5646	17.9796
시군구 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천 명당)	764.2456	160.9594	890.1213	141.1117
시군구 25세 결혼 여성 유배우 여성 출산율(천 명당)	2124.1	346.3786	2106.26	398.6242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233.7589	47.4045	198.7211	64.8104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147.0957	29.9365	154.0904	27.2565
시군구 3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38.8054	12.0503	60.192	12.0833
25~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천 명당)	512.8022	235.0137	307.0393	121.9409
25~3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둘째자녀 출산율(천 명당)	153.1858	42.3597	132.0633	37.8829
25~39세 다자녀 유배우 여성 추가 자녀 출산율(천 명당)	23.5854	7.8515	24.4179	7.8082
전체 평균 출산지원금(백만 원)	1.1828	1.7268	3.0974	3.4874
첫 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0.2127	0.5775	0.7821	2.234
둘째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0.5531	1.0249	1.5518	2.5619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1.716	2.5808	4.3843	4.6622
보육시설 수(천 명당)	14.1258	4.5854	16.5099	3.991
복지예산 비율(%)	24.566	13.4853	34.8004	15.0004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8345	0.806	1.2179	1.0461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0.0077	0.0372	-0.0063	0.0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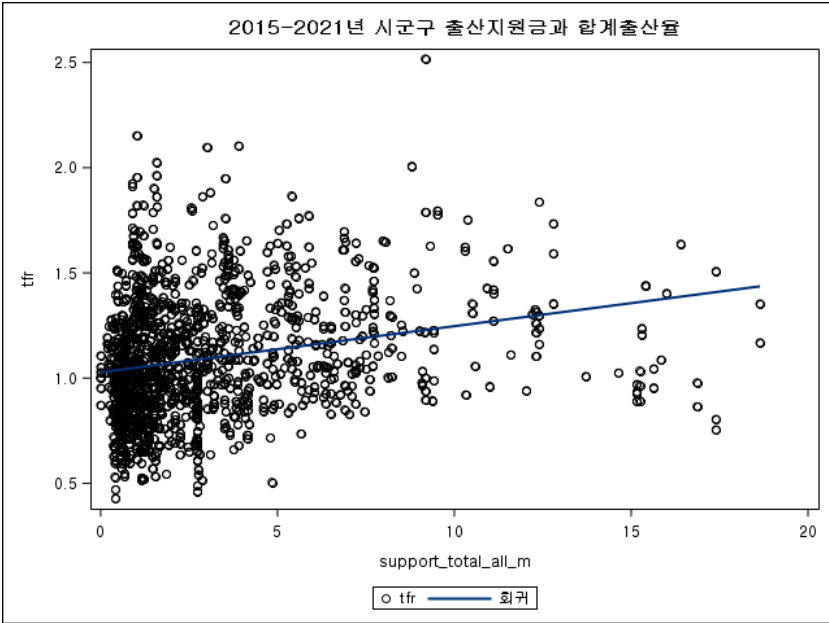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네 가지 출산율 지표 간의 관계가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림 3-5]는 전기와 후기의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두 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회귀선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전기 0.2720($p<.0001$)에서 후기 0.2353 ($p<.0001$)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3-5]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A. 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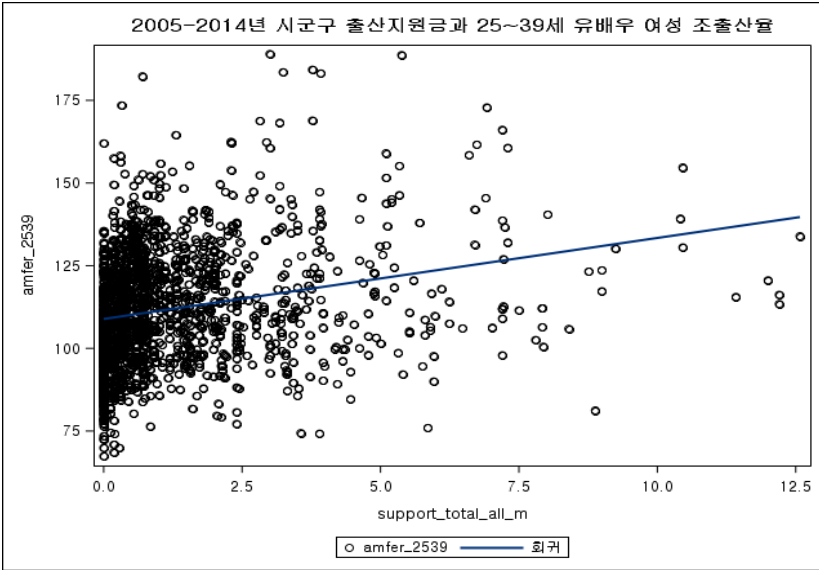
B. 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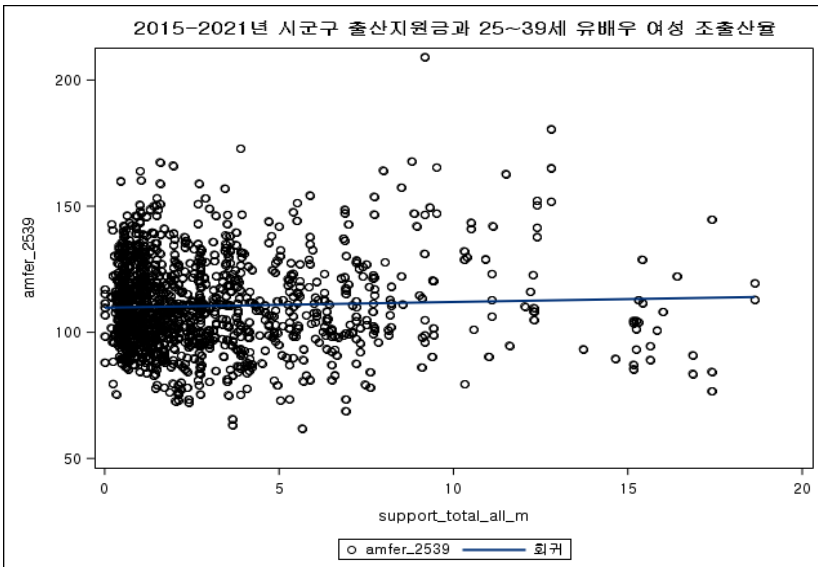
[그림 3-6]은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에 대해 시군구 출산 지원금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간 관계를 보여준다. 전기에는 두 변수 간에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지만, 후기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거의 사라졌다.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전기 0.2363 ($p<.0001$)에서 후기 0.0401 ($p=0.1467$)로 감소하였고, 양(+)의 상관관계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그림 3-6]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A. 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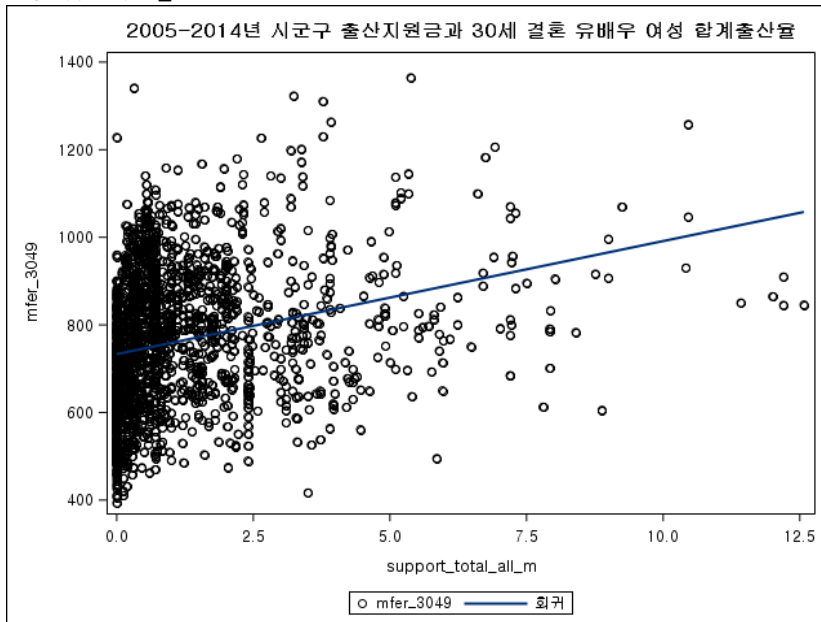
B. 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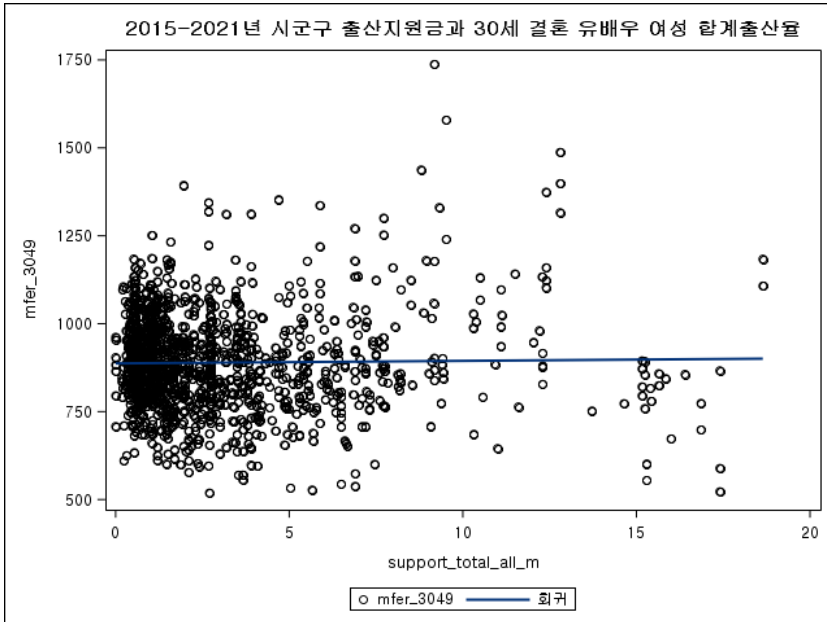
[그림 3-7]은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에 대해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기에는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지만, 후기로 오면서 이러한 관계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 0.2660($p < .0001$)였던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후기 0.0163($p=0.5558$)으로,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림 3-7]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A. 2005~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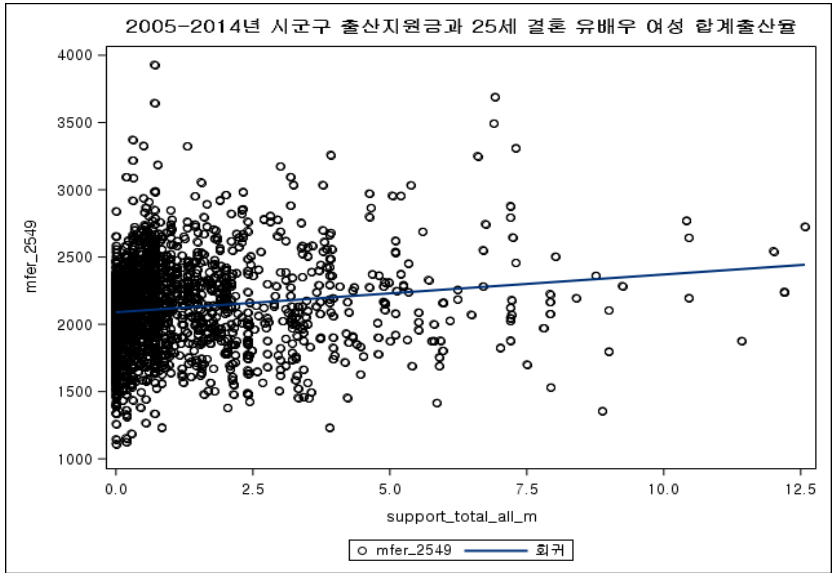
B. 2015~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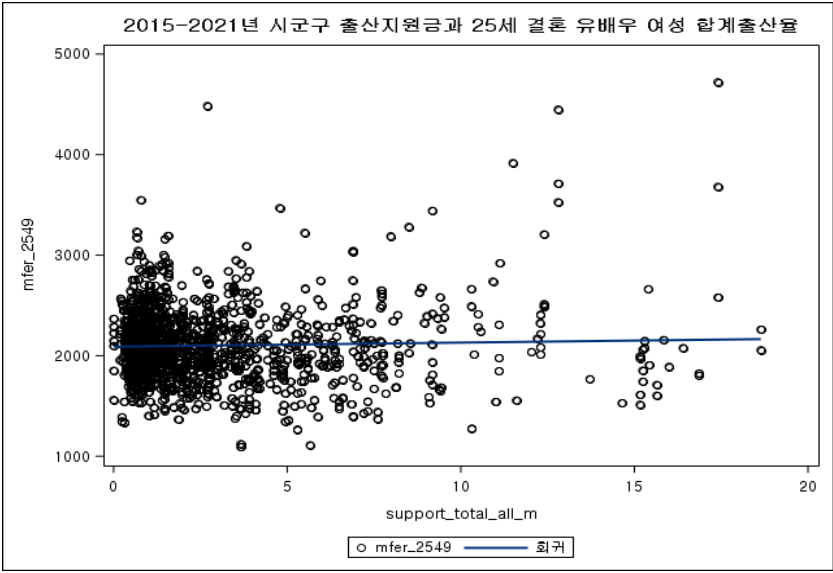
[그림 3-8]은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에 대해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전기에는 두 변수 간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만 후기에는 별 다른 관계를 찾기 어렵다. 전기 0.1351($p < .0001$)이었던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후기 0.0335($p = 0.2255$)로 감소하였고, 두 변수 간 유의한 양(+)의 관계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05~2014년과 2015~2021년 비교

A. 2005~2014년



B. 2015~2021년



이처럼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지표 간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2005~2014년에 비해 2015~2021년의 출산지원금과 출산율 간 양(+)의 상관관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이는 얼핏 2015년 이후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예컨대 출산지원금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출산율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제3의 요인이 존재했다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아도 위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나.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가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회귀식 1에 제시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두 기간에 대해 추정하였다. 아래의 분석은 앞에서 이용된 세 가지 모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즉 모형 1은 출산지원금만을 포함하였고 모형 2는 시군구 특성들을 추가하였으며, 모형 3은 여기에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표 3-9〉는 합계출산율을 출산율 지표로 이용하여 2005~2014년(패널 A)과 2015~2021년(패널 B) 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2005~2014년 기간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세 개 모형 모두에 대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 기간에서 얻은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반면 2015~2021년 기간에서 추정한 결과는 모형에 따라 달라졌다. 즉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과 모형 2 추정 결과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경우(모형 3),

출산지원금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변화한다. 모형 3에서 얻은 추정계수의 규모는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양(+)의 효과가 전기에 비해 후기에 오히려 더 컸음을 나타낸다.

〈표 3-9〉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A. 2005~2014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0172 (0.002)	<.0001	0.0125 (0.002)	<.0001	0.0073 (0.0017)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005 (0.0013)	0.6891	-0.0071 (0.0013)	<.0001
복지예산 비율(%)			0.0027 (0.0006)	<.0001	-0.0014 (0.0005)	0.0104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0146 (0.0095)	0.1241	0.0014 (0.0078)	0.8631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0.9974 (0.0947)	<.0001	0.8664 (0.0774)	<.0001
절편	1.4709 (0.0369)	<.0001	1.483 (0.036)	<.0001	1.3504 (0.03)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3/9		223/9		223/9	
고정효과 F-test	37.14	<.0001	26.91	<.0001	38.09	<.0001

B. 2015~2021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0134 (0.0021)	<.0001	-0.0039 (0.0017)	0.0204	0.0085 (0.0012)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317 (0.0023)	<.0001	-0.0019 (0.0019)	0.3107
복지예산 비율(%)			-0.0197 (0.0013)	<.0001	0.0006 (0.001)	0.553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0783 (0.0116)	<.0001	0.0139 (0.0078)	0.0755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8068 (0.1663)	<.0001	1.1506 (0.1084)	<.0001
절편	1.1819 (0.0685)	<.0001	1.2202 (0.063)	<.0001	1.3432 (0.0415)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10/7		210/7		210/7	
고정효과 F-test	10.22	<.0001	9.48	<.0001	19.83	<.0001

〈표 3-10〉은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을 출산율 지표로 이용하여 2005~2014년(패널 A)과 2015~2021년(패널 B) 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2006~2014년에는 전체 기간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개 모형 전부 출산지원금 지급이 25~39세 유배우 조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2015~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을 이용한 분석 결과처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경우만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1은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모형 2는 유의하지 않은 양수로 추정되었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하는 경우(모형 3), 출산지원금의 추정계수는 전기(0.5426)에 비해 후기(1.0499)에 훨씬 더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표 3-10〉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A. 2005~2014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3.373 (0.2242)	<.0001	1.6898 (0.1983)	<.0001	0.5426 (0.1587)	0.0006
보육시설 수(천명당)			1.0004 (0.1247)	<.0001	-0.5976 (0.1167)	<.0001
복지예산 비율(%)			0.7791 (0.0555)	<.0001	0.0419 (0.0502)	0.4040
1인 지방세액(백만 원)			2.5148 (0.9309)	0.0070	-0.3196 (0.7238)	0.6589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91.0427 (9.2951)	<.0001	66.3458 (7.148)	<.0001
절편	124.9455 (4.1748)	<.0001	125.8694 (3.5343)	<.0001	107.6117 (2.7725)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3/9		223/9		223/9	
고정효과 F-test	7.81	<.0001	12.46	<.0001	16.10	<.0001

B. 2015~2021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4028 (0.1628)	0.0135	0.2116 (0.1449)	0.1446	1.0499 (0.1181)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2.1332 (0.1976)	<.0001	-0.3515 (0.1912)	0.0663
복지예산 비율(%)			-1.219 (0.1084)	<.0001	0.1226 (0.1049)	0.2429
1인 지방세액(백만 원)			-5.3841 (0.9865)	<.0001	0.9016 (0.7986)	0.2591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34.5413 (14.1944)	<.0001	86.1697 (11.1148)	<.0001
절편	112.1732 (5.4165)	<.0001	113.0408 (5.3771)	<.0001	124.6359 (4.2603)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10/7		210/7		210/7	
고정효과 F-test	4.64	<.0001	7.13	<.0001	8.41	<.0001

〈표 3-11〉은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을 출산율 지표로 이용하여 2005~2014년(패널 A)과 2015~2021년(패널 B) 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결과는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을 이용한 분석 결과(〈표 3-10〉)와 유사하다. 즉 2005~2014년에는 어떤 모형을 적용하든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5~2021년에는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해야 출산지원금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한 가지 차이는 모형 2를 적용해도 후기의 출산지원금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크기(2.6513)는 전기에서 얻어진 추정계수의 크기(19.4794)에 비해 훨씬 작았다. 반면 모형 3을 적용하면, 후기에서 얻은 출산지원금 추정계수(7.4196)가 전기에서 얻은 추정계수(5.138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A. 2005~2014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41.5025 (2.285)	<.0001	19.4794 (1.7393)	<.0001	5.1385 (1.189)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16.8396 (1.0932)	<.0001	-3.671 (0.8744)	<.0001
복지예산 비율(%)			9.0463 (0.4869)	<.0001	0.2565 (0.3763)	0.4956
1인 지방세액(백만 원)			31.7852 (8.1631)	0.0001	-2.6262 (5.4213)	0.6282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636.6743 (81.5063)	<.0001	339.532 (53.5376)	<.0001
절편	882.7511 (42.555)	<.0001	884.7721 (30.9916)	<.0001	694.5111 (20.766)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3/9		223/9		223/9	
고정효과 F-test	5.05	<.0001	11.76	<.0001	15.63	<.0001

B. 2015~2021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2822 (1.1147)	0.8002	2.6513 (1.0653)	0.0130	7.4196 (1.0051)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9.4639 (1.4523)	<.0001	-2.6659 (1.6277)	0.1018
복지예산 비율(%)			-5.7617 (0.7965)	<.0001	1.1981 (0.8931)	0.1800
1인 지방세액(백만 원)			-23.1521 (7.25)	0.0014	8.6498 (6.7986)	0.2035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841.8645 (104.3)	<.0001	606.8013 (94.622)	<.0001
절편	932.3267 (37.0986)	<.0001	930.829 (39.5189)	<.0001	976.0352 (36.2689)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10/7		210/7		210/7	
고정효과 F-test	7.79	<.0001	8.29	<.0001	8.58	<.0001

〈표 3-12〉는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을 출산율 지표로 이용하여 2005~2014년(패널 A)과 2015~2021년(패널 B) 기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결과는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표 3-11〉)와 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시군구 특성에 관한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전기와 후기로부터 얻은 결과 모두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는 경우(모형 2), 후기 출산지원금의 계수(12.6450)는 전기 출산지원금 계수(30.3303)보다 훨씬 작게 추정되었다. 반면 연도고정효과가 통제되면(모형 3), 후기에서 도출된 출산지원금 계수(26.424)가 전기에서 얻어진 출산지원금 계수(11.0549)보다 훨씬 커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표 3-12〉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A. 2005~2014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57.0952 (4.3737)	<.0001	30.3303 (4.1325)	<.0001	11.0549 (3.4346)	0.0013
보육시설 수(천 명당)			13.7406 (2.5975)	<.0001	-11.7023 (2.5259)	<.0001
복지예산 비율(%)			13.2261 (1.157)	<.0001	0.077 (1.0871)	0.9435
1인 지방세액(백만 원)			45.4726 (19.3957)	0.0192	-5.6049 (15.6601)	0.7205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573.03 (193.7)	<.0001	1128.956 (154.7)	<.0001
절편	2328.935 (81.4532)	<.0001	2342.486 (73.6365)	<.0001	1994.182 (59.9856)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3/9		223/9		223/9	
고정효과 F-test	9.14	<.0001	9.47	<.0001	13.90	<.0001

B. 2015~2021년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2.0455 (3.5874)	0.5687	12.645 (3.4005)	0.0002	26.424 (3.2249)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40.7931 (4.6357)	<.0001	0.6638 (5.2225)	0.8989
복지예산 비율(%)			-19.8073 (2.5425)	<.0001	1.0957 (2.8654)	0.702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02.869 (23.1427)	<.0001	-3.4862 (21.8131)	0.8730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2230.731 (333.0)	<.0001	1442.13 (303.6)	<.0001
절편	2007.544 (119.4)	<.0001	1990.756 (126.1)	<.0001	2184.965 (116.4)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10/7		210/7		210/7	
고정효과 F-test	4.77	<.0001	6.10	<.0001	6.30	<.0001

이상의 결과는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 3을 적용하는 경우,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2005~2014년에 비해 2015~2021년 기간에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두 기간 사이의 변화가 여성의 나이나 기존 자녀 수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표 3-13〉은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세 연령층(25~29세, 30~34세, 35~39세)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2005~2014년과 2015~2021년 기간에 대해 각각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추정에는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된 모형 3을 도입하였다. 결과는 세 연령층 모두에 대해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전기에 비해 후기에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으로 25~29세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전기 0.9263에서 후기 3.4299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35~39세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전기 0.121에서 후

기 0.3372로 세 배 가까이 커졌다. 반면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30대 초반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의 규모는 전기에 비해 후기에 약간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13〉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A. 2005~2014년

변수	(1) 25~29세		(2) 30~34세		(3) 35~39세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9263 (0.5696)	0.1041	1.1392 (0.2603)	<.0001	0.121 (0.1059)	0.2534
보육시설 수(천 명당)	-1.4227 (0.4189)	0.0007	-0.5512 (0.1914)	0.0040	-0.3252 (0.0779)	<.0001
복지예산 비율(%)	-0.0487 (0.1803)	0.7870	-0.0769 (0.0824)	0.3508	0.1165 (0.0335)	0.0005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4644 (2.5973)	0.8581	-0.5565 (1.1867)	0.6392	-0.2028 (0.483)	0.6747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40.9082 (25.6492)	<.0001	70.4297 (11.7192)	<.0001	10.9597 (4.7694)	0.0217
절편	225.2086 (9.9487)	<.0001	127.4992 (4.5456)	<.0001	38.7639 (1.85)	<.00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3/9		223/9		223/9	
고정효과 F-test	11.61	<.0001	13.12	<.0001	8.54	<.0001

B. 2015~2021년

변수	(1) 25~29세		(2) 30~34세		(3) 35~39세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3.4299 (0.549)	<.0001	1.4731 (0.2025)	<.0001	0.3372 (0.0917)	0.0002
보육시설 수(천 명당)	0.7992 (0.889)	0.3688	-0.3943 (0.3279)	0.2294	-0.2914 (0.1485)	0.0499
복지예산 비율(%)	-0.0804 (0.4877)	0.8691	0.3477 (0.1799)	0.0535	-0.0305 (0.0815)	0.7082
1인 지방세액(백만 원)	-2.8597 (3.7131)	0.4414	-0.0614 (1.3695)	0.9642	1.9196 (0.6201)	0.0020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36.7258 (51.678)	0.0083	111.6566 (19.0599)	<.0001	35.7121 (8.6304)	<.0001
절편	192.9841 (19.8084)	<.0001	165.0111 (7.3057)	<.0001	68.6907 (3.308)	<.00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10/7		210/7		210/7	
고정효과 F-test	6.90	<.0001	6.88	<.0001	8.74	<.0001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기존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14>에 제시되어 있다. 유배우 여성을 자녀 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2005~2014년에 비해 2015~2021년 기간에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커지는 현상은 사라졌다.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에 대한 효과의 규모는 전기(25.5322)에 비해 후기(5.3737)에 훨씬 감소하였다.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에 미친 영향의 크기도 전기에서 후기로 오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출산지원금 지급이 둘 이상 자녀를 둔 유배우 여성의 추가적인 출산에 미친 효과의 크기만 전기에서 후기로 오면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효과: 기간별 분석

A. 2005~2014년

변수	(1)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		(2)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두 번째 자녀 출산율		(3) 둘 이상 유배우 여성 셋 이상 자녀 출산율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25.5322 (10.4553)	0.0147	3.066 (0.836)	0.0003	0.1392 (0.0468)	0.0030
보육시설 수(천 명당)	4.2576 (2.2814)	0.0622	-1.6037 (0.3374)	<.0001	-0.0013 (0.0536)	0.9802
복지예산 비율(%)	-0.5627 (0.9804)	0.5661	-0.0596 (0.1448)	0.6809	-0.0139 (0.0231)	0.5459
1인 지방세액(백만 원)	9.1912 (14.1226)	0.5153	0.4944 (2.0907)	0.8131	-0.3521 (0.3326)	0.2900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493.7945 (139.3)	0.0004	29.9859 (20.6471)	0.1466	1.0677 (3.2842)	0.7451
절편	353.0286 (54.1076)	<.0001	183.144 (8.0112)	<.0001	37.2021 (1.2738)	<.00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23/9		223/9		223/9	
고정효과 F-test	7.89	<.0001	13.88	<.0001	11.78	<.0001

B. 2015~2021년

변수	(1)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		(2)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두 번째 자녀 출산율		(3) 둘 이상 유배우 여성 셋 이상 자녀 출산율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5.3737 (1.2516)	<.0001	1.0495 (0.2718)	0.0001	0.1629 (0.0439)	0.0002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964 (1.5474)	0.9504	-0.6713 (0.3486)	0.0544	-0.1201 (0.0886)	0.1755
복지예산 비율(%)	0.7824 (0.8492)	0.3571	-0.0875 (0.1914)	0.6476	-0.0755 (0.0492)	0.1254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8363 (6.465)	0.7764	1.4067 (1.4548)	0.3338	-0.04 (0.3679)	0.9134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255.7002 (89.969)	0.0046	79.5376 (20.3092)	<.0001	8.8004 (5.1509)	0.0878
절편	348.3776 (34.4883)	<.0001	174.0903 (7.7296)	<.0001	38.879 (1.9559)	<.000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시군구 수/연도 수	210/7		210/7		210/7	
고정효과 F-test	7.54	<.0001	11.87	<.0001	5.89	<.0001

제3절 지원금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의 변화

1. 기초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지원금 액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금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그 한계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분석의 결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현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의 선행 연구는 지원금 규모에 따른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의 한계 효과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유지하였던 지자체(처치군)와 같은 기간 동안 현금 지원이 없었거나 지원 규모가 변화하지 않았던 지자체(대조군)를 선별하여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및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이철희 외, 2023). 분석 결과는 어떤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까지는 지원금 액수의 증가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액수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선행 연구는 특정한 액수의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같은 시기에 해당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의 수와 이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조군의 수가 적어서 대표성이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가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일관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른 현금 지급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에 이용된 마지막 연도(2020년)의 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을 기준으로, 출산지원금 ① 300만 원 미만, ②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③ 800만 원 이상 등의 지자체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 표본을 이용하여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분석은 어느 시점에 출산지원금 액수가 변화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지원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산지원금 규모가 작은 구간에서 변이가 발생한 표본과 그 규모가 큰 구간에서 지급액의 변이가 발생한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한계 효과 변화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출산지원금이 0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변화한 시군구에 비해 0원에서 300~800만

원 사이에서 변화한 시군구에서 출산지원금 일정 금액 지급 효과가 컸다면, 출산지원금이 300만 원 미만의 액수에서 300만~800만 원 사이의 액수로 증가할 때 그 한계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표 3-15〉는 2020년의 출산지원금 규모별로 구분한 세 유형의 시군구 표본에 대해 패널고정효과 모형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2020년 출산지원금 ① 300만 원 미만(이하 소액 시군구),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이하 중간액 시군구), 800만 원 이상 시군구(이하 고액 시군구)에서 각각 1.111, 1.305, 1.322로, 지원금 규모가 컸던 시군구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2020년의 출산지원금 규모와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는 지표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중간액, 고액 시군구의 분석 기간 평균 출산지원금은 각각 약 95만 원, 243만 원, 388만 원이었다. 이는 2020년에 높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의 대부분이 최근 지급액을 높였음을 알려준다.

〈표 3-15〉 2020년 지원금 규모별 시군구 출산지원금 효과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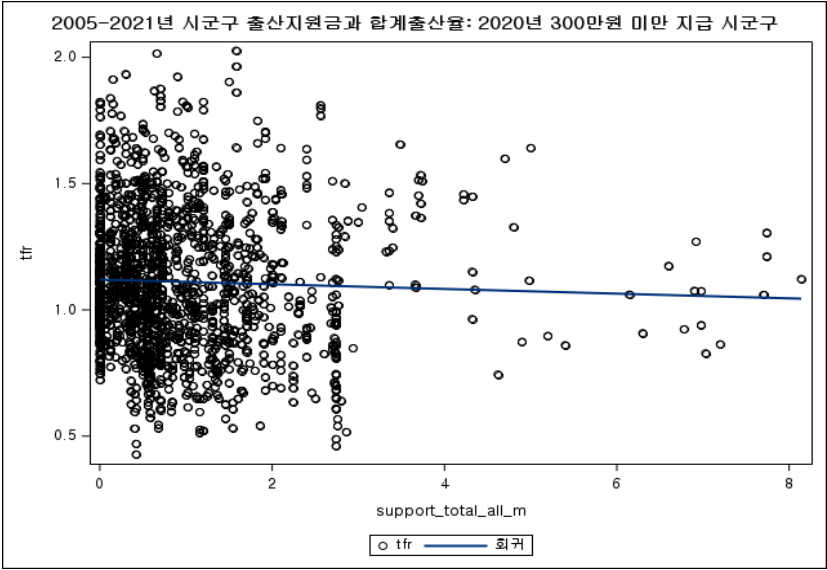
변수	300만 원 미만		300~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 합계출산율	1.111	0.273	1.305	0.294	1.322	0.258
시군구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111.972	14.977	112.025	19.732	108.672	19.869
시군구 30세 결혼 여성 유배우 합계출산율(천 명당)	835.226	143.684	808.858	175.308	784.691	190.873
시군구 25세 결혼 여성 유배우 여성 출산율(천 명당)	2168.25	287.71	2109.22	422.808	2000.17	430.346
시군구 25~2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224.843	46.839	219.63	66.063	203.86	66.745
시군구 30~34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154.056	24.109	148.297	31.962	142.703	33.591

변수	300만 원 미만		300~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군구 3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천 명당)	48.396	15.042	47.341	16.099	46.942	18.12
25~39세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천 명당)	392.628	165.664	475.086	260.068	436.697	256.691
25~39세 한 자녀 유배우 여성 둘째자녀 출산율(천 명당)	130.545	27.257	158.135	45.243	158.307	53.713
25~39세 다자녀 유배우 여성 추가 자녀 출산율(천 명당)	20.919	5.706	26.469	8.442	27.553	8.565
전체 평균 출산지원금(백만 원)	0.945	1.029	2.436	2.28	3.884	4.632
첫 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0.097	0.322	0.463	0.742	1.311	3.107
둘째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0.381	0.642	1.101	1.214	2.24	3.496
셋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백만 원)	1.416	1.565	3.538	3.42	5.29	6.155
보육시설 수(천 명당)	15.674	4.747	15.156	4.308	13.731	3.819
복지예산 비율(%)	36.764	15.233	23.045	10.671	18.092	7.482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072	1.122	0.981	0.834	0.829	0.371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0	0.043	-0.013	0.038	-0.016	0.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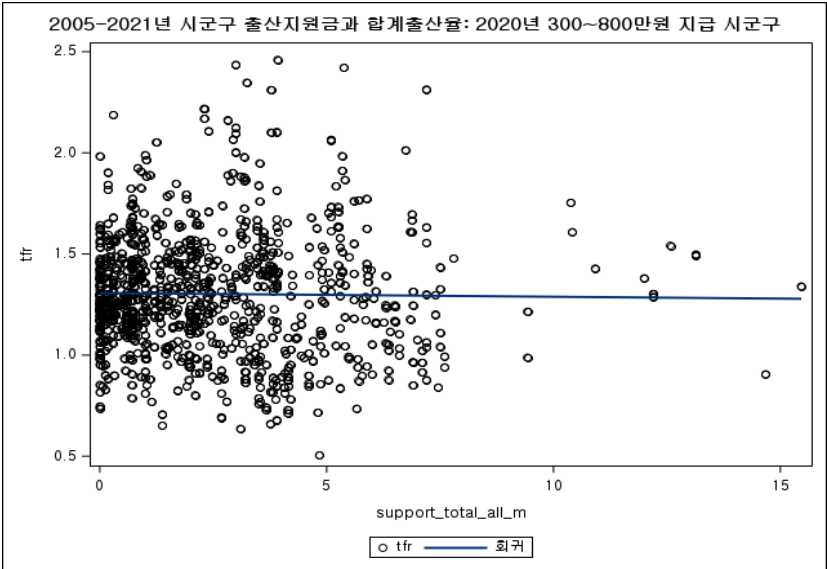
회귀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하기에 앞서서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네 가지 출산을 지표 간의 관계를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9]는 소액(패널 A), 중간액(패널 B), 고액(패널 C) 시군구에 대해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세 유형 모두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는 소액 시군구 $-0.0350(p=0.1658)$, 중간액 시군구 $-0.0145(p=0.6554)$, 고액 시군구 $-0.1049(p=0.0083)$ 로 추정되었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고액 시군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시군구에서 발견된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사이 양(+)의 상관관계가 세 유형의 시군구 간 변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림 3-9]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 2020년 출산
지원금 규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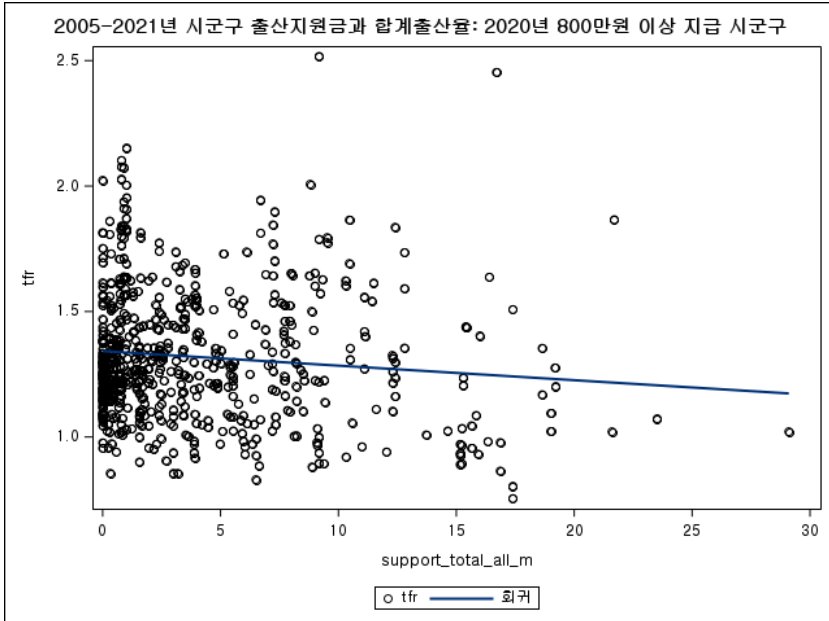
A.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



B.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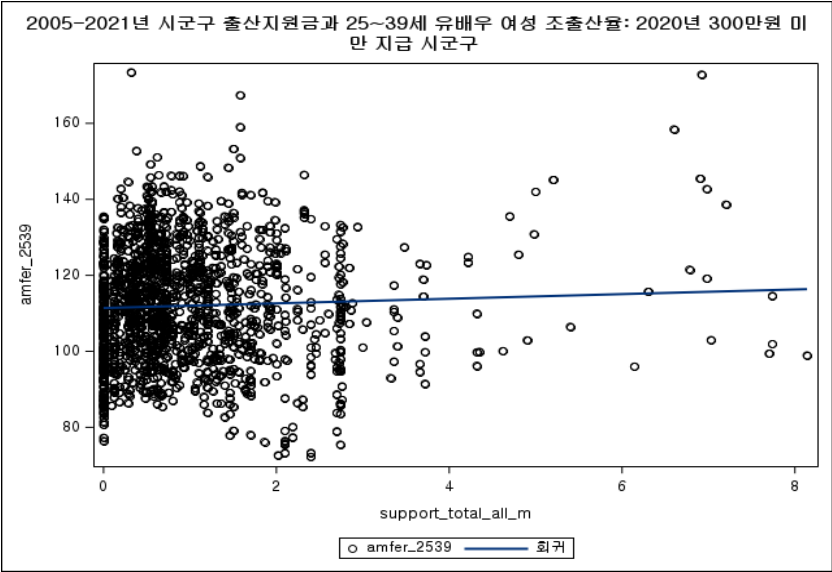
C. 2020년 출산지원금 800만 원 이상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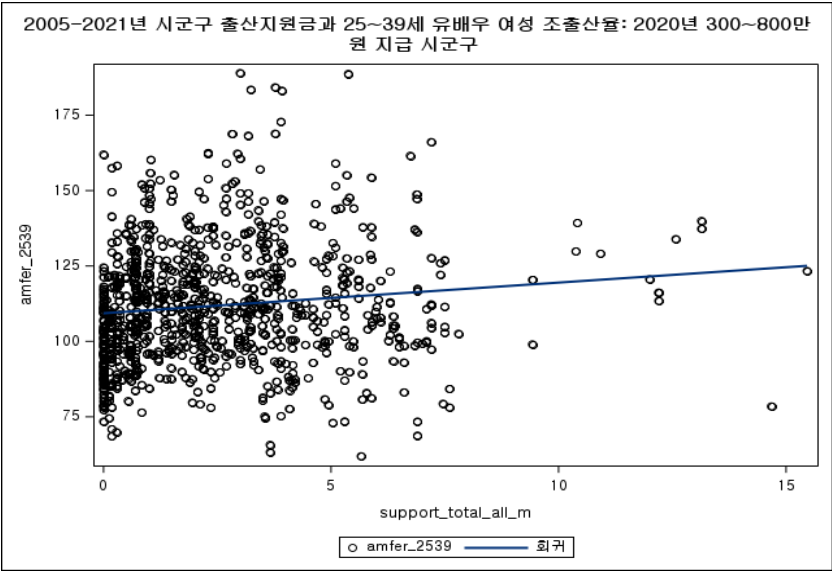
[그림 3-10]은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구분한 세 유형의 시군구에 대해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세 유형 모두 출산지원금과 유배우 조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소액 시군구 0.0419($p=0.0974$), 중간액 시군구 0.1198($p=0.0002$), 고액 시군구 0.2118($p<.0001$)로 추정되었다. 출산지원금과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사이에 발견된 양(+)의 상관관계는 2020년 출산지원금이 커질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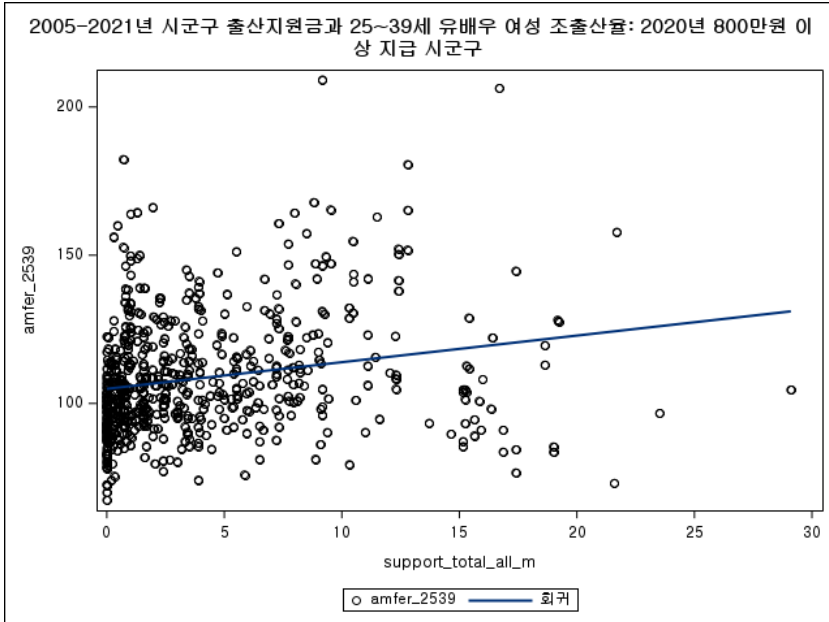
A.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



B.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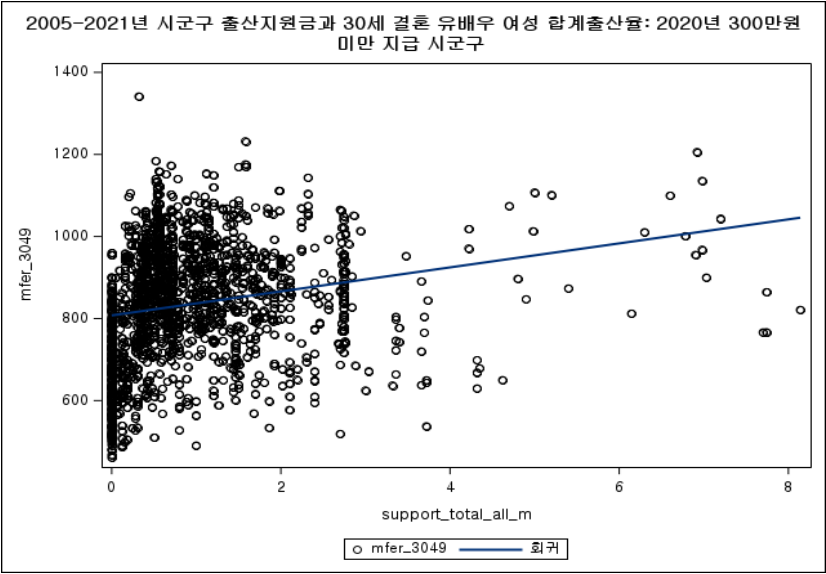
C. 2020년 출산지원금 800만 원 이상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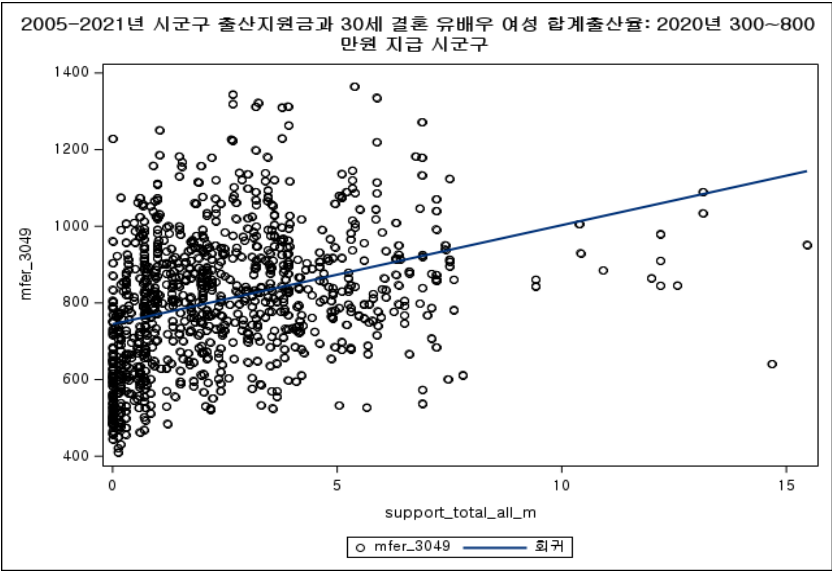
[그림 3-11]은 소액, 중간액, 고액 시군구에 대해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세 유형의 시군구 모두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합계출산율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소액 시군구 0.2095($p < .0001$), 중간액 시군구 0.3383($p < .0001$), 고액 시군구 0.4113($p < .0001$) 등으로 추정되었다.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사이 양(+)의 상관관계 역시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0년 출산지원금이 커질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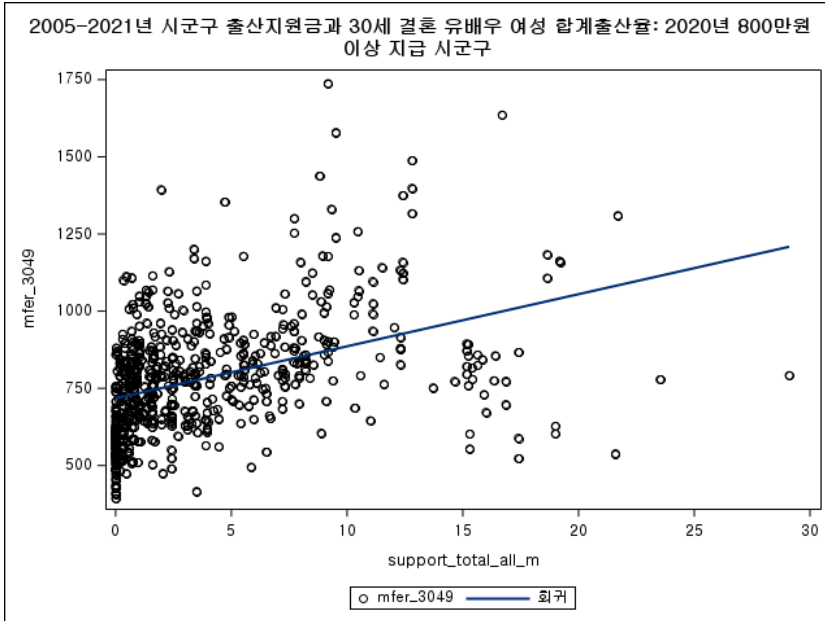
A.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



B.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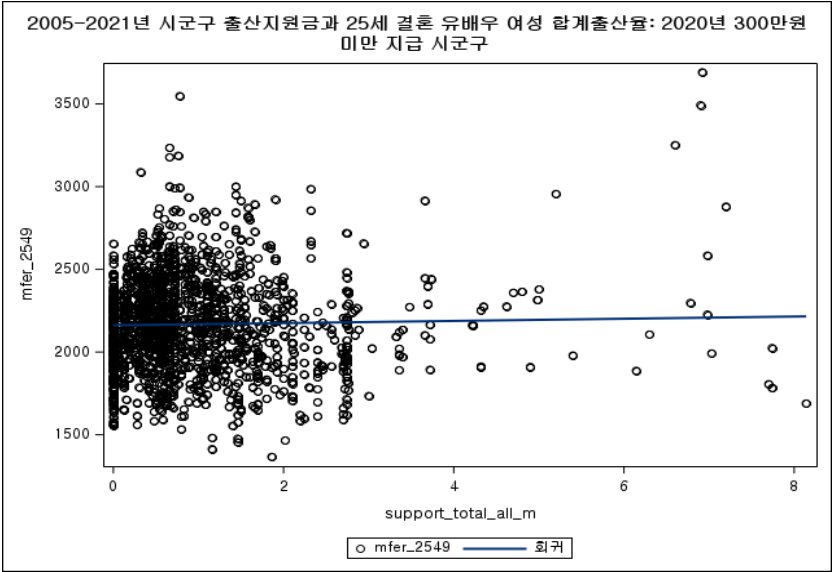
C. 2020년 출산지원금 800만 원 이상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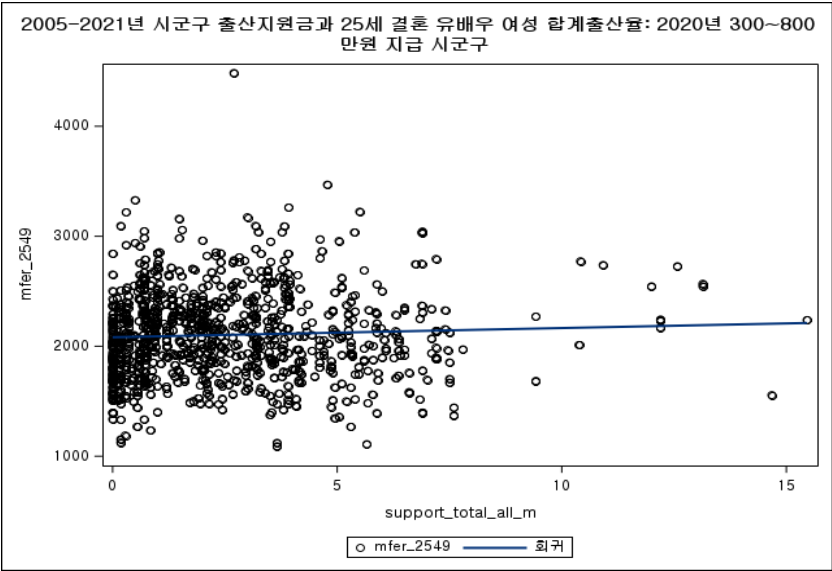
[그림 3-12]는 소액, 중간액, 고액 시군구에 대해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고액 시군구에서만 두 변수 간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소액 및 중간액 시군구에서는 매우 약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출산지원금과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간 상관계수는 소액 시군구 0.0238($p=0.3469$), 중간액 시군구 0.0490($p=0.1313$), 고액 시군구 0.2700($p<.0001$) 등으로 추정되었다. 출산지원금과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사이 양(+)의 상관관계 역시 다른 유배우 출산율 지표와 마찬가지로 고액 시군구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2005~2021년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다음 연도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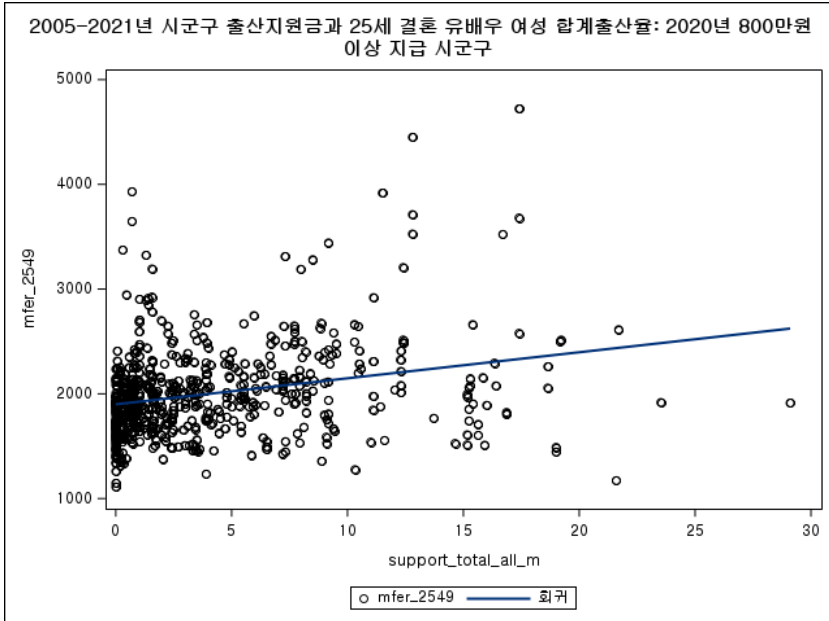
A.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



B.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C. 2020년 출산지원금 800만 원 이상 시군구



2. 출산지원금 규모별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미친 효과가 각 지자체의 2020년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회귀식 1에 제시된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세 부류(소액, 중간액, 고액)의 시군구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 시군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금만을 포함한 모형 1, 여기에 시군구의 특성 관련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 2, 연도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 3을 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16〉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을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A), 300

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B), 800만 원 이상 시군구(패널 C)에 대해 수행한 결과이다. 모든 유형의 시군구에서 출산지원금의 계수는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는 경우(모형 1, 모형 2) 음수로 추정되었고,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경우(모형 3)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3을 이용하여 추정한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간액 시군구에 대한 추정계수(0.0077)가 다른 유형의 시군구에서 얻은 추정계수(0.0051 및 0.0058)에 비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A. 3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0458 (0.0052)	<.0001	-0.006 (0.0046)	0.1957	0.0058 (0.0022)	0.0102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167 (0.0016)	<.0001	-0.005 (0.0009)	<.0001
복지예산 비율(%)			-0.0108 (0.0005)	<.0001	-0.0001 (0.0004)	0.7857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0771 (0.0091)	<.0001	0.0207 (0.0045)	<.0001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5506 (0.1347)	<.0001	1.2097 (0.0626)	<.0001
절편	1.3808 (0.0439)	<.0001	1.4218 (0.0372)	<.0001	1.3352 (0.0183)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106/16		106/16		106/16	
고정효과 F-test	22.55	<.0001	15.14	<.0001	71.52	<.0001

B.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028 (0.0032)	<.0001	-0.0144 (0.0034)	<.0001	0.0077 (0.0027)	0.0046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107 (0.0026)	<.0001	-0.0129 (0.0022)	<.0001
복지예산 비율(%)			-0.0124 (0.0015)	<.0001	0.0003 (0.0015)	0.8459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0322 (0.0143)	0.0242	0.003 (0.0102)	0.7656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8505 (0.1845)	<.0001	0.9163 (0.1326)	<.0001
절편	1.2046 (0.0548)	<.0001	1.3443 (0.0542)	<.0001	1.1257 (0.0403)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71/16		71/16		71/16	
고정효과 F-test	18.41	<.0001	12.85	<.0001	26.50	<.0001

C. 800만 원 이상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0093 (0.0014)	<.0001	-0.0041 (0.0018)	0.0208	0.0051 (0.002)	0.0084
보육시설 수(천 명당)			0.0002 (0.003)	0.9529	-0.0149 (0.0034)	<.0001
복지예산 비율(%)			-0.0031 (0.0023)	0.1832	0.0014 (0.0027)	0.612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0.1222 (0.0352)	0.0006	0.0399 (0.0374)	0.2867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4747 (0.2236)	<.0001	1.0378 (0.1968)	<.0001
절편	1.2348 (0.0525)	<.0001	1.4184 (0.0618)	<.0001	1.252 (0.0605)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50/16		50/16		50/16	
고정효과 F-test	22.68	<.0001	18.64	<.0001	25.06	<.0001

〈표 3-17〉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조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A),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B), 800만 원 이상 시군구(패널 C)에 대해 수행한 결과이다. 중간액 및 고액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형 2를 추정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출산지원금 추정계수는 모든 시군구 유형 및 모형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3을 기준으로 볼 때, 출산지원금이 이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의 규모는 세 유형 시군구 간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소액 시군구에서 얻어진 계수(0.7132)가 가장 컸고, 중간액 시군구에서 추정된 계수(0.5732)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39세 유배우 여성 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분석

A. 3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1.1756 (0.3895)	0.002 6	1.3187 (0.3868)	0.0007	0.7132 (0.2155)	0.0010
보육시설 수(천 명당)			1.8727 (0.1375)	<.0001	-0.5685 (0.0883)	<.0001
복지예산 비율(%)			-0.2108 (0.045)	<.0001	-0.024 (0.0367)	0.513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6.0833 (0.76)	<.0001	0.3094 (0.4288)	0.4707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21.7206 (11.2139)	<.0001	80.4985 (6.0196)	<.0001
절편	118.987 (3.2802)	<.000 1	118.9553 (3.094)	<.0001	103.2323 (1.7571)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106/16		106/16		106/16	
고정효과 F-test	5.71	<.000 1	8.54	<.0001	16.57	<.0001

B.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523 (0.2682)	0.051 5	-0.1924 (0.293)	0.5115	0.5732 (0.2568)	0.0259
보육시설 수(천 명당)			1.3308 (0.2223)	<.0001	-1.0509 (0.2106)	<.0001
복지예산 비율(%)			0.1295 (0.1271)	0.3086	0.3427 (0.1407)	0.0151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6175 (1.2168)	0.1841	-0.5026 (0.9595)	0.6005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57.3939 (15.7472)	<.0001	78.3556 (12.5223)	<.0001
절편	94.3818 (4.5801)	<.000 1	89.6015 (4.6296)	<.0001	80.1549 (3.8097)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71/16		71/16		71/16	
고정효과 F-test	7.13	<.000 1	9.20	<.0001	12.62	<.0001

C. 800만 원 이상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0.7984 (0.1351)	<.0001	0.2333 (0.1625)	0.1516	0.6289 (0.1833)	0.0006
보육시설 수(천 명당)			0.6127 (0.2788)	0.0284	-1.6537 (0.3195)	<.0001
복지예산 비율(%)			0.6497 (0.216)	0.0027	-0.0452 (0.2553)	0.8597
1인 지방세액(백만 원)			2.6523 (3.2537)	0.4153	1.8669 (3.5229)	0.5964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97.574 (20.68)	<.0001	53.5325 (18.5291)	0.0040
절편	116.1292 (4.882)	<.0001	100.7801 (5.7137)	<.0001	109.5761 (5.6984)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50/16		50/16		50/16	
고정효과 F-test	11.16	<.0001	13.09	<.0001	13.09	<.0001

〈표 3-18〉은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A),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B), 800만 원 이상 시군구(패널 C)에 대해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유형의 시군구 및 모형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 출산지원금의 추정계수는 2020년 출산지원금이 큰 시군구에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도고정효과가 분석에 포함되는 경우, 출산지원금 추정계수는 소액 시군구(5.7024)에 비해 중간액 시군구(6.0971)에서 약간 컸고, 고액 시군구(3.9862)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3-18〉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분석

A. 3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50.5481 (3.4185)	<.0001	22.3328 (2.895)	<.0001	5.7024 (1.6648)	0.0006
보육시설 수(천 명당)			16.493 (1.029)	<.0001	-3.0284 (0.6823)	<.0001
복지예산 비율(%)			4.5331 (0.3365)	<.0001	0.185 (0.2838)	0.5146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7.864 (5.6885)	0.0017	7.9596 (3.3133)	0.0164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872.4319 (83.9303)	<.0001	512.6368 (46.5122)	<.0001
절편	871.3545 (28.7919)	<.0001	822.0793 (23.1569)	<.0001	657.8234 (13.5765)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106/16		106/16		106/16	
고정효과 F-test	8.55	<.0001	14.44	<.0001	24.61	<.0001

B.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31.4881 (2.304)	<.0001	11.4868 (2.2559)	<.0001	6.0971 (1.9138)	0.0015
보육시설 수(천 명당)			15.4225 (1.7116)	<.0001	-6.2387 (1.5699)	<.0001
복지예산 비율(%)			8.8711 (0.9787)	<.0001	1.8701 (1.0488)	0.0749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4.2328 (9.3689)	0.1291	3.9226 (7.1511)	0.5835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066.758 (121.2)	<.0001	487.3567 (93.3234)	<.0001
절편	560.5949 (39.3473)	<.0001	378.0709 (35.6457)	<.0001	416.8666 (28.3925)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71/16		71/16		71/16	
고정효과 F-test	6.38	<.0001	11.79	<.0001	14.06	<.0001

C. 800만 원 이상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15.927 (1.4386)	<.0001	2.9527 (1.5214)	0.0528	3.9862 (1.6573)	0.0165
보육시설 수(천 명당)			11.1663 (2.6111)	<.0001	-12.4943 (2.8878)	<.0001
복지예산 비율(%)			12.3741 (2.0223)	<.0001	0.2712 (2.3082)	0.9065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30.7048 (30.4694)	<.0001	45.8067 (31.8462)	0.1509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840.8247 (193.7)	<.0001	432.4217 (167.5)	0.0101
절편	852.71 (51.9733)	<.0001	473.3523 (53.5061)	<.0001	669.2001 (51.5125)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50/16		50/16		50/16	
고정효과 F-test	4.41	<.0001	10.54	<.0001	8.28	<.0001

〈표 3-19〉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2020년 출산지원금 3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A),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패널 B), 800만 원 이상 시군구(패널 C)에 대해 수행한 결과이다. 이 유배우 출산율 지표를 분석에 도입하는 경우, 고액 시군구에서만 모든 모형에 대해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액 시군구에 대해 모형 2를 추정했을 때만 출산지원금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계수의 규모 역시 고액 시군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모형 3을 적용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의 계수는 소액 시군구 7.0938, 중간액 시군구 9.3250, 고액 시군구 22.0928 등으로 추정되었다.

〈표 3-19〉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에 미친 효과: 출산지원금 규모별 분석

A. 3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7.7544 (7.5548)	0.3049	18.61 (7.6265)	0.0148	7.0938 (5.4271)	0.1914
보육시설 수(천 명당)			32.4862 (2.7107)	<.0001	-7.2161 (2.2244)	0.0012
복지예산 비율(%)			-5.1875 (0.8865)	<.0001	-2.4593 (0.9251)	0.0079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28.271 (14.9855)	<.0001	-28.8539 (10.8014)	0.0076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860.965 (221.1)	<.0001	1182.545 (151.6)	<.0001
절편	2197.955 (63.6294)	<.0001	2224.47 (61.003)	<.0001	1910.763 (44.259)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106/16		106/16		106/16	
고정효과 F-test	5.36	<.0001	7.50	<.0001	9.85	<.0001

B.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7.7687 (6.0004)	0.1958	-4.2401 (6.7492)	0.5300	9.3259 (6.5948)	0.1577
보육시설 수(천 명당)			22.4718 (5.1207)	<.0001	-18.0713 (5.4096)	0.0009
복지예산 비율(%)			1.6095 (2.9281)	0.5827	3.7517 (3.6141)	0.2995
1인 지방세액(백만 원)			-16.5248 (28.0296)	0.5556	5.4526 (24.642)	0.8249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2908.22 (362.7)	<.0001	1475.123 (321.6)	<.0001
절편	1727.791 (102.5)	<.0001	1661.261 (106.6)	<.0001	1453.425 (97.8376)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71/16		71/16		71/16	
고정효과 F-test	5.71	<.0001	5.98	<.0001	7.99	<.0001

C. 800만 원 이상 시군구

변수	(1)		(2)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출산지원금(백만 원)	24.273 (2.9947)	<.0001	17.5317 (3.7219)	<.0001	22.0928 (4.613)	<.0001
보육시설 수(천 명당)			15.9309 (6.3875)	0.0129	-12.1964 (8.0384)	0.1298
복지예산 비율(%)			5.7286 (4.9471)	0.2474	-10.0782 (6.4249)	0.1173
1인 지방세액(백만 원)			20.3408 (74.5363)	0.7850	-20.9822 (88.6449)	0.8130
25~39세 여성 순 유입률			1382.087 (473.7)	0.0037	923.5116 (466.2)	0.0481
절편	1918.333 (108.2)	<.0001	1670.266 (130.9)	<.0001	1826.746 (143.4)	<.0001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시군구 수/연도 수	50/16		50/16		50/16	
고정효과 F-test	9.49	<.0001	9.91	<.0001	9.68	<.0001

제4절 소결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합계출산율을 0.011(분석 기간 평균의 0.9%),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1.24명(분석 기간 평균의 1.1%),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9.35명(분석 기간 평균의 1.14%)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대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인 선행 연구와 대체로 부합한다. 전반적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여성의 출산에 더 큰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대 간 차이의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젊은 유배우 여성의 잠재적인 선택성(selectivity)을 반영한 것이거나, 젊은 유배우 여성들의 출생아 중 첫째자녀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특히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 강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다수의 결혼한 부부가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는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즉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출산의 경계에 더 가까이 있어서 비교적 소액의 현금 지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를 가질 결정을 내리거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의 기간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시군구 패널고정효과 모형에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하면 2015~2021년 기간에도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가 유지되거나 이전 기간에 비해 커졌다. 반면 연도고정효과가 모형에

서 제외되면 2015년 이후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음수로 변하고,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효과가 모든 지역이 공통으로 경험한 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우, 2015년 이후의 기간에도 출산지원금 지급이 합계출산율과 여러 가지 유배우 출산율 지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2012년 혹은 2015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출산지원금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따라서 연도고정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여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의 공통요인을 통제하지 않을 때 출산지원금의 추정계수에는 하향 편이(downward bias)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바로잡으면, 이번 절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2015년 이후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의 크기는 2015년 이전에 비해 더 커진다. 요컨대 출산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한다면, 2015년 이후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근래에 와서 더 강화될 수 있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의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는 시간에 따른 지자체 출산지원금 증가이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지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초기의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다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선행 연구는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일시금 기준 약 1,000만 원 수준까지 증가한다는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이철희 외, 2023). 그런데 지자체의 평균적인 출산지원금이 2005~2014년 118만 원에서 2015~2021년 310만 원으로 높아졌으므로,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의 한계 효과가 더 커졌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의 구성 변화이다. 두 기간 사이 발생한 인구학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전체 출생아 가운데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즉 2012년 51.5%였던 첫째아 비율은 2021년 56.8%로 높아졌다. 그런데 제3절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첫째자녀 출산에 가장 강한 양(+)의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출생아의 출생 순위별 구성 변화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강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을 분석하는 경우(〈표 3-14〉),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전기에 비해 후기에 커지는 경향이 사라지는 결과는 이 가설과 부합한다.

한편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규모와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간 관계는 어떤 출산율 지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합계출산율과 30세 결혼 유배우 출산율을 지표로 이용하면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2020년 출산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이었던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컸고, 800만 원 이상인 시군구에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 합계출산율을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2020년 출산지원금이 800만 원 이상이었던 시군구에서 압도적으로 크고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수행한 분석은 지급액 규모에 따른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에 대해 단지 정황적인 증거를 제공해 줄 뿐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얻은 결과는 적어도 최근 제시된 연구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절에 제시한 결과는 현금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한계 효과가 대체로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구간 혹은 800만 원 이상 구간의 어떤 수준까지는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대체로 일시금 1,000만 원 내외 수준에서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최대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선행 연구(이철희 외, 2023)의 결론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제4장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제1절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정책 개선 욕구

제2절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의 인식

제3절 전문가 의견

제4절 소결

제4장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제1절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정책 개선 욕구

1. 아동수당 경험자 대상 조사의 개요

본 절에서 분석하는 아동수당 수급 가구 대상 조사는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 2023-0037호)을 받고,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문 조사 업체의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패널리스트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2,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아동수당을 경험한 연령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0~10세 자녀를 균등하게 배분(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막내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다자녀와 한 자녀를 1:1로, 도시와 읍면 지역을 8:2의 비율로 배분하여 각 분석 단위별 분석이 가능한 표본 수를 확보하였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 사항과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수급 현황 관련 문항, 아동수당 관련 문항, 자녀 계획 관련 사항 및 정책 욕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기본 사항으로는 거주 지역, 응답자 및 배우자의 연령과 경제활동 상태,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이 포함되고, 자녀별 출생년월과 아동수당 수급 경험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이용 경험에 있어서 막내자녀 기준 아동수당의 사용처를 질문하였고, 아동수당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동수당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질문하였으며 아동수당의 주

관적 평가를 위해 아동수당의 영향(출산에 미친 영향,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나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아동수당 개선 사항에 관해 질문하였다.

자녀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후 계획 자녀 여부 및 계획 자녀 수와 자녀 계획 시 아동수당의 영향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각 자녀별 양육비를 질문하고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와 정부에서 자녀 양육 관련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월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 아동수당이나 현금 지원 정책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정책 제안 등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표 4-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온라인 실태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본 사항	- (응답자 선정 문항)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 수급 경험, 주된 양육자 여부 - 거주 시도 및 읍면동 - 본인 및 배우자 연령, 경제활동 상태 - 주택 점유 형태, 가구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아동수당 및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 자녀 수 및 자녀별 출생년월, 아동수당 수급 경험, 수급 시기, 아동수당 수급 전후 양육비 지출 변화 여부, 지출 증가 항목 등 - 막내자녀 기준 자녀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현금 지원 수급 실태 - 아동수당의 사용처, 목적 및 인지 시기, 영향에 대한 평가, 도움 정도, 개선 사항, 만족도
자녀 계획 관련 사항 및 정책 욕구	- 자녀 계획 및 추가 자녀 계획 시 아동수당의 영향 - 자녀별 월평균 양육 비용과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 정부의 자녀에 대한 적정 지원 연령 및 적정 지원 금액 -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 관련 제안 사항

본 절에서 분석하는 아동수당 수급 가구 대상 온라인 실태 조사 결과의 기술 통계 분석을 위해 주로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만족도나 부담 정도 등과 같은 척도형 문항에 대해서는 ANOVA 또는 t-test를 실시하였다.

추가로 아동수당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온라인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자녀 양육 관련 사항과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에 대한 경험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자녀 양육 방식과 자녀 양육비,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 관련 사항과 각종 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방법과 사용처,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 및 개선점 등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FGI는 온라인 실태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상에게 다시 한 번 동의를 받고 실시했다. FGI는 2023년 8월 2일과 8월 3일 양일에 걸쳐 진행했으며, FGI를 통해 공유한 내용은 동의를 받고 녹취하였고 녹취된 음성 파일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2. 아동수당 경험자 대상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아동수당을 수급한 적이 현재 수급하고 있는 가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4-2>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59.0%였고 아내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41.6%, 35~39세 35.3%, 30~34세 19.8%, 30세 미만 3.3%로 평균 38.2세였다. 남편 연령 역시 40세 이상이 58.4%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0.3세였다. 자녀 수는 한 자녀 50%, 두 자녀 41.6%, 세 자녀 이상이 8.4%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15.5%, 인천과 경기 36.0%로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영남권 24.2%, 충청권 11.5%, 호남권 8.3%, 강원 및 제주 4.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 상황에 관한 문항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고용 상태와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과 저소득 가구 여부를 질문하였다. 고용 상태의 경우, 남편은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80.6%로 가장 많았고 자

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 10.8%,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6.3%였으며 비경제활동 상태 2.3%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44.5%로 가장 많았으나 비경제활동도 39.3%로 많았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0.0%,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 6.2%의 순이었다. 남편과 아내의 경제활동 상태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맞벌이 가구 57.1%, 외벌이 가구 42.9%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가 64.2%, 전세 21.2% 등이었다. 가구소득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 미만이 37.2%, 4백만 원 미만 25.6%,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 미만 22.8%, 8백만 원 이상 14.5% 순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나 차상위 계층 가구는 1.7%로 매우 적었다.

〈표 4-2〉 아동수당 수급 가구 온라인 실태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비율	(명)	구 분	비율	(명)
전체	100.0	(2,000)	전체	100.0	(2,000)
성별			아내 고용 상태		
남성	41.1	(821)	정규직 임금근로	44.5	(886)
여성	59.0	(1,179)	비정규직 임금근로	10.0	(198)
아내 연령(평균: 38.2세)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6.2	(124)
30세 미만	3.3	(65)	비경제활동	39.3	(781)
30~34세	19.8	(394)	남편 고용 상태		
35~39세	35.3	(702)	정규직 임금근로	80.6	(1,591)
40세 이상	41.6	(828)	비정규직 임금근로	6.3	(125)
남편 연령(평균: 40.3세)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8	(213)
30세 미만	1.2	(23)	비경제활동	2.3	(46)
30~34세	11.1	(220)	맞벌이 여부		
35~39세	29.3	(579)	맞벌이	57.1	(1,142)
40세 이상	58.4	(1,153)	외벌이	42.9	(858)

구 분	비율	(명)	구 분	비율	(명)
자녀 수(평균: 1.59명)			거주 주택 점유 형태		
1명	50.0	(1,000)	자가	64.2	(1,284)
2명	41.6	(832)	전세	21.2	(424)
3명 이상	8.4	(168)	월세	7.9	(158)
거주지			기타	6.7	(134)
서울	15.5	(309)	월평균 가구소득		
인천/경기	36.0	(720)	400만 원 미만	25.6	(511)
충청권(대전,세종,충청)	11.5	(230)	400~600만 원 미만	37.2	(743)
호남권(광주,전라)	8.3	(166)	600~800만 원 미만	22.8	(456)
영남권(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24.2	(484)	800만 원 이상	14.5	(290)
강원/제주	4.6	(91)	저소득가구 여부		
거주지(동/읍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가구	1.7	(34)
동 지역	80.0	(1,599)	국기초/차상위 가구 아님	98.3	(1,966)
읍면 지역	20.1	(401)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연령과 고용 상태는 응답자 기준이 아닌 아내와 남편 기준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3) 부부가 모두 비경제활동인 경우(15케이스)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36명)는 외별이에 포함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FGI 참여 대상자는 <표 4-3>과 같다. FGI는 막내자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영아(0~2세) 자녀, 유아(3세~미취학)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 3개 집단(group)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집단별 7명씩 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 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 한 자녀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였고, 비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표 4-3> FGI 참여자의 특성

구분	연번	만 연령	가구 경제활동	지역	자녀 수
영아(0~2세) 자녀 집단	영아1	36	외벌이	서울	1명
	영아2	35	맞벌이	경기	2명
	영아3	36	맞벌이	서울	1명
	영아4	37	맞벌이	대전	1명
	영아5	38	외벌이	경기	2명
	영아6	38	맞벌이	서울	2명
	영아7	36	맞벌이	서울	2명

구분	연번	만 연령	가구 경제활동	지역	자녀 수
유아(3세~미취학) 자녀 집단	유아1	37	맞벌이	서울	2명
	유아2	46	외벌이	경기	1명
	유아3	41	맞벌이	충남	1명
	유아4	35	맞벌이	서울	2명
	유아5	36	맞벌이	서울	2명
	유아6	35	맞벌이	경기	1명
	유아7	40	외벌이	서울	3명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자녀 집단	초등1	36	외벌이	충남	1명
	초등2	37	외벌이	서울	1명
	초등3	45	외벌이	경기	3명
	초등4	43	외벌이	충북	3명
	초등5	44	맞벌이	서울	2명
	초등6	38	맞벌이	서울	1명
	초등7	39	맞벌이	경기	1명

3. 아동수당 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

가.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양육비와 아동수당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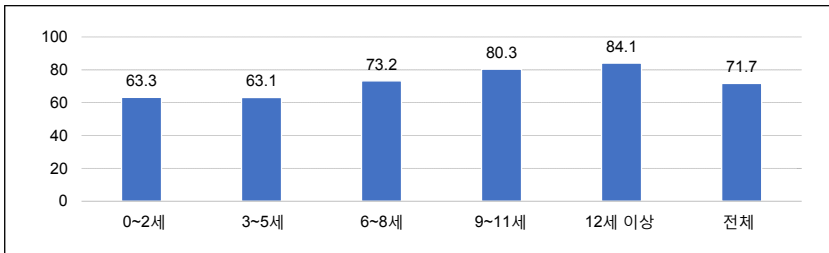
아동수당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온라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각 가구의 자녀별 월평균 양육 비용을 조사하였고, FGI를 통해 자녀 양육비의 항목에 관해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 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막내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와 아동수당 수급 전후 자녀의 양육비 지출 변화를 조사하였다.

1) 자녀 양육비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별 월평균 양육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자녀 3,184명의 월평균 양육비는 71.7만 원이었다. 자녀의 연령별로는 0~2세가 63.3만 원, 3~5세가 63.1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는 두드러진 연령별 차이 없이 양육 비용은 거의 같았고, 6~8세 73.2만 원, 9~11세 80.3만 원, 12세 이상 84.1만 원으로 취학 이후에는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월평균 양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 원)



주: 자녀를 단위로 자료를 재구조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 가구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 총 3,184명의 자녀가 분석에 포함되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1명에 대한 월평균 양육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미만인 28.6%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미만인 25.8%,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 21.3%, 7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 15.4%, 150만 원 이상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1명에 대한 양육 비용이 높았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자녀 1명에 대한 월평균 양육 비용이 높았고, 읍면 지역은 월평균 양육 비용이 가장 적었다. 또 연령은 연령이 많을수록 월

평균 양육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와 모 연령에 따른 차이는 지역과 모 연령에 따라 자녀 수에 차이가 나타나 자녀 수 차이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 수는 대도시가 가장 적었고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으로 많았으며 모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 연령에 따른 양육비 차이는 자녀 수 외에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도 포함한다. 대체로 모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인 경우와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외별이나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 비용이 높았다. 맞벌이나 자가일 때는 외별이나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비해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가구소득 차이에 기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표 4-4〉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단위: %, 명, 만 원)

구분	50 만 원 미만	50~70 만 원 미만	70~100 만 원 미만	100~ 150 만 원 미만	150 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25.8	28.6	15.4	21.3	8.9	100.0	(3,184)	71.7
자녀 연령($\chi^2=192.307^{***}$)								
0~2세	33.8	32.0	10.3	16.7	7.2	100.0	(600)	63.3
3~5세	38.2	26.4	12.1	15.9	7.5	100.0	(736)	63.1
6~8세	21.7	30.8	16.7	22.5	8.2	100.0	(825)	73.2
9~11세	15.2	28.8	19.3	25.5	11.3	100.0	(711)	80.3
12세 이상	16.3	20.8	20.5	30.4	11.9	100.0	(312)	84.1
지역($\chi^2=62.976^{***}$)								
대도시	21.7	26.4	16.6	23.1	12.2	100.0	(1,167)	78.5
중소도시	26.7	28.5	14.6	21.4	8.7	100.0	(1,317)	71.2
읍면	31.0	32.3	14.9	18.1	3.7	100.0	(700)	61.1
모 연령($\chi^2=42.502^{***}$)								
30세 미만	35.4	35.4	11.5	13.5	4.2	100.0	(96)	59.0
30~34세	31.3	30.9	12.2	18.5	7.1	100.0	(550)	64.7
35~39세	26.7	30.0	15.0	20.1	8.2	100.0	(1,084)	70.1
40세 이상	22.6	26.2	17.1	23.8	10.4	100.0	(1,435)	76.2

구분	50 만 원 미만	50~70 만 원 미만	70~100 만 원 미만	100~ 150 만 원 미만	150 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맞벌이 여부($\chi^2=14.030^{**}$)								
맞벌이	25.4	26.5	15.7	22.6	9.8	100.0	(1,821)	73.6
외벌이	26.4	31.3	15.0	19.6	7.7	100.0	(1,363)	69.1
가구소득($\chi^2=242.991^{***}$)								
400만 원 미만	34.2	29.9	13.1	18.0	4.8	100.0	(793)	62.3
400~600만 원 미만	26.3	31.5	17.0	18.6	6.6	100.0	(1,200)	67.0
600~800만 원 미만	23.7	27.4	16.9	24.4	7.6	100.0	(738)	71.6
800만 원 이상	13.2	20.5	12.6	29.4	24.3	100.0	(453)	100.7
자가 여부($\chi^2=37.206^{***}$)								
자가	22.8	29.2	16.9	21.1	9.9	100.0	(2,079)	74.2
자가 아님	31.4	27.3	12.6	21.7	7.0	100.0	(1,105)	66.9
자녀 수($\chi^2=181.058^{***}$)								
1명	15.9	25.9	15.7	27.6	14.9	100.0	(1,000)	85.4
2명	27.4	30.6	16.0	18.9	7.1	100.0	(1,664)	67.8
3명 이상	39.8	27.1	12.9	17.1	3.1	100.0	(520)	57.5

주: 1) 한 가구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단위로 자료를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자녀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 변수는 한 가구가 여러 번 포함될 수 있음.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양육비 항목에 있어서 FGI 결과, 영아 자녀의 경우 양육비는 주로 식비나 기저귀 비용 등으로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자녀인 경우에는 물려받는 물품이 많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벌이는 자녀를 자녀의 조부모님이 봐주시거나 돌보미 등을 이용할 시에 돌봄 비용이 많이 들었다.

“양육비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식비와 기저귀예요. 첫째랑 성별이 같으니까 옷도 물려 입고, 어린이집도 국공립이니까 한 달에 1만 원밖에 안 내고 그래요. ... (중략)... 먹는 것도 어른하고 거의 비슷하게 25개월에서 먹을 수 있어서... 기저귀

외에는 이 아이한테만 특별히 들어가는 건 딱히 없어요. 비용이 10~20만 원 사이. 나가서 먹어봤자 애가 얼마나 많이 먹겠으며… 옷을 입거나 장난감을 사는 게 그렇게…” (영아5, 외벌이, 다자녀)

“첫째랑 동성이라서 부담은 크지 않아요. 제가 아이 먹을 것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식비에 30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영아7, 맞벌이, 다자녀)

“기저귀랑 했을 때 대략 50~6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유식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플러스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영아1, 외벌이, 한 자녀)

“저는 어머니께 양육을 도움받고 있는데, 100만 원 전후로 용돈을 드리는 부분이 제일 커요. 등하원을 도와주시고, 근처에 살다 보니까 식사도 차려 주시고, 아기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영아3, 맞벌이, 한 자녀)

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유치원비가 발생하며,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자녀 양육비에 사교육비가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유치원비가 거의 42만 얼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섯 살 되면 사교육도 생각하는데 부담이 크죠. 특히 사교육비가 갑자기 확 오르더라고요.” (유아1, 맞벌이, 다자녀)

“아이랑 문화 생활하고,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하는 비용이랑 의료비,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유아2, 외벌이, 한 자녀)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들어가는 특별활동… 그게 13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장 체험을 꼭 가더라고요. 그런 게 한 달에 8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따로 사교육은 안 하고 있어서 교육비는 따로 지출이 안 되고요. 주말마다 체험학습 가는 것… 입장료, 문화 생활 포함하면 거의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아7, 외벌이, 다자녀)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특활비가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나가요. 그리고 영어, 팩토. 큰 애는 태권도이고, 둘째는 학습지 해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린이집 정부 지원금) 빼면 30만 원 정도 써요.” (유아4, 맞벌이, 다자녀)

“전 식비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사교육을 안 해야 하는데... 밀크티 같은 것이 꽤 비싸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12만 원 나가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사교육비, 특활비 해서 그것만 5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유아6, 맞벌이, 한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경우 다양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며, 학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사교육 목적도 있지만 맞벌이 경우에는 돌봄의 목적도 있었다.

“막내가 학원을 미술 학원과 축구만 다녀서, 식비까지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 학원비는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서 부담이에요.” (초등4, 외벌이, 다자녀)

“방과 후와 사교육만 합쳐도 70만 원이 나와요. 식비까지 포함하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초등7, 맞벌이, 한 자녀)

“저희는 3학년부터는 돌봄이 없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돌봄이 안 되니까 방과 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학원 스케줄을 퇴근 시간에 맞추는 식으로. 방과 후를 주 5일 세팅하고요.” (초등6, 맞벌이, 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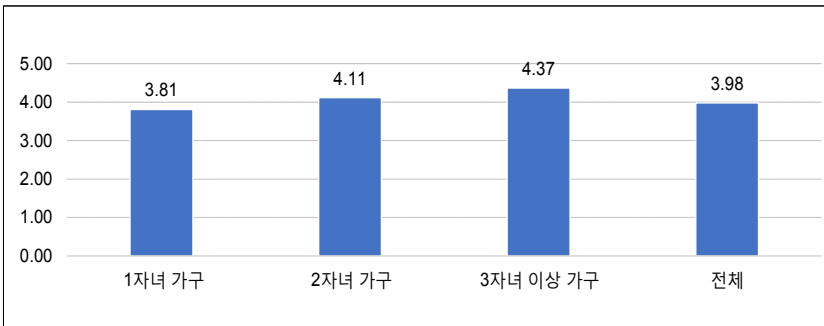
“저는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평상시에는 학교 끝나고 자기가 원하는 수업이 있을 때는 방과 후 수업을 듣고요. 돌봄의 목적은 아니고, 배우고 싶은 과목. ...(중략)... 아닌 날에는 대부분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도 제가 아이를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등2, 외벌이, 한 자녀)

2)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아동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 3.98점으로 다소 부담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가 3.81점인 반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가 4.37점으로 나타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계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림 4-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단위: 점)



주: 1) 총 2,000명 응답.

2) 전혀 부담되지 않음 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 2점, 적절함 3점, 다소 부담됨 4점, 매우 부담됨 5점으로 계산.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양육비의 부담 정도는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59.0%, 매우 부담됨 21.9%, 적절함 15.4%, 별로 부담되지 않음 3.1%, 전혀 부담되지 않음 0.7%로 나타나, 부담된다는 응답이 80.9%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3.8%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인 경우 가계에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별로 부담 되지 않음	적절함	부담됨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명)	평균
전체	3.8	0.7	3.1	15.4	80.9	59.0	21.9	100.0	(2000)	3.98
지역(F=1.230)										
대도시	4.3	1.0	3.2	16.3	79.5	56.4	23.1	100.0	(775)	3.97
중소도시	3.8	0.5	3.3	15.9	80.3	59.7	20.6	100.0	(824)	3.97
읍면	2.7	0.2	2.5	12.7	84.5	62.6	21.9	100.0	(401)	4.03
맞벌이 여부(F=23.512**)										
맞벌이	4.9	0.8	4.1	17.4	77.7	58.3	19.4	100.0	(1,158)	3.91
외벌이	2.1	0.5	1.7	12.7	85.2	60.0	25.2	100.0	(842)	4.08
가구소득(F=17.936***)										
400만 원 미만	1.2	0.2	1.0	12.9	85.9	59.3	26.6	100.0	(511)	4.11
400~600만 원 미만	2.6	0.0	2.6	15.1	82.4	59.9	22.5	100.0	(743)	4.02
600~800만 원 미만	4.4	1.3	3.1	15.8	79.8	60.5	19.3	100.0	(456)	3.93
800만 원 이상	10.3	2.1	8.3	20.0	69.7	53.8	15.9	100.0	(290)	3.73
자녀 수(F=66.866***)										
1명	6.4	0.9	5.5	20.3	73.3	58.4	14.9	100.0	(1,000)	3.81
2명	1.3	0.5	0.8	11.3	87.4	61.5	25.8	100.0	(832)	4.11
3명 이상	0.0	0.0	0.0	6.5	93.5	50.0	43.5	100.0	(168)	4.37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부담되지 않음 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음 2점, 적절함 3점, 다소 부담됨 4점, 매우 부담됨 5점으로 계산.

3)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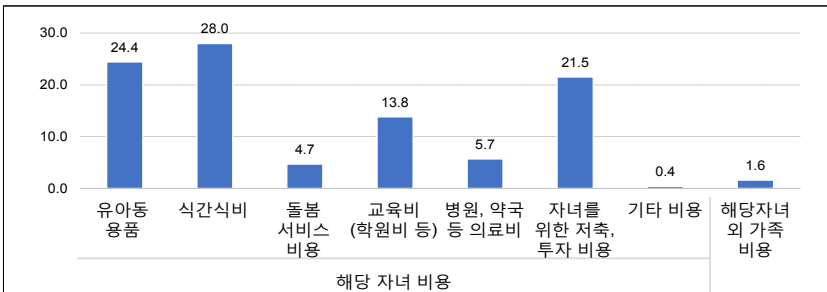
3) 아동수당 사용처

현재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용처는 식·간식비가 2만 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동 용품이 약 2만 4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이 약 2만 2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

동수당을 받는 해당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9만 8천 원 정도로 대부분이었고 해당 자녀 외의 가족을 위한 비용은 2천 원 정도였다.

[그림 4-3]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456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이러한 아동수당 사용처는 해당 자녀의 연령이나 출생 순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적으면 유아동 용품 비용이나 식·간식비가 많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비(학원비 등) 비중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동 용품 비용이,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비(학원비 등)나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약간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자녀가 첫째자녀이면 유아동 용품비나 자녀를 위한 저축 또는 투자 비용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셋째자녀 이상이면 식·간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다자녀인 경우 장난감이나 의류, 유모차 등 유아동 용품은 한 자녀에 비해 어느 정도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자녀별 월평균 양육비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일부 자녀를 위한 투자나 저축과 같은 분명한 출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스스로 아동수당의 사용처로 임의로 명명한다는 점에서 해석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4-6〉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막내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0~7세)	24.4	28.0	4.7	13.8	5.7	21.5	0.4	1.6	100.0	(1,456)
연령										
0~2세	33.8	30.5	4.4	2.8	6.3	19.9	0.3	1.8	100.0	(546)
3~5세	22.2	27.0	4.5	16.1	5.9	22.7	0.7	1.1	100.0	(546)
6~7세	13.6	25.8	5.3	26.9	4.4	21.9	0.3	1.7	100.0	(364)
지역										
대도시	24.8	29.3	4.2	13.0	5.8	20.9	0.4	1.6	100.0	(568)
중소도시	24.0	26.9	5.3	14.5	6.1	21.4	0.3	1.5	100.0	(593)
읍면	24.5	27.7	4.5	13.8	4.6	22.7	0.7	1.4	100.0	(29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3	27.5	5.7	12.6	5.3	22.4	0.5	1.7	100.0	(834)
외벌이	24.5	28.7	3.3	15.4	6.2	20.2	0.3	1.3	100.0	(622)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27.5	29.1	2.5	13.6	6.2	18.9	0.5	1.7	100.0	(413)
400~600만 원 미만	23.3	30.7	5.1	11.8	5.5	22.0	0.1	1.5	100.0	(520)
600~800만 원 미만	25.5	23.0	6.0	14.7	5.7	22.8	0.8	1.5	100.0	(327)
800만 원 이상	19.0	27.0	5.9	18.1	5.0	23.0	0.5	1.5	100.0	(196)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27.8	26.2	4.2	11.5	5.0	23.3	0.4	1.6	100.0	(777)
둘째자녀(2명)	20.7	28.7	5.1	17.5	6.3	19.8	0.6	1.3	100.0	(560)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19.4	36.6	5.4	11.7	6.9	17.3	0.2	2.5	100.0	(119)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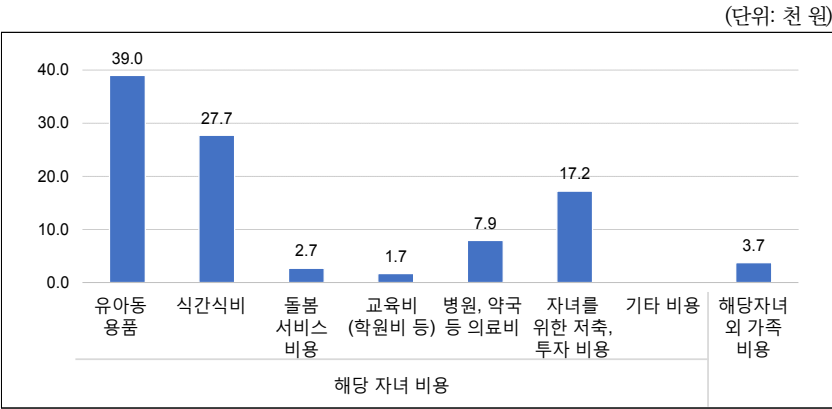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0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유아동 용품비가 3만 9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식·간식비가 2만 8천 원 정도,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1만 7천 원 정도 순으로 나타나 유아동 용품비 비중이 가장 컸다.

[그림 4-4] 0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0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읍면 지역 거주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 첫째자녀인 경우 유아동 용품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맞벌이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이 약간 많았다.

<표 4-7>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0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0세)	39.0	27.7	2.7	1.7	7.9	17.2	-	3.7	100.0	(182)
지역										
대도시	38.8	27.4	3.4	1.7	6.7	17.8	-	4.0	100.0	(72)
중소도시	34.7	29.5	2.8	2.4	9.0	17.1	-	4.4	100.0	(77)
읍면	49.7	24.2	1.2	-	7.6	15.8	-	1.5	100.0	(33)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0	28.3	4.5	2.5	7.0	14.4	-	4.3	100.0	(97)
외벌이	39.1	27.1	0.8	0.8	8.9	20.4	-	3.1	100.0	(85)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44.6	25.1	0.6	0.7	6.8	20.0	-	2.1	100.0	(71)
400~600만 원 미만	37.8	29.2	2.3	1.4	9.6	13.8	-	5.9	100.0	(56)
600~800만 원 미만	36.2	30.8	6.2	3.5	6.2	11.6	-	5.4	100.0	(37)
800만 원 이상	26.7	27.2	5.6	2.8	10.0	27.8	-	-	100.0	(18)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44.0	24.2	1.8	0.5	7.8	18.6	-	3.1	100.0	(98)
둘째자녀(2명)	33.3	33.2	4.0	3.7	8.4	13.5	-	3.9	100.0	(66)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32.8	27.2	3.3	1.1	6.1	22.8	-	6.7	100.0	(18)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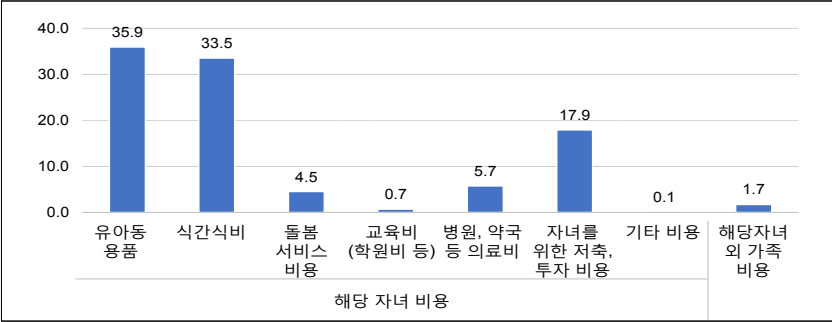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1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유아동 용품비가 약 3만 6천 원, 식·간식비가 약 3만 4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 및 투자 비용이 약 1만 8천 원으로 0세 자녀와 비슷하지만 유아동 용품비 비중은 줄어들고 식·간식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림 4-5] 1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1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첫째자녀인 경우 유아동 용품비 비중이,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식·간식비 비중이 약간 높았다.

<표 4-8>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1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1세)	35.9	33.5	4.5	0.7	5.7	17.9	0.1	1.7	100.0	(182)
지역										
대도시	35.2	34.1	5.8	0.8	7.0	16.1	0.0	1.0	100.0	(74)
중소도시	37.8	31.7	4.9	0.8	4.8	17.2	-	2.9	100.0	(78)
읍면	33.0	36.7	-	-	5.1	24.5	0.7	-	100.0	(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8	36.1	4.8	0.7	5.0	17.1	0.2	1.3	100.0	(114)
외벌이	37.9	29.0	3.8	0.6	7.0	19.4	-	2.4	100.0	(68)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39.9	30.6	2.5	0.6	5.6	16.5	-	4.1	100.0	(63)
400~600만 원 미만	37.2	34.3	5.3	0.8	4.3	17.5	0.0	0.7	100.0	(63)
600~800만 원 미만	42.9	28.7	6.5	-	8.5	12.8	0.6	-	100.0	(31)
800만 원 이상	14.2	44.4	4.8	1.2	6.2	29.2	-	-	100.0	(25)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38.5	31.3	5.9	0.5	4.7	16.7	0.2	2.3	100.0	(127)
둘째자녀(2명)	29.3	37.0	1.4	1.4	8.8	21.6	0.0	0.4	100.0	(43)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32.5	43.3	-	-	5.8	18.3	-	-	100.0	(12)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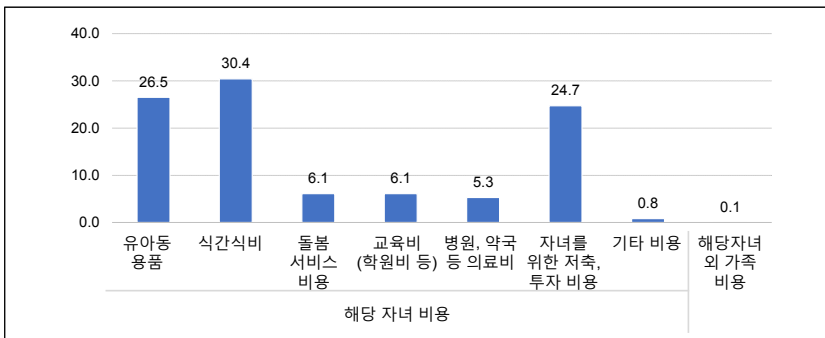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2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식·간식비가 약 3만 원, 유아동 용품비 약 2만 7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 약 2만 5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돌봄 서비스 비용과 교육비(학원비 등)가 각각 6천 원 정도로 나타나 금액은 적지만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4-6] 2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2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외벌이 가구에 비해 돌봄 서비스 비용이 약간 높은 반면 교육비는 외벌이 가구가 약간 높았다.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적었다.

〈표 4-9〉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2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2세)	26.5	30.4	6.1	6.1	5.3	24.7	0.8	0.1	100.0	(182)
지역										
대도시	30.8	29.7	5.3	3.8	6.6	23.5	-	0.3	100.0	(73)
중소도시	23.9	29.4	6.2	9.3	3.6	27.0	0.6	-	100.0	(69)
읍면	23.3	33.2	7.4	4.6	5.9	23.0	2.5	-	100.0	(4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0	30.9	7.4	4.2	6.6	25.6	0.4	-	100.0	(105)
외벌이	28.7	29.7	4.4	8.6	3.6	23.5	1.3	0.3	100.0	(77)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26.5	31.5	5.0	11.3	3.6	19.8	2.2	-	100.0	(45)
400~600만 원 미만	28.8	31.1	6.3	3.1	5.9	24.7	-	0.3	100.0	(80)
600~800만 원 미만	29.0	28.8	7.3	5.3	5.3	23.5	1.0	-	100.0	(40)
800만 원 이상	10.6	27.6	5.9	8.2	7.1	40.6	-	-	100.0	(17)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27.4	31.2	6.5	6.8	4.1	23.4	0.4	0.2	100.0	(100)
둘째자녀(2명)	25.5	27.4	6.7	6.1	7.5	25.4	1.4	-	100.0	(70)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25.8	40.8	-	-	2.2	31.3	-	-	100.0	(12)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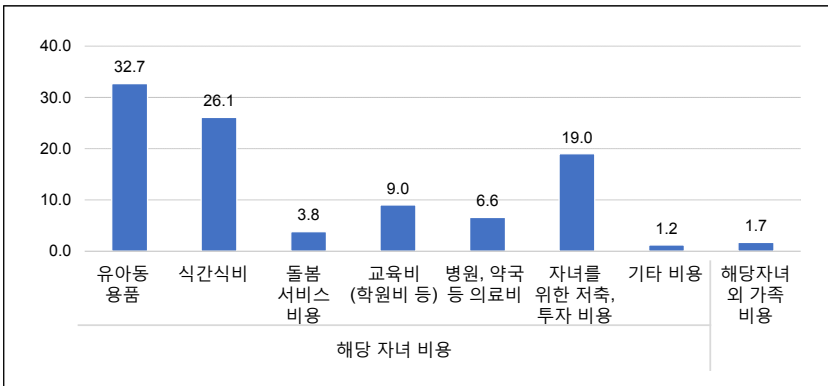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3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유아동 용품비가 약 3만 3천 원, 식·간식비가 약 2만 6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1만 9천 원, 교육비(학원비 등)가 9천 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4-7] 3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3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첫째자녀는 유아동 용품비 비중이, 둘째 이상 자녀는 식·간식비 비중이 약간 높았다.

〈표 4-10〉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3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3세)	32.7	26.1	3.8	9.0	6.6	19.0	1.2	1.7	100.0	(182)
지역										
대도시	36.5	23.6	3.5	11.3	8.5	13.5	0.1	3.0	100.0	(68)
중소도시	29.4	29.9	4.3	8.8	5.0	21.1	1.4	0.1	100.0	(72)
읍면	32.2	23.5	3.3	5.6	6.3	24.5	2.4	2.1	100.0	(42)

140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8	21.9	4.1	8.2	7.7	21.3	1.8	2.1	100.0	(109)
외벌이	32.5	32.3	3.3	10.1	4.9	15.6	0.1	1.1	100.0	(73)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34.6	34.8	0.7	6.8	8.0	13.3	0.2	1.6	100.0	(49)
400-600만 원 미만	28.6	23.8	6.2	11.2	4.6	22.5	-	3.1	100.0	(65)
600-800만 원 미만	37.3	23.5	3.4	9.4	6.6	16.9	2.3	0.6	100.0	(43)
800만 원 이상	31.6	19.2	4.4	6.8	8.8	25.2	4.0	-	100.0	(25)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38.7	22.2	2.2	10.1	5.9	18.7	1.1	1.2	100.0	(102)
둘째자녀(2명)	26.6	29.1	6.6	8.5	7.1	18.9	1.4	1.8	100.0	(70)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14.4	44.5	0.5	1.2	10.4	23.0	-	6.0	100.0	(10)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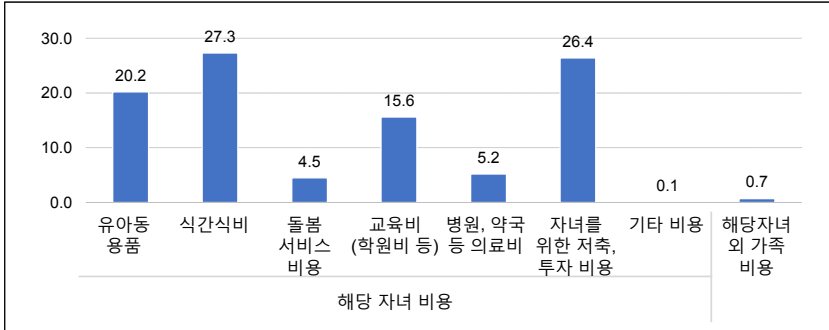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4세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사용처는 식·간식비가 약 2만 7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약 2만 6천 원, 유아동 용품이 약 2만 원, 교육비(학원비 등)가 약 1만 6천 원 정도 순으로 나타나 3세 이하 자녀와 비교 시 유아동 용품비가 감소하고 교육비는 증가하였다.

[그림 4-8] 4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4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첫째자녀인 경우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의 비중이,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교육비나 돌봄 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표 4-11〉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4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4세)	20.2	27.3	4.5	15.6	5.2	26.4	0.1	0.7	100.0	(182)
지역										
대도시	21.6	28.9	3.7	14.7	3.2	26.6	0.3	1.0	100.0	(68)
중소도시	22.1	26.6	3.0	17.9	6.6	23.1	0.1	0.7	100.0	(73)
읍면	14.4	26.1	8.5	13.2	5.9	32.0	-	-	100.0	(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4	26.0	5.6	16.4	4.0	26.6	0.2	0.8	100.0	(105)
외벌이	19.9	29.2	3.0	14.5	6.8	26.1	-	0.5	100.0	(77)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18.2	24.8	3.7	15.5	7.2	29.8	-	0.8	100.0	(49)
400~600만 원 미만	17.9	33.7	4.4	14.5	4.2	24.8	0.4	0.1	100.0	(70)
600~800만 원 미만	25.5	19.1	5.7	14.8	5.5	29.5	-	-	100.0	(44)
800만 원 이상	21.6	29.5	4.2	22.1	2.6	16.3	-	3.7	100.0	(19)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22.8	25.6	2.4	8.4	3.8	36.2	-	0.8	100.0	(85)
둘째자녀(2명)	19.3	25.6	4.9	24.1	4.4	21.0	0.1	0.7	100.0	(76)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12.4	41.0	11.9	14.3	13.3	6.2	1.0	-	100.0	(21)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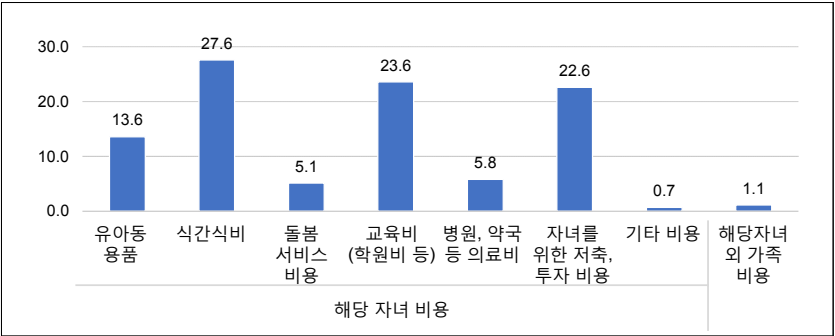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5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식·간식비가 약 2만 8천 원, 교육비(학원비 등)가 약 2만 4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약 2만 3천 원, 유아동 용품이 약 1만 4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4세 자녀에 비해 교육비가 확연히 증가하였고 유아동 용품비는 감소하였다.

[그림 4-9] 5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5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맞벌이 가구는 식·간식비와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의 비중이, 외벌이 가구는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와 첫째자녀인 경우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약간 많았다.

〈표 4-12〉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5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5세)	13.6	27.6	5.1	23.6	5.8	22.6	0.7	1.1	100.0	(182)
지역										
대도시	10.7	31.3	4.3	22.8	5.8	23.6	1.4	0.1	100.0	(76)
중소도시	14.9	23.4	5.9	26.2	8.0	19.5	0.1	2.0	100.0	(74)
읍면	17.5	28.4	5.0	19.4	0.9	27.5	-	1.3	100.0	(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31.1	6.4	19.3	4.6	25.5	0.2	0.6	100.0	(112)
외벌이	15.6	21.9	3.0	30.4	7.9	18.0	1.4	1.9	100.0	(7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21.7	24.2	0.6	24.7	6.9	16.5	2.6	2.9	100.0	(42)
400~600만 원 미만	8.6	33.1	3.0	26.9	6.3	20.8	0.2	1.1	100.0	(63)
600~800만 원 미만	11.5	24.9	10.0	18.8	6.6	28.0	-	0.2	100.0	(50)
800만 원 이상	16.7	24.8	7.8	23.0	1.5	26.3	-	-	100.0	(27)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14.8	24.9	5.8	19.3	7.5	26.2	1.2	0.2	100.0	(93)
둘째자녀(2명)	13.3	27.8	3.7	29.0	4.2	19.7	0.1	2.1	100.0	(78)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5.0	47.7	9.1	21.8	2.7	11.8	-	1.8	100.0	(11)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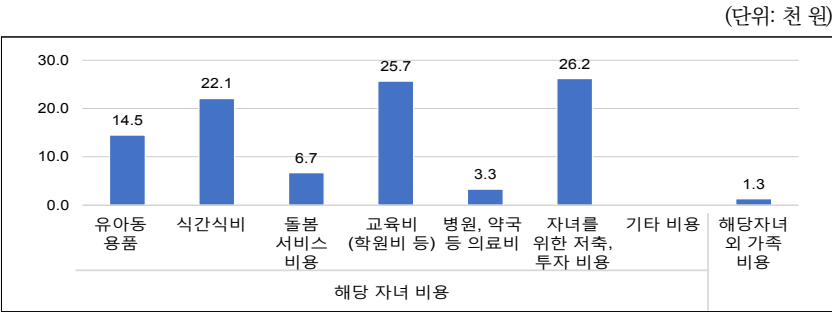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6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이 약 2만 6천 원, 교육비(학원비 등) 약 2만 6천 원, 식·간식비 약 2만 2천 원, 유아동 용품 비용 약 1만 5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6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6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와 첫째자녀인 경우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의 비중이, 외벌이 가구인 경우와 둘째자녀의 경우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3〉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6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6세)	14.5	22.1	6.7	25.7	3.3	26.2	-	1.3	100.0	(182)
지역										
대도시	13.1	23.4	3.6	25.9	3.4	28.2	-	2.4	100.0	(70)
중소도시	15.5	19.5	9.5	23.6	3.7	27.9	-	0.3	100.0	(70)
읍면	15.2	24.5	7.4	29.0	2.4	20.2	-	1.2	100.0	(4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0	18.4	8.3	22.1	1.8	31.5	-	1.8	100.0	(96)
외벌이	12.9	26.3	4.9	29.7	5.0	20.3	-	0.8	100.0	(86)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10.6	29.3	5.5	34.8	4.7	14.1	-	1.0	100.0	(51)
400~600만 원 미만	12.5	30.1	9.3	10.8	4.2	32.1	-	0.8	100.0	(59)
600~800만 원 미만	18.4	7.3	5.4	30.0	1.8	36.8	-	0.5	100.0	(40)
800만 원 이상	19.7	14.7	5.6	33.4	1.3	21.6	-	3.8	100.0	(32)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14.5	18.5	6.5	23.4	2.4	32.3	-	2.6	100.0	(86)
둘째자녀(2명)	12.6	23.4	7.0	30.5	4.0	22.1	-	0.2	100.0	(81)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25.3	36.0	6.7	13.3	4.7	14.0	-	-	100.0	(15)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자녀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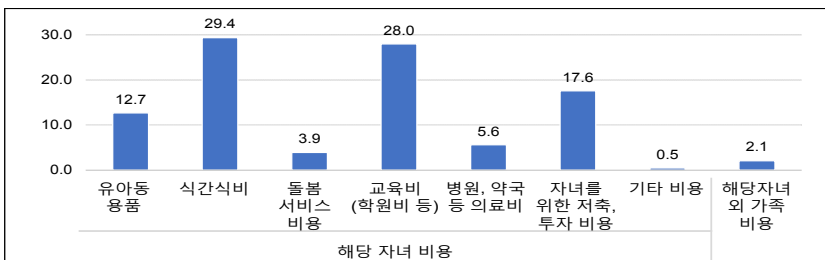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7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식·간식비 약 2만 9천 원, 교육비(학원비 등)가 2만 8천 원,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 비용 약 1만 8천 원, 유아동 용품 비용 약 1만 3천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7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

(단위: 천 원)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7세 자녀의 아동수당 사용처는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식·간식비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표 4-14〉 아동수당 수급 중인 가구의 7세 자녀 아동수당 사용 실태

(단위: 천 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계	(명)
전체(7세)	12.7	29.4	3.9	28.0	5.6	17.6	0.5	2.1	100.0	(182)
지역										
대도시	11.0	35.5	3.4	24.3	4.9	17.9	1.5	1.3	100.0	(67)
중소도시	13.1	25.2	5.8	27.4	7.4	19.6	-	1.4	100.0	(80)
읍면	14.9	27.4	0.6	36.6	2.6	12.6	-	5.4	100.0	(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3	25.4	4.4	29.9	5.3	17.1	1.0	3.5	100.0	(96)
외벌이	12.0	33.9	3.4	26.0	5.9	18.3	-	0.6	100.0	(86)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10.2	33.7	2.3	25.6	6.0	22.1	-	-	100.0	(43)
400~600만 원 미만	15.0	29.6	3.8	26.5	5.1	18.9	-	1.1	100.0	(64)
600~800만 원 미만	11.4	23.1	2.9	30.0	6.0	19.0	2.4	5.2	100.0	(42)
800만 원 이상	13.0	31.5	7.6	31.8	5.5	7.6	-	3.0	100.0	(33)
출생 순위(자녀 수)										
첫째자녀(1명)	13.6	29.2	2.5	30.2	3.7	18.7	-	2.1	100.0	(86)
둘째자녀(2명)	12.6	30.9	4.9	24.9	7.5	16.4	1.3	1.4	100.0	(76)
셋째 이상 자녀 (3명 이상)	9.0	24.5	6.5	31.0	6.5	17.5	-	5.0	100.0	(20)

주: 1) 아동수당 사용처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해당 자녀 비용	① 유아동 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② 식·간식비
	③ 돌봄 서비스(양육 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④ 교육비(학원비 등)	⑤ 병원, 약국 등 의료비
	⑥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⑦ 기타 비용 ()
	⑧ 해당 자녀 외 가족 비용	

-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아동수당은 100천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 각각의 수치와 합계는 천 원이자 %로도 해석이 가능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FGI 결과, 아동수당 및 각종 정부 지원금은 생활비나 특별활동비, 학원비로 사용하거나 자녀를 위한 적금, 주식 등으로 모으고 있었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수입의 일부로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비로 쓰게 돼요. 다 합쳐서. 제 월급이랑 아동수당이랑 다같이 섞이니깐… 거기에서 생활비로.” (영아4, 맞벌이, 한 자녀)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수입으로 잡아서.” (영아7, 맞벌이, 다자녀)

“보통 듣기로는 적금을 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쓰게 되더라고요.” (영아2, 맞벌이, 다자녀)

“계좌번호도 생활비 계좌에 넣어서 받는 거라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에 쓰고, 따로 관리하진 않아요.” (유아6, 맞벌이, 한 자녀)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바로바로 다 썼어요. 아동수당 적금이 이율이 높다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전 그냥 제 통장으로 받아서 다 쓰는 걸로 했어요.” (초등4, 외벌이, 다자녀)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특별활동이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자녀에게 특별히 들어가는 명확한 비용이므로 특히 비용이 아동수당 금액과 유사할 때 이를 아동수당의 사용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12만 원 정도 하는 특별활동비로 내요. 그런데 특별활동비를 안 받는 시기가 있었을 때는 계속 통장에 모아 놔다가 뭘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아7, 외벌이, 다자녀)

“저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특별비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9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활동 나갔다 오면 그 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유아5, 맞벌이, 다자녀)

“아이들 축구비가 10만 원이니까 그 돈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원 하나 보낼 수 있는 돈에 만족하고는 있어요.” (초등1, 외벌이, 한 자녀)

생활비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녀 명의의 적금, 개인연금, 주식 등을 활용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10년짜리 특별 적금이 고금리 적금으로 나왔어요. 언론에서 그걸로 은행마다 고금리 적금에 아동수당 넣는다고 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늦게 신청해서 이미 시기가 다 지났고, 그래서 그냥 개인연금 들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개인연금으로 하고 있어요.” (유아3, 맞벌이, 한 자녀)

“이런 혜택(은행 적금 등)들이 옛날에 비해 너무 줄어들면서, 알아봤더니 ‘그다지 별로네.’ 해서 저는 주식 계좌로 바로 넣었어요. 아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계속 넣어요.” (영아3, 맞벌이, 한 자녀)

“태어날 때부터 단 1만 원도 써본 적은 없고요. 아이 계좌 파서, 주식 장기 투자만 해서 아이 이름으로 주식하고 있어요.” (유아2, 외벌이, 한 자녀)

“저는 첫째 때에는 흐지부지 쓰니까 되게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첫째 때는 다 썼거든요. 그러다 둘째가 생기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이때 돈을 5만 원씩 나눠서 해준 것 같아요. 큰애한테 미안하니까.” (초등5, 맞벌이, 다자녀)

“저는 은행에서 문자가 많이 와서 적금을 들었어요. 아동수당을 연결하면 우대 이율이 있다고 해서 저는 신탁에 적금 넣었어요.” (초등6, 맞벌이, 한 자녀)

4)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출의 변화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된 2018년 9월 이전 출생 자녀의 경우 생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생후 6개월 이후에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아동수당을 받기 전과 비교해 받은 이후 자녀 양육비 지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53.5%였고 양육비 지출에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46.5%로 양육비 지출이 증가한 집단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교육비(학원비)’가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아동 용품비’ 28.7%, ‘식·간식비’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생후 6개월 이후 아동수당을 수급한 경우 아동수당 수급 전후 자녀 양육비 지출 변화

		(단위: %, 명)	
구분		비율	(명)
양육비 지출 변화 없음		46.5	(534)
양육비 지출 증가		53.5	(614)
전체		100.0	(1,148)
(양육비 지출 증가 집단) 가장 지출이 많이 증가한 항목	유아동 용품비	28.7	(176)
	식·간식비	21.0	(129)
	돌봄 서비스비	3.3	(20)
	교육비(학원비)	39.1	(240)
	의료비	2.6	(16)
	저축,보험,투자 등	5.4	(33)
	기타	-	-
	전체	100.0	(614)

주: 1) 2018년 9월 이전 출생 자녀만 분석하였음.

2)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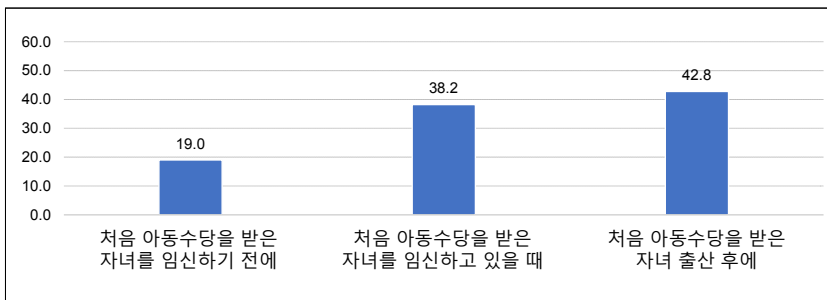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나.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관련 인식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가구의 아동수당 인지 시기는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 출산 후에’가 42.8%로 가장 많았고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고 있을 때’ 38.2%,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가 19.0%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아동수당 수급 가구는 자녀를 임신한 이후 아동수당에 관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인지 시기

(단위: %)



주: 총 2,0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특성별로 아동수당 인지 시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모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후에 아동수당을 인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의 연령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을 수 있어 자녀 출산 후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일 때는 본 조사에서 모 연령이 높게 나타나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후 아동수당을 인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가 첫째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아동수당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첫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 출산 후에 아동수당을 알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인지 시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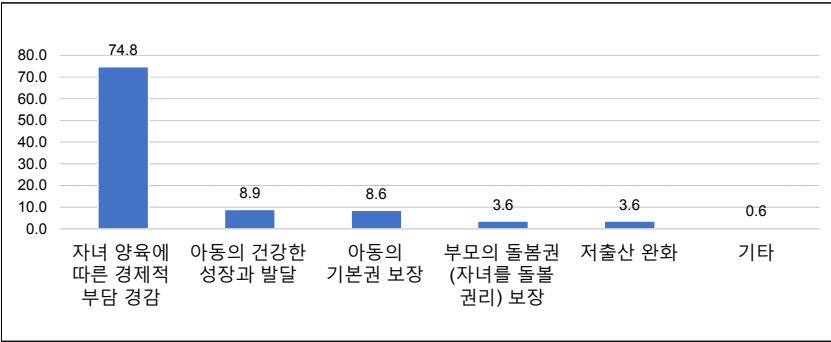
구분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임신 전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임신 중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후	계	(명)
전체	19.0	38.2	42.8	100.0	(2,000)
지역($\chi^2=2.869$)					
대도시	20.0	38.7	41.3	100.0	(775)
중소도시	18.9	38.5	42.6	100.0	(824)
읍면	17.2	36.7	46.1	100.0	(401)
모 연령($\chi^2=74.182^{**}$)					
30세 미만	24.6	36.9	38.5	100.0	(65)
30~34세	24.4	45.9	29.7	100.0	(394)
35~39세	20.7	41.2	38.2	100.0	(702)
40세 이상	14.4	32.2	53.4	100.0	(828)
맞벌이 여부($\chi^2=0.120$)					
맞벌이	19.2	38.3	42.5	100.0	(1,158)
외벌이	18.8	38.0	43.2	100.0	(842)
가구소득($\chi^2=11.211$)					
400만 원 미만	19.2	39.5	41.3	100.0	(511)
400~600만 원 미만	19.7	37.0	43.3	100.0	(743)
600~800만 원 미만	21.7	35.7	42.5	100.0	(456)
800만 원 이상	12.8	42.8	44.5	100.0	(290)
자가 여부($\chi^2=9.085^*$)					
자가	17.4	37.5	45.0	100.0	(1,284)
자가 아님	21.8	39.4	38.8	100.0	(716)
자녀 수($\chi^2=52.357^{***}$)					
1명	19.9	44.7	35.4	100.0	(1,000)
2명	17.1	32.6	50.4	100.0	(832)
3명 이상	23.2	27.4	49.4	100.0	(168)

구분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임신 전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임신 중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후	계	(명)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생 순위($\chi^2=56.970^{***}$)					
첫째자녀	20.0	41.3	38.6	100.0	(1,599)
둘째 이상 자녀	15.0	25.7	59.4	100.0	(401)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온라인 실태 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8.9%, ‘아동의 기본권 보장’ 8.6%, ‘부모의 돌봄권(자녀를 돌볼 권리) 보장’ 3.6%, ‘저출산 완화’ 3.6%, ‘기타’ 0.6%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한 의견에서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13]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의견 (단위: %)



주: 총 2,0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FGI 결과에서도 아동수당에 관해 아동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 비용, 아이들의 첫 혜택, 간식값, 육아 보조, 자녀 양육의 격려금 등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을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시기에 최소한의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비용. 미혼모도 보면 그 돈으로 그래도 사는 것 같아요.” (영아6, 맞벌이, 다자녀)

“가장 평등하게 들어오는 아이들의 첫 혜택. 중위소득이니 어쩌니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제일 평등하게 들어오는 금액이다.” (영아3, 맞벌이, 한 자녀)

“육아에 대해서 살림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기저귀값이나, 분윳값이요.” (초등1, 외벌이, 다자녀)

“저는 이게 육아의 보조로 쓰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초등7, 맞벌이, 한 자녀)

“아동수당은 키우는 데에 있어서 이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들어가는 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초등6, 맞벌이, 한 자녀)

“애들 간식값.” (영아5, 외벌이, 다자녀)

“애들이 친구들과 모였을 때, 친구들이 같이 놀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과 사이 좋게, 맛있게 편익점 가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맛있는 걸 한번 먹고 끝나는 것. 간식비라고 생각해요.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간식비요.” (초등3, 외벌이, 다자녀)

“나라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십니다. 소정의 금액을 드릴게요’ 하고 주는 격려금 같아요.” (영아4, 맞벌이, 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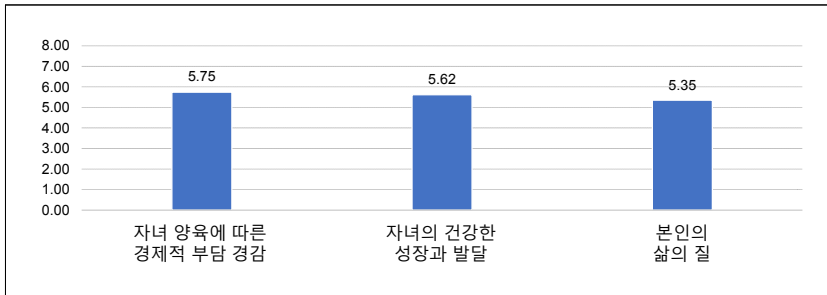
다.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평가

1) 도움 정도 및 전반적 만족도

아동수당 수급 가구 대상 온라인 실태 조사 결과,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가구의 아동수당 도움 정도를 1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서 10점(매우 도움이 되었음)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5.75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는 5.62점, 본인의 삶의 질에는 5.35점으로 대체로 비슷했으며 도움 정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

(단위: 점)



주: 1) 총 2,000명 응답.

2) 1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10점(매우 도움이 되었음)의 평균 점수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는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도움 정도를 낮게 응답하였다. 이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절대적인 지출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7〉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		본인의 삶의 질에 도움		(명)
	범위	평균점수	범위	평균점수	범위	평균점수	
전체	1~10	5.75	1~10	5.62	1~10	5.35	(2,000)
지역	(F=0.172)		(F=0.224)		(F=0.577)		
대도시	1~10	5.70	1~10	5.59	1~10	5.41	(775)
중소도시	1~10	5.76	1~10	5.67	1~10	5.35	(824)
읍면	1~10	5.80	1~10	5.60	1~10	5.23	(401)
모 연령	(F=0.039)		(F=0.083)		(F=0.333)		
30세 미만	1~10	5.80	1~10	5.57	1~10	5.55	(65)
30~34세	1~10	5.72	1~10	5.59	1~10	5.29	(394)
35~39세	1~10	5.77	1~10	5.63	1~10	5.41	(702)
40세 이상	1~10	5.75	1~10	5.66	1~10	5.32	(828)
맞벌이 여부	(t=-0.319)		(t=-0.522)		(t=-0.425)		
맞벌이	1~10	5.74	1~10	5.61	1~10	5.34	(1,158)
외벌이	1~10	5.75	1~10	5.64	1~10	5.36	(842)
가구소득	(F=1.257)		(F=1.486)		(F=1.146)		
400만 원 미만	1~10	5.84	1~10	5.76	1~10	5.50	(511)
400~600만 원 미만	1~10	5.76	1~10	5.59	1~10	5.32	(743)
600~800만 원 미만	1~10	5.78	1~10	5.69	1~10	5.35	(456)
800만 원 이상	1~10	5.48	1~10	5.38	1~10	5.14	(290)
자가 여부	(t=0.718)		(t=0.877)		(t=0.589)		
자가	1~10	5.78	1~10	5.66	1~10	5.37	(1,284)
자가 아님	1~10	5.69	1~10	5.56	1~10	5.30	(716)
자녀 수	(F=3.872 [*])		(F=4.584 [*])		(F=3.573 [*])		
1명	1~10	5.82	1~10	5.70	1~10	5.42	(1,000)
2명	1~10	5.76	1~10	5.65	1~10	5.37	(832)
3명 이상	1~10	5.21	1~10	5.05	1~10	4.82	(168)

주: 1) 1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10점(매우 도움이 되었음)의 평균 점수임.

2)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5.7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약간 높았고, 자녀가 3명인 가구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8〉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점수	표준편차	(명)
전체	1	10	5.70	2.54	(2,000)
지역(F=1.257)					
대도시	1	10	5.61	2.53	(775)
중소도시	1	10	5.81	2.56	(824)
읍면	1	10	5.66	2.55	(401)
모 연령(F=0.436)					
30세 미만	1	10	5.60	2.69	(65)
30~34세	1	10	5.59	2.57	(394)
35~39세	1	10	5.74	2.51	(702)
40세 이상	1	10	5.75	2.55	(828)
맞벌이 여부(t=0.584)					
맞벌이	1	10	5.74	2.54	(1,158)
외벌이	1	10	5.65	2.55	(842)
가구소득(F=0.823)					
400만 원 미만	1	10	5.67	2.56	(511)
400~600만 원 미만	1	10	5.66	2.47	(743)
600~800만 원 미만	1	10	5.86	2.69	(456)
800만 원 이상	1	10	5.61	2.46	(290)
자가 여부(t=1.508)					
자가	1	10	5.77	2.54	(1,284)
자가 아님	1	10	5.59	2.55	(716)
자녀 수(F=3.316 ¹⁾)					
1명	1	10	5.67	2.56	(1,000)
2명	1	10	5.82	2.48	(832)
3명 이상	1	10	5.28	2.74	(168)

주: 1)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음)~10점(매우 만족함)의 평균 점수임.

2) *p<0.05, **p<0.01, ***p<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2)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의 임신 전에 아동수당을 알고 있었던 경우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5%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 45%에 비해 약간 높았다. 특히 외벌이인 경우 맞벌이에 비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맞벌이 여부는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당시가 아니라 조사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19〉 아동수당이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임신 전 아동수당 인지자

(단위: %, 명)

구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55.0	45.0	100.0	(380)
지역($\chi^2=2.471$)				
대도시	54.2	45.8	100.0	(155)
중소도시	59.0	41.0	100.0	(156)
읍면	47.8	52.2	100.0	(69)
모 연령($\chi^2=0.547$)				
30세 미만	50.0	50.0	100.0	(16)
30~34세	57.3	42.7	100.0	(96)
35~39세	53.1	46.9	100.0	(145)
40세 이상	54.6	45.4	100.0	(119)
맞벌이 여부($\chi^2=9.980^{**}$)				
맞벌이	48.2	51.8	100.0	(222)
외벌이	64.6	35.4	100.0	(158)
가구소득($\chi^2=4.155$)				
400만 원 미만	56.1	43.9	100.0	(98)
400~600만 원 미만	60.3	39.7	100.0	(146)
600~800만 원 미만	47.5	52.5	100.0	(99)
800만 원 이상	51.4	48.6	100.0	(37)

구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계	(명)
자가 여부($\chi^2=0.213$)				
자가	54.0	46.0	100.0	(224)
자가 아님	56.4	43.6	100.0	(156)
자녀 수($\chi^2=1.143$)				
1명	53.3	46.7	100.0	(199)
2명	58.5	41.5	100.0	(142)
3명 이상	51.3	48.7	100.0	(39)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생 순위($\chi^2=0.320$)				
첫째자녀	55.6	44.4	100.0	(320)
둘째 이상 자녀	51.7	48.3	100.0	(60)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 $p<0.05$, ** $p<0.01$, *** $p<0.001$

3) 구분 변수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으로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당시가 아남에 유의.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이 첫 아동수당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6.1%,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53.9%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많은 편이었다.

〈표 4-20〉 아동수당이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이후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계	(명)
전체	46.1	53.9	100.0	(764)
지역($\chi^2=0.276$)				
대도시	46.9	53.1	100.0	(245)
중소도시	45.0	55.0	100.0	(329)
읍면	46.8	53.2	100.0	(190)
모 연령($\chi^2=4.048$)				
30세 미만	40.0	60.0	100.0	(15)
30~34세	54.6	45.4	100.0	(108)
35~39세	43.5	56.5	100.0	(255)
40세 이상	46.1	53.9	100.0	(382)

구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계	(명)
맞벌이 여부($\chi^2=0.862$)				
맞벌이	47.6	52.4	100.0	(429)
외벌이	44.2	55.8	100.0	(335)
가구소득($\chi^2=1.848$)				
400만 원 미만	47.9	52.1	100.0	(192)
400~600만 원 미만	46.4	53.6	100.0	(289)
600~800만 원 미만	47.2	52.8	100.0	(176)
800만 원 이상	40.2	59.8	100.0	(107)
자가 여부($\chi^2=0.03$)				
자가	46.1	53.9	100.0	(531)
자가 아님	45.9	54.1	100.0	(233)
자녀 수($\chi^2=0.299$)				
2명	46.5	53.5	100.0	(643)
3명 이상	43.8	56.2	100.0	(121)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생 순위($\chi^2=0.615$)				
첫째자녀	45.0	55.0	100.0	(478)
둘째 이상 자녀	47.9	52.1	100.0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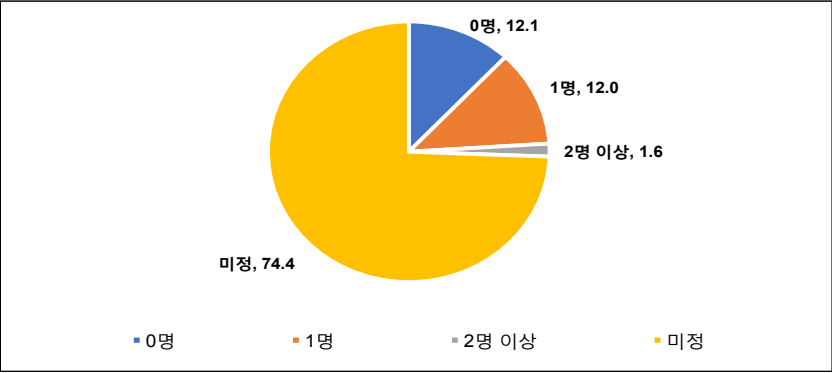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구분 변수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으로,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 출산 당시가 아님에 유의.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추가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미정인 경우가 74.4%로 가장 많았고 0명 12.1%, 1명 12.0%, 2명 이상 1.6%로 나타났다.

[그림 4-15]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추가 자녀 계획

(단위: %)



주: 총 2,0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추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자녀 출산 계획에 아동수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0.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9.4%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2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추가 자녀 출산 계획 시 아동수당의 긍정적 영향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50.6	49.4	100.0	(271)
지역($\chi^2=3.108$)				
대도시	52.1	47.9	100.0	(119)
중소도시	44.9	55.1	100.0	(107)
읍면	60.0	40.0	100.0	(45)
모 연령($\chi^2=0.168$)				
30세 미만	50.0	50.0	100.0	(26)
30~34세	50.9	49.1	100.0	(106)
35~39세	51.0	49.0	100.0	(100)
40세 이상	47.4	52.6	100.0	(38)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맞벌이 여부($\chi^2=1.009$)				
맞벌이	48.3	51.7	100.0	(174)
외벌이	54.6	45.4	100.0	(97)
가구소득($\chi^2=1.653$)				
400만 원 미만	50.0	50.0	100.0	(78)
400~600만 원 미만	50.0	50.0	100.0	(102)
600~800만 원 미만	46.4	53.6	100.0	(56)
800만 원 이상	60.0	40.0	100.0	(35)
자가 여부($\chi^2=1.060$)				
자가	53.6	46.4	100.0	(138)
자가 아님	47.4	52.6	100.0	(133)
자녀 수				
1명	47.1	52.9	100.0	(225)
2명	69.8	30.2	100.0	(43)
3명 이상	33.3	66.7	100.0	(3)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FGI 결과, 아동수당이 추가 자녀 계획이나 아동의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 혹은 부족함을 표현하였으며 ‘생색내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이 증액된다면 추가 자녀 출산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비 경감 측면에서는 의견이 상반되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와 적은 금액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공존하였다. 추가 자녀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으로는 아이 성장에 따른 금액 차등 지원,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준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데, 어떻게 보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내가 10만 원이 지금 더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삶이 엄청 뛰어나게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영아5, 외벌이, 다자녀)

“물론 태어났을 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커가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많아요. 분유를 안 먹인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커면서 먹는 것도 많아지고, 옷 입는 것이나, 조금 더 있으면 유치원을 가거나, 사 교육을 받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그럴 때는 지원이 되는 게 10만 원뿐인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막상 필요할 때는 못 쓰고,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이 진짜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는데도 안 낳을 거야?’라는 생색만 내는 느낌이에요.” (영아5, 외벌이, 다자녀)

“저는 비효율적인 세금 지출인 것 같아요. 물론, 알뜰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동 수당의 취지가 아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유아7, 외벌이, 다자녀)

“출산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원래는 아이를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1명 정도는 생각하더라고요. 이 금액을 받아서인 것보다는 자기네들 의견을 결정할 때 약간의 고려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초등6, 맞벌이, 한 자녀)

“제가 둘째를 생각하고 셋째를 생각했을 때도, 그건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받으니까 받는 거고.” (초등5, 맞벌이, 다자녀)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고정적으로 저축이나 적금의 한 금액에서 내가 더 부담해야 되는 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완했으면 해요.” (초등6, 맞벌이, 한 자녀)

“매달 20일쯤에 ‘아동수당’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 오거든요. 이게 안 찍히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몬 선생님들은 오시면 과목을 더 추가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목이 한 과목당 거의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권유를 하면 ‘그래, 받으니까 한 과목 더 해봐?’라는 생각이 쉽게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추가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과목 줄여봐?’ 하는 거죠.” (초등5, 맞벌이, 다자녀)

“아동수당은 금액이 적어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공공기관 처럼 길게 해준다면 좋은데, 육아휴직 자체도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인 것도 누군가의 희생을 동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둘째를 낳음으로써 저희 엄마는 더 몸이 안 좋아지거나 더 돌봄에 올인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영아3, 맞벌이, 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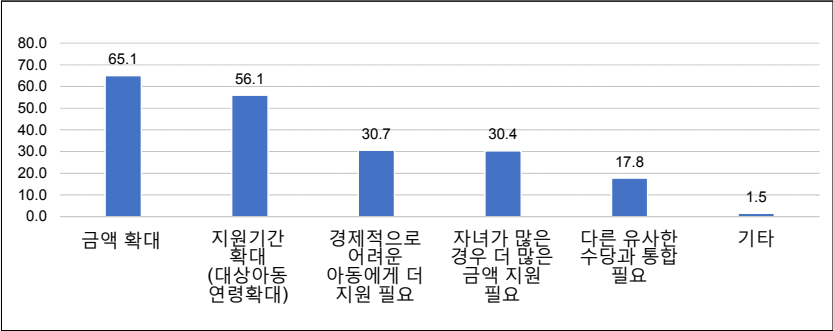
라. 정책 개선 의견

1) 아동수당 개선 방안

아동수당 수급 가구 온라인 실태 조사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중복 응답 가능)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고,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지원 대상의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56.1%로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과 자녀가 많은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0.7%, 30.4%로 나타났다. 다른 유사한 수당인 부모급여나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과 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17.8%였다.

[그림 4-16]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단위: %)



주: 1) 총 2,000명 응답.
2) 중복 응답으로 해당 항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의 개선에 대한 의견 중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나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고, 모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많을 때 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4-2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금액 확대	지원 기간 확대 (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지원 필요	자녀가 많은 경우 더 많은 금액 지원 필요	다른 유사한 수당과 통합 필요	기타	(명)
전체	65.1	56.1	30.7	30.4	17.8	1.5	(2,000)
지역							
대도시	64.5	54.6	31.6	30.8	17.3	1.4	(775)
중소도시	66.9	57.9	30.6	29.5	18.9	1.8	(824)
읍면	62.3	55.1	28.9	31.2	16.2	1.0	(401)

구분	금액 확대	지원 기간 확대 (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지원 필요	자녀가 많은 경우 더 많은 금액 지원 필요	다른 유사한 수당과 통합 필요	기타	(명)
모 연령							
30세 미만	89.2	46.2	21.5	30.8	10.8	0.0	(65)
30~34세	78.2	54.8	26.4	37.3	12.7	1.8	(394)
35~39세	68.8	57.0	26.6	28.8	18.8	1.6	(702)
40세 이상	53.5	56.4	36.7	28.1	19.8	1.4	(8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2	55.4	29.6	29.7	19.0	1.8	(1,158)
외벌이	67.6	56.9	32.1	31.2	16.0	1.1	(842)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72.6	55.6	30.1	27.0	14.3	1.0	(511)
400~600만 원 미만	65.5	58.1	30.1	32.3	17.5	1.5	(743)
600~800만 원 미만	59.6	56.8	30.7	30.0	20.8	1.8	(456)
800만 원 이상	59.0	50.3	32.8	31.7	19.7	2.1	(290)
자가 여부							
자가	60.8	57.0	29.8	29.2	18.5	1.4	(1,284)
자가 아님	72.6	54.3	32.3	32.4	16.5	1.7	(716)
자녀 수							
1명	70.9	55.0	31.4	23.6	17.2	1.1	(1,000)
2명	58.8	57.2	29.8	30.0	19.0	1.9	(832)
3명 이상	61.3	56.5	30.4	72.0	14.9	1.8	(168)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FGI 결과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단순히 금액적인 지원만 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정책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출산을 한 경우에, 모든 출산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300만 원을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 낳으면 내가 애 때문에 쪼들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유아7, 외벌이, 다자녀)

“70만 원씩이나 100만 원씩 출산할 때 몇 년 동안 지급한다면, 저는 생각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10만 원으로는 정말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초등4, 외벌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큰 게 너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그렇고, 주거, 양육 등 큰 게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들이. 특히 맞벌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정부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줘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유아2, 외벌이, 한 자녀)

“이런 아동수당보다 차라리 법정 육아휴직을 더 길게 늘려주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수당을 올려주고. 그게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년은 너무 짧아요.” (초등7, 맞벌이, 한 자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선심성으로 ‘우리 이번에는 이거 할게’라는 식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져요.” (유아3, 맞벌이, 한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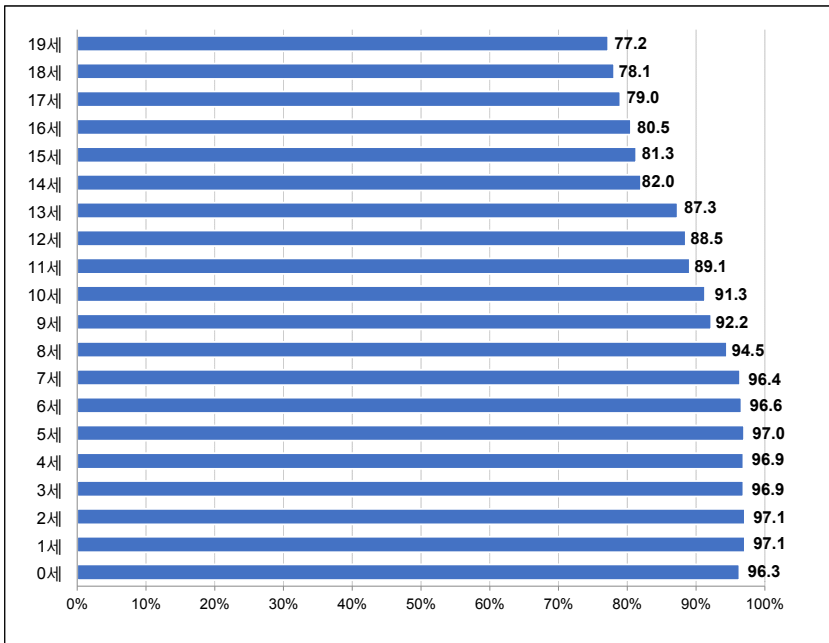
2)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의 필요도 및 적정 지원 금액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월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 미취학 연령대는 96% 이상이, 초등학생 연령대는 87~92% 정도, 중학생 이상 연령대는 77~82% 정도가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공식적인 정부 정책은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만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과 금액을 질문하였으나 응

답자들은 익숙한 연령인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17]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주: 총 2,0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별로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적절한 현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0원으로 포함) 평균을 산출한 결과 대체로 50만 원 전후였다.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적절한 지원 금액은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연령대 자녀의 경우 적절한 지원 금액 평균이 50만 원 미만인 48만 원에서 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연령대 자녀는 평균 55만 원 미만인 52만 원에서 54만 원, 중학교 연령대 자녀는 평균 60만 원 미만인 56만 원에서 58만 원, 고등학교 연령대 자녀는 평균 60만 원 초반이었다.

〈표 4-23〉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도 및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 금액 (0원 포함)	(명)
0세	96.3	49.8	(2,000)
1세	97.1	48.3	(2,000)
2세	97.1	47.3	(2,000)
3세	96.9	46.5	(2,000)
4세	96.9	47.2	(2,000)
5세	97.0	48.3	(2,000)
6세	96.6	48.5	(2,000)
7세	96.4	49.0	(2,000)
8세	94.5	52.2	(2,000)
9세	92.2	51.5	(2,000)
10세	91.3	52.1	(2,000)
11세	89.1	52.1	(2,000)
12세	88.5	52.7	(2,000)
13세	87.3	53.6	(2,000)
14세	82.0	56.7	(2,000)
15세	81.3	56.8	(2,000)
16세	80.5	57.7	(2,000)
17세	79.0	61.1	(2,000)
18세	78.1	61.5	(2,000)
19세	77.2	63.1	(2,0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한정하여 적절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3세 48만 원에서 19세 81.8만 원까지 나타나 연령별 적절 지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4-24〉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30만 원 미만	3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만원 이상	계	평균 금액	(명)
0세	33.8	20.9	22.5	18.5	4.3	100.0	51.8	(1,925)
1세	34.6	22.2	23.1	16.5	3.7	100.0	49.7	(1,941)
2세	33.8	23.8	23.9	15.1	3.3	100.0	48.7	(1,941)
3세	34.2	24.3	23.9	14.6	3.0	100.0	48.0	(1,937)
4세	34.0	23.9	25.1	13.5	3.5	100.0	48.7	(1,938)
5세	33.1	23.6	25.9	13.2	4.2	100.0	49.9	(1,939)
6세	32.5	23.7	26.6	12.7	4.5	100.0	50.2	(1,932)
7세	32.0	22.6	28.0	12.8	4.6	100.0	50.9	(1,927)
8세	30.1	23.2	26.9	13.3	6.4	100.0	55.2	(1,889)
9세	30.1	22.8	26.9	13.6	6.5	100.0	55.8	(1,843)
10세	29.6	22.6	26.9	14.0	6.8	100.0	57.1	(1,825)
11세	29.0	22.3	27.5	14.3	7.0	100.0	58.5	(1,782)
12세	28.9	21.9	27.3	14.5	7.5	100.0	59.6	(1,770)
13세	28.1	21.8	27.1	14.9	8.0	100.0	61.4	(1,746)
14세	24.6	19.5	29.6	15.2	11.0	100.0	69.2	(1,639)
15세	24.8	19.3	29.4	15.0	11.5	100.0	69.9	(1,625)
16세	24.0	19.3	29.1	15.6	12.0	100.0	71.7	(1,609)
17세	23.2	17.2	28.7	17.5	13.5	100.0	77.3	(1,580)
18세	23.1	16.9	28.4	17.7	13.9	100.0	78.8	(1,562)
19세	23.0	16.3	27.7	18.6	14.4	100.0	81.8	(1,543)

주: 해당 연령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포함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FGI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20~30만 원 정도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30~50만 원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20~30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어린이집 가서도 그 정도의 비용은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특활 같은 걸 하면 거의 20만 원 정도는 들더라고요.” (영아6, 맞벌이, 다자녀)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20~30만 원은 받아야 해요.” (영아1, 외벌이, 한 자녀)

“금액 부분은 꼭 변경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금액을 증량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최소 30만 원 이상은 줘야 할 것 같아요.” (유아4, 맞벌이, 다자녀)

“초등학교 때부터 부담이 더 가는데 그때쯤에 끊기니까 오히려 도움이 덜 될 것 같아서. 10만 원으로 고등학생 때까지 주면 좋겠어요.” (유아6, 맞벌이, 한 자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세금도 있기 때문에 20만 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요.” (초등4, 외벌이, 다자녀)

“학교 방과 후 활동이나 사교육에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20만 원을 생각했는데, 학원 하나를 보내면 15만 원이고, 거기에 특별 체험 활동이나 옷을 맞추거나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 포함해서, 사교육 1개 보내는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등1, 외벌이, 한 자녀)

“10만 원 정도는 미미하기 때문에 30에서, 현실적으로 저는 50만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6, 맞벌이, 한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은 1시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중략)... 그 시간을 커버해 줘야 되는 건 다 사교육이 맡고 있는 거고, 아니면 방과 후나 돌봄이지만. 그런 걸 감안하면 저도 현실적으로는 30~4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초등2, 외벌이, 한 자녀)

“아동수당이 여덟 살이면 끊기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거고. 현실적으로는 기간도 더, 금액도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이상한 출산 장려 정책을 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초등2, 외벌이, 한 자녀)

“어릴 때는 보육료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별 무리 없이 다 어느 가정이나 지내올 수 있는데, 이때부터가 문제니까 아동수당은 1학년 때부터. 저도 양심상 6학년 때까지만 그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5, 맞벌이, 다자녀)

아동수당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수급자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인지를 생각하여, 그에 맞춘 금액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라에서 줄 때,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어떤 부분의 부담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 건지 궁금해요. 이 10만 원으로 어떤 걸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급하는 건지…”
(초등2, 외벌이, 한 자녀)

한편 정부 정책이 특정 기준 시점에 따라 수혜 여부나 수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으며, 새로 태어나는 자녀뿐 아니라 기존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토로하였다.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 대체로 본인이 받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최근 부모급여 증액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일찍 낳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해마다 바뀌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일괄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해에 해당 되는 사람부터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2월 31일에 태어났는데, 200만 원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게 1년 금액으로 하면 사실 황당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억울한 느낌이어서.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13개월이면 전에 태어난 애들도 다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22년 1월생부터’, ‘23년 1월생부터’ 하니까. 나는 6개월 일찍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 계획을 미룰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만 계속 해당이 되니까,

기존 사람들은…: …(중략)… 짜증나죠. 먼저 낳은 사람이 손해다. 요즘엔 최대한 늦게…
내년에 더 많이 주고, 후년에 더 많이 줄 거라고 해요.” (영아5, 외벌이, 다자녀)

“제가 분만실에서 일하는데, 양수가 터져도 1월생을 만들려고, 12월 말에는 오지를
않았어요. 첫만남바우처가 200만 원을 주는 건데, 2022년 1월 전에 태어나면 없고
부모급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영아6,
맞벌이, 다자녀)

“부모급여인데,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70만 원을 주고, 1년 지나면 30만 원. 그리고
그 후로는 끝나요.” (영아1, 외벌이, 한 자녀)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줬어요. 작년에는 안 주고. 저는 아기가 22년 2월생인데 돌이
2월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만 70만 원을 받고, 바로 2월부터는 35만 원만 받고
끝났어요. 그전에는 못 받고. 같이 임신했던 친구는 그런 게 아예 없었던 친구도
있었고. 저는 완전 초기라서 그래도 한 달은 70 받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유예 기간을 너무 오래 두니까. 임신한 상태에서도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조금
있다가 임신하면 받고.” (영아2, 맞벌이, 다자녀)

아동수당 수급 가구 대상 온라인 조사에서 출산 및 자녀 양육이나 현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안, 제안할 정책에 대하여 질문한 결
과, 현금 지원 관련해서는 비교적 어린 시기의 한시적 지원보다는 꾸준한
지원에 대한 욕구와 금액 증액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지금 태어나는 자
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존 자녀에 대한 혜택, 초·중·고학생 자녀
까지 생각한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며 이것이 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의
욕구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 지원보다는 어린이집 확대나 돌봄지원이 필
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의료비 추가 할인이나 주거 혜택, 대출 이자 경
감, 세액공제 확대, 고속도로나 국립공원 등 SOC 관련 비용 무료화 등 간

접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많이 드는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FGI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수당 지원 정책의 개선점으로 금액 증액이나 지원 기간 확대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현금이 아닌 기저귀나 식재료 등 현물로 제공해야 한다’, ‘아동수당이나 각종 현금 지원 정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각종 지원금을 통합해야 한다’, ‘현금보다는 자녀 돌봄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부모급여도 올라가고, 고운맘카드도 올라가면서 이거는 몇 년째 계속 그 자리로 10만 원이에요.” (영아6, 맞벌이, 다자녀)

“아동수당은 적조. 식비가 사실 애한테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진짜 마트에 가면, 조금만 뭐만 사면 10만 원 다 올라가는데, 아동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 들어오니까.” (영아4, 맞벌이, 한 자녀)

“금액이 너무 일괄적이에요. 여덟 살까지 애가 먹는 양이 계속 같지도 않고. 그것에 따른 식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아4, 맞벌이, 한 자녀)

“정부 지원금을 다 합쳐서 길게 주면 좋겠어요. 부모한테 그 현금을 일정하게 계속 주는 동안 몇 조가 든다는데, 실제로 1억을 줘도 남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 주면 사실 저희는 좋거든요.” (영아7, 맞벌이, 다자녀)

“실질적인 실무를 도움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돈도 돈이지만, 돈을 만약에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으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10만 원 주던 걸 주면서 기저귀를 이만큼 준다든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걸 심도 깊게 분석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해요.” (영아3, 맞벌이, 한 자녀)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맞벌이라면 후에 아이를 봐주는 게 더 중요한데, 도우미도 쓰면 1시간에 11,000원이면 한 달이 되었을 때 10만 원보다 훨씬 넘잖아요. 차라리 돈보다는 아이를 맡아주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유아1, 맞벌이, 다자녀)

“차라리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래. 나 그러면 애를 하나 더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를 키우면서 애가 예뻐서 더 낳고 싶단 생각이 들어도 솔직히 환경이 안 되니까 애를 더 못 낳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환경이 된다면 굳이 돈을 나라에서 안 줘도 낳을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30~4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애 하나 더 낳을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응답자3, 외벌이, 다자녀)

“저는 취지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부모급여의 취지는 무엇이고, 아동수당의 취지는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줄 때, ‘이건 이렇게 하라고 드립니다’라는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같이 가는 부분이 ‘왜 이렇구나’라고 납득이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아3, 맞벌이, 한 자녀)

“부모들도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맞춰서 쓴다는 것에 대해 훈련이 안 되어 있고, 홍보가 충분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아동수당을 다달이 준대’라는 정도인 거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유아3, 맞벌이, 한 자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기 어려우면 다른 곳에 맡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유아1, 맞벌이, 다자녀)

“해당 가구의 월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 보유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어서 진짜 10만 원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초등7, 맞벌이, 한 자녀)

또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온라인 조사 결과, 일 가정 양립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의무화나 전반적인 근무 시간 단축, 육아휴직 종료 후 재직 중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등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난임 지원에 대한 욕구도 많았는데, 소득 기준이나 횟수, 연령 완화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자녀 수별 차등 지원 등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의료 인프라인 소아과의 접근성 강화나 시간 연장, 소아 응급실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제2절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의 인식

1.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 대상 조사의 개요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욕구 등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 리스트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 조사(온라인 패널 조사)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2023-0037호)을 받고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의 기본 사항과 자녀 계획 관련 사항, 그리고 정책 욕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 사항으로는 결혼 시기, 거주 지역, 응답자 및 배우자의 연령과 경제활동 상태,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을 질문하였고 자녀 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 자녀 수 및 첫 자녀 출산 계획 시기를 질문하였다.

정책 관련 문항으로는 자녀 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교육비, 가정양육수당의 인지 정도를 질문하였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동수당이 출산 결정이나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등 몇 가지 영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월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질문하였고 이것이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 정부에서 자녀 양육 관련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월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 관련하여 제안할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 사례가 300명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표 4-25〉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본 사항	- (응답자 선정 문항) 결혼 시기, 자녀 유무 - 거주 시도 및 읍면동 - 본인 및 배우자 연령, 경제활동 상태 - 주택 점유 형태, 가구소득
자녀 계획 관련 사항 및 정책 욕구	- 자녀 계획 및 첫째자녀 출산 계획 -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교육비, 가정양육수당 인지 정도 - 아동수당 목적 및 영향력 평가 - 월평균 예상 양육비 - 정부의 자녀에 대한 적정 지원 연령 및 적정 지원 금액 -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 관련 제안 사항

2.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4-26〉과 같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절반씩 조사되었고 아

내의 평균 연령은 32.1세, 남편의 평균 연령은 34세였다. 혼인 기간은 1년차가 23.3%, 2년차 32%, 3년차 21%, 4년차 13.7%, 5년차 10%였으며 평균 24.8개월로 나타났다. 거주 권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30.0%,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이 32.3% 등으로 나타났고 동 지역은 85.3%, 읍면 지역은 14.7%였다.

〈표 4-26〉 신혼 무자녀 가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비율	(명)	구 분	비율	(명)
전체	100.0	(300)	전체	100.0	(300)
성별			거주지(동/읍면)		
남성	50.0	(150)	동 지역	85.3	(256)
여성	50.0	(150)	읍면 지역	14.7	(44)
아내 연령(평균: 32.1세)			아내 고용 상태		
30세 미만	20.0	(60)	정규직 임금근로	66.0	(198)
30~34세	58.0	(174)	비정규직 임금근로	9.0	(27)
35~39세	21.0	(63)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6.7	(20)
40세 이상	1.0	(3)	비경제활동	18.3	(55)
남편 연령(평균: 34.0세)			남편 고용 상태		
30세 미만	9.3	(28)	정규직 임금근로	82.3	(247)
30~34세	46.7	(140)	비정규직 임금근로	6.7	(20)
35~39세	40.0	(120)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8.7	(26)
40세 이상	4.0	(12)	비경제활동	2.3	(7)
혼인 기간(평균: 24.8개월)			맞벌이 여부		
12개월 이하	23.3	(70)	맞벌이	79.3	(238)
13~24개월	32.0	(96)	외벌이	20.7	(62)
25~36개월	21.0	(63)	거주 주택 점유 형태		
37~48개월	13.7	(41)	자가	36.3	(109)
49~60개월	10.0	(30)	전세	38.7	(116)

구 분	비율	(명)	구 분	비율	(명)
거주지			월세	15.0	(45)
서울	12.7	(38)	기타	10.0	(30)
인천/경기	17.3	(52)	월평균 가구소득		
충청권(대전,세종,충청)	16.3	(49)	400만 원 미만	24.0	(72)
호남권(광주,전라)	14.3	(43)	400~600만 원 미만	41.0	(123)
영남권(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32.3	(97)	600~800만 원 미만	22.7	(68)
강원/제주	7.0	(21)	800만 원 이상	12.3	(37)

주: 1) 연령과 고용 상태는 응답자 기준이 아닌 아내와 남편 기준임.

2) 부부가 모두 비경제활동인 경우는 2케이스였으며, 본 표에서는 외별이에 포함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문항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고용 상태,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을 질문하였다. 아내의 고용 상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66%,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9.0%로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75%로 나타났고 비경제활동이 18.3%,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6.7%였다. 남편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82.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6.7%로 전체의 89%가 임금근로자였고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가 8.7%, 비경제활동이 2.3%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는 79.3%였다.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는 전세 38.7%, 자가 36.3%, 월세 15%, 기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미만이 41.0%였고 400만 원 미만이 24.0%,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미만이 22.7%, 800만 원 이상이 12.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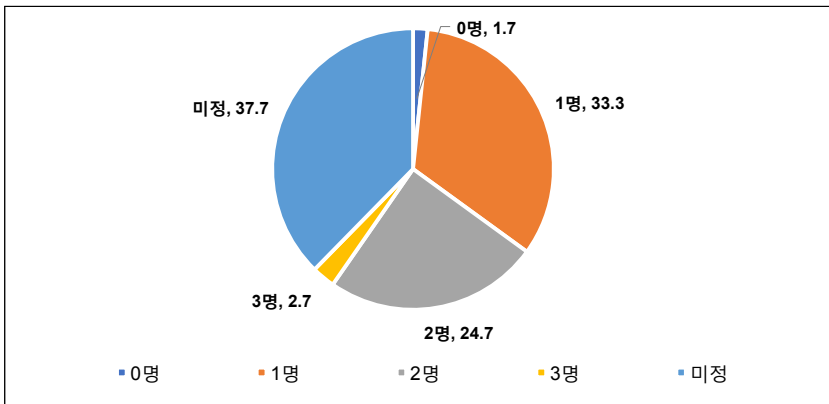
3. 조사 결과

가. 자녀 계획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은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로 나타났고,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경우가 1.7%,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가 37.7%로 나타났다.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계획 자녀 수는 1.45명이었다.

[그림 4-18]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

(단위: %)



주: 총 3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신혼 무자녀 가구의 계획 자녀 수는 아내 연령이 젊을수록 대체로 많게 나타났고, 아내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계획이 미정인 경우가 51.5%로 절반 이상이였다. 아내 연령이 많은 경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녀 계획과 부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은 아내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

우,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

〈표 4-27〉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이상	미정	계	평균	(명)
전체	1.7	33.3	27.3	37.7	100.0	1.45	(300)
혼인 기간							
2년 이내	1.2	35.5	31.3	31.9	100.0	1.48	(166)
2년 초과	2.2	30.6	22.4	44.8	100.0	1.42	(134)
지역							
대도시	1.4	34.3	25.0	39.3	100.0	1.42	(140)
중소도시	1.7	31.9	31.9	34.5	100.0	1.51	(116)
읍면	2.3	34.1	22.7	40.9	100.0	1.38	(44)
아내 연령							
30세 미만	3.3	30.0	48.3	18.3	100.0	1.61	(60)
30~34세	1.1	34.5	25.3	39.1	100.0	1.44	(174)
35세 이상	1.5	33.3	13.6	51.5	100.0	1.25	(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8	34.0	26.9	38.2	100.0	1.46	(238)
외벌이	4.8	30.6	29.0	35.5	100.0	1.45	(62)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4.2	25.0	31.9	38.9	100.0	1.52	(72)
400~600만 원 미만	0.8	37.4	23.6	38.2	100.0	1.41	(123)
600~800만 원 미만	1.5	30.9	26.5	41.2	100.0	1.45	(68)
800만 원 이상	0.0	40.5	32.4	27.0	100.0	1.48	(37)
자가 여부							
자가	1.8	37.6	24.8	35.8	100.0	1.40	(109)
자가 아님	1.6	30.9	28.8	38.7	100.0	1.49	(191)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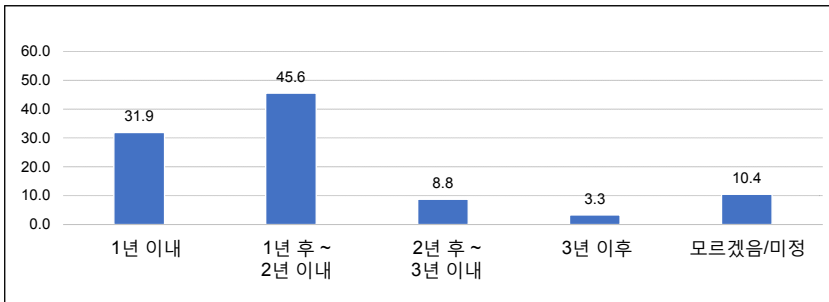
2) 평균은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할 계획이 있을 때 첫 자녀 출산 시기는 1년 후부터 2년 이내로 계획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인 경우가 31.9%로 나타났다. 2년 이후에 첫 자녀를 출산할 계획은 11.1%였으며, 모르겠거나 미정인 경우가 10.4%였다.

[그림 4-19]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출산 계획 시기

(단위: %)



주: 총 182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나. 자녀 대상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자녀에 대한 주요 현금 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보육교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하였다. 먼저 아동수당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이 28.0%, 잘 알고 있다 19.7%, 전혀 모른다 11.7%의 순으로 나타나, 알고 있는 경우가 60% 정도, 모르는 경우가 40%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 때 가장 높았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4-28〉 신혼 무자녀 가구의 일반적 특성별 아동수당 정책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계	(명)
전체	39.7	11.7	28.0	60.3	40.7	19.7	100.0	(300)
혼인 기간								
2년 이내	39.8	14.5	25.3	60.2	39.2	21.1	100.0	(166)
2년 초과	39.6	8.2	31.3	60.4	42.5	17.9	100.0	(134)
지역								
대도시	32.9	10.7	22.1	67.1	44.3	22.9	100.0	(140)
중소도시	41.4	11.2	30.2	58.6	37.9	20.7	100.0	(116)
읍면	56.8	15.9	40.9	43.2	36.4	6.8	100.0	(44)
아내 연령								
30세 미만	36.7	10.0	26.7	63.3	38.3	25.0	100.0	(60)
30~34세	43.1	12.1	31.0	56.9	39.7	17.2	100.0	(174)
35세 이상	33.3	12.1	21.2	66.7	45.5	21.2	100.0	(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1	11.3	27.7	60.9	40.3	20.6	100.0	(238)
외벌이	41.9	12.9	29.0	58.1	41.9	16.1	100.0	(62)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36.1	12.5	23.6	63.9	45.8	18.1	100.0	(72)
400~600만 원 미만	39.0	11.4	27.6	61.0	40.7	20.3	100.0	(123)
600~800만 원 미만	45.6	11.8	33.8	54.4	35.3	19.1	100.0	(68)
800만 원 이상	37.8	10.8	27.0	62.2	40.5	21.6	100.0	(37)
자가 여부								
자가	40.4	11.9	28.4	59.6	39.4	20.2	100.0	(109)
자가 아님	39.3	11.5	27.7	60.7	41.4	19.4	100.0	(191)

주: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자녀 계획 특성별로 조금 차이를 보였다. 계획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동수당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9%인 반면

자녀 계획이 미정인 경우 아동수당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자녀를 1명 이상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 출산을 계획한 시기가 빠를수록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계획인 경우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다.

〈표 4-29〉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계획 특성별 아동수당 정책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계	(명)
전체	39.7	11.7	28.0	60.3	40.7	19.7	100.0	(300)
계획 자녀 수								
1명 이하	40.0	12.4	27.6	60.0	40.0	20.0	100.0	(105)
2명 이상	34.1	6.1	28.0	65.9	46.3	19.5	100.0	(82)
미정	43.4	15.0	28.3	56.6	37.2	19.5	100.0	(113)
출산 계획 시기								
1년 이내	27.6	5.2	22.4	72.4	56.9	15.5	100.0	(58)
1년 후~2년 이내	42.2	13.3	28.9	57.8	38.6	19.3	100.0	(83)
2년 이후	45.5	4.5	40.9	54.5	40.9	13.6	100.0	(22)
모르겠음/미정	42.1	10.5	31.6	57.9	31.6	26.3	100.0	(19)

주: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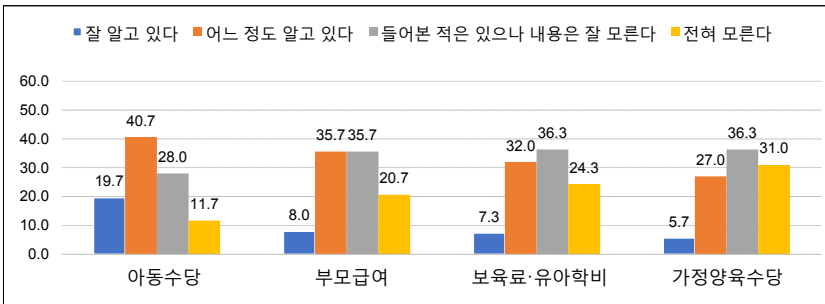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정부의 자녀에 대한 주요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신혼 무자녀 가구의 인지 정도는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알고 있다는 응답 60.3%), 그다음은 부모급여(알고 있다는 응답 43.7%),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알고 있다는 응답 37.3%), 가정양육수당(알고 있다는 응답 3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이 정책 대상이 가장 넓고 지원 조건도 연령이라는 조건 하나이며 지원 방식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부모급여는 국정 과제이자 올해 도입되어 뉴스 등에 많이 언급 되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0]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지원 정책 인지 정도

(단위: %)



주: 총 30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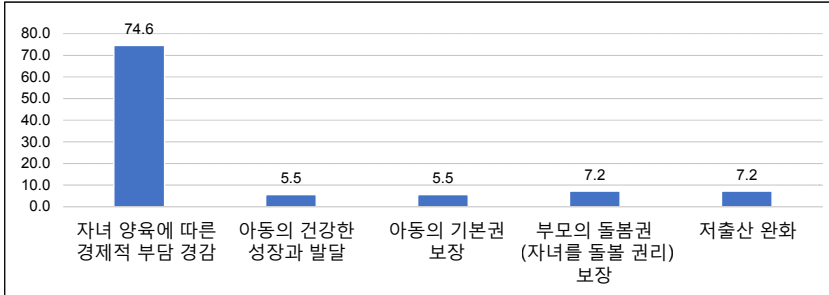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다.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

아동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선택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수당의 목적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모의 돌봄권 보장과 저출산 완화가 각각 7.2%,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각각 5.5%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 수급 가구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정책의 대상자 및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1]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총 181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 결정이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등 몇 가지 항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4.1%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6.4%로 많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39.8%였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출산 계획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8.7%로 가장 적었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6%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0〉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의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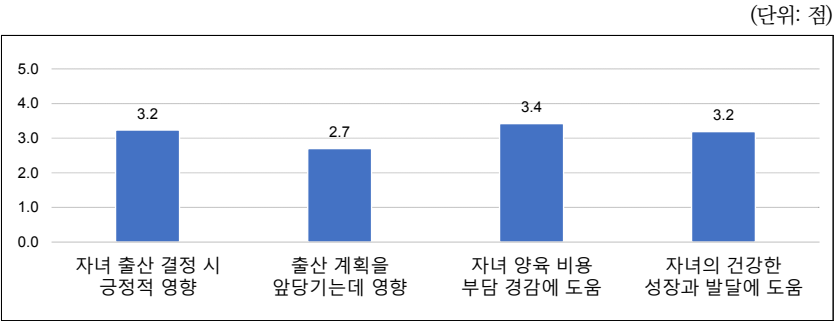
구분	영향 정도			보통 이다	영향 정도			계	평균	(명)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	27.6	8.3	19.3	26.0	46.4	33.7	12.7	100.0	3.23	(181)
자녀 출산 계획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 영향	48.6	19.3	29.3	22.7	28.7	19.9	8.8	100.0	2.70	(181)

구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명)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	22.7	7.7	14.9	23.2	54.1	35.9	18.2	100.0	3.42	(181)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	24.3	8.8	15.5	35.9	39.8	27.6	12.2	100.0	3.19	(181)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계산.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즉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이나 자녀 출산 결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
에는 아동수당이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으나 출산 시
기를 앞당기는 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4-22]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의 영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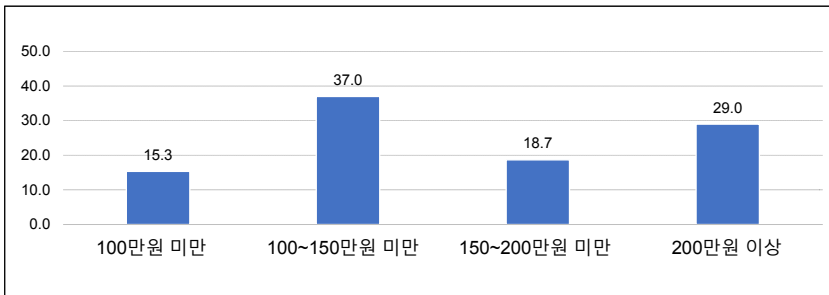
주: 1) 총 181명 응답.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계산.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라. 예상 양육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월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100만 원~150만 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만 원 이상 29.0%, 150만 원~200만 원 미만 18.7%로 나타났으며 100만 원 미만은 15.3%로 가장 적었다.

[그림 4-23]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예상 양육비

(단위: %)



주: 총 3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 비용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예상 양육비를 130.8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 예상 양육 비용을 158.1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도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월평균 예상 양육비가 높았다.

계획 자녀 수별로는 자녀 계획이 1명 이하인 경우 월평균 예상 양육 비용을 137.6만 원으로 응답하였으나 2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128.7만 원이라고 답하였다. 자녀 계획이 미정인 경우에는 예상 양육비를 152.3만 원으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였다.

〈표 4-31〉 신혼 무자녀 가구의 특성별 자녀 1인당 예상 양육비

(단위: %, 명, 만 원)

구분	100 만 원 미만	100~150 만 원 미만	150~200 만 원 미만	200 만 원 이상	계	(명)	평균
전체	15.3	37.0	18.7	29.0	100.0	(300)	140.7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22.2	38.9	16.7	22.2	100.0	(72)	130.8
400~600만 원 미만	14.6	42.3	18.7	24.4	100.0	(123)	134.3
600~800만 원 미만	16.2	25.0	19.1	39.7	100.0	(68)	153.2
800만 원 이상	2.7	37.8	21.6	37.8	100.0	(37)	158.1
자가 여부							
자가	11.9	36.7	22.9	28.4	100.0	(109)	146.6
자가 아님	17.3	37.2	16.2	29.3	100.0	(191)	137.3
계획 자녀 수							
1명 이하	20.0	33.3	20.0	26.7	100.0	(105)	137.6
2명 이상	17.1	45.1	13.4	24.4	100.0	(82)	128.7
미정	9.7	34.5	21.2	34.5	100.0	(113)	1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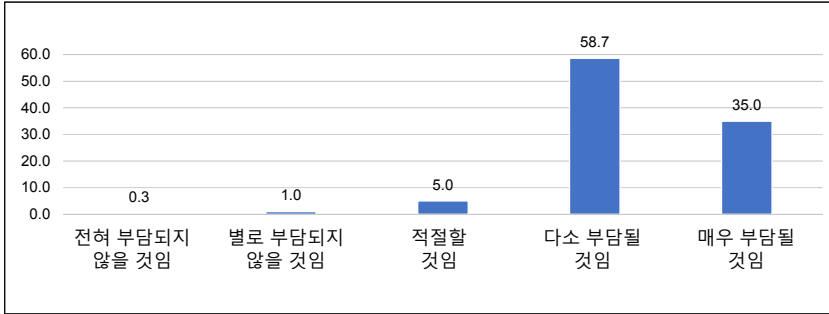
주: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58.7%, 매우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35.0%로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적절할 것이라는 응답은 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0.3%에 불과하였다.

[그림 4-24]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총 3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예상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정도를 약간 낮게 인식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비도 높았으나 예상 양육비 차이가 가구소득 차이보다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획 자녀 수의 경우 1명 이하이면 다른 집단에 비해 부담 정도를 약간 낮게 인식하였다.

〈표 4-32〉 신혼 무자녀 가구의 특성별 예상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부담 되지 않을 것임	전혀 부담 되지 않을 것임	별로 부담 되지 않을 것임	적절할 것임	부담될 것임	다소 부담될 것임	매우 부담될 것임	계	평균	(명)
전체	1.3	0.3	1.0	5.0	93.7	58.7	35.0	100.0	4.27	(300)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0.0	0.0	0.0	1.4	98.6	55.6	43.1	100.0	4.42	(72)
400~600만 원 미만	0.8	0.0	0.8	5.7	93.5	58.5	35.0	100.0	4.28	(123)
600~800만 원 미만	0.0	0.0	0.0	7.4	92.6	57.4	35.3	100.0	4.28	(68)
800만 원 이상	8.1	2.7	5.4	5.4	86.5	67.6	18.9	100.0	3.95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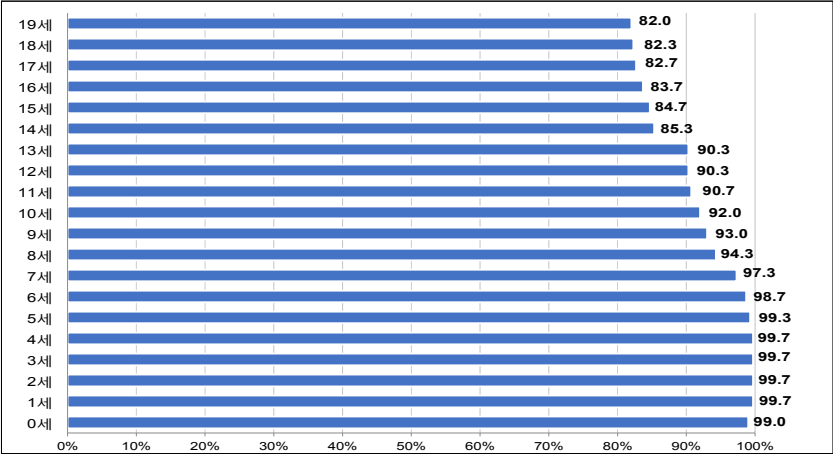
구분	부담 되지 않을 것임	전혀 부담 되지 않을 것임	별로 부담 되지 않을 것임	적절할 것임	부담될 것임	다소 부담될 것임	매우 부담될 것임	계	평균	(명)
계획 자녀 수										
1명 이하	1.0	1.0	0.0	6.7	92.4	64.8	27.6	100.0	4.18	(105)
2명 이상	1.2	0.0	1.2	3.7	95.1	65.9	29.3	100.0	4.23	(82)
미정	1.8	0.0	1.8	4.4	93.8	47.8	46.0	100.0	4.38	(113)

주: 1) 반올림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임 1점,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임 2점, 적절할 것임 3점, 다소 부담될 것임 4점, 매우 부담될 것임 5점으로 계산.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연령별로 1인당 월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19세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0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모든 연령에 대해 80% 이상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5]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주: 총 3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대체로 미취학 연령은 98% 이상이, 초등학생은 90~95% 정도가, 중학생 이상은 82~85% 정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수당 경험 가구 조사와 동일하게 공식적인 정부 정책은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만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과 금액을 질문하였으나 응답자들은 익숙한 연령인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4-33〉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도 및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 금액 (0원 포함)	(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	평균 금액	(명)
0세	99.0	90.4	(300)	10	500	91.3	(297)
1세	99.7	89.8	(300)	10	500	90.1	(299)
2세	99.7	89.9	(300)	10	500	90.2	(299)
3세	99.7	92.2	(300)	10	400	92.5	(299)
4세	99.7	93.8	(300)	10	500	94.1	(299)
5세	99.3	95.0	(300)	10	500	95.6	(298)
6세	98.7	95.7	(300)	10	500	97.0	(296)
7세	97.3	96.2	(300)	10	500	98.9	(292)
8세	94.3	101.7	(300)	10	500	107.8	(283)
9세	93.0	100.7	(300)	10	500	108.3	(279)
10세	92.0	100.4	(300)	10	600	109.1	(276)
11세	90.7	99.7	(300)	10	600	110.0	(272)
12세	90.3	99.2	(300)	10	600	109.8	(271)
13세	90.3	99.1	(300)	10	600	109.7	(271)
14세	85.3	105.4	(300)	10	600	123.5	(256)
15세	84.7	106.6	(300)	10	600	125.8	(254)
16세	83.7	108.3	(300)	10	600	129.5	(251)
17세	82.7	115.6	(300)	10	700	139.8	(248)
18세	82.3	115.7	(300)	10	700	140.5	(247)
19세	82.0	116.8	(300)	10	700	142.4	(24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별 평균 적절 지원 금액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0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대체로 100만 원 전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미취학 연령,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연령순으로 적절 지원 금액이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월평균 적절한 지원 금액을 보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절 지원 금액도 커졌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대략 90~100만 원 미만을 적절한 지원 금액이라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자녀는 107~110만 원 정도를, 중학생 자녀는 120~130만 원 정도를, 고등학생 자녀는 140만 원 정도를 적절한 지원 금액으로 응답하였다.

〈표 4-34〉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단위: %, 명, 만 원)

구분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만원이상	계	평균 금액	(명)
0세	16.8	27.9	38.7	6.4	10.1	100.0	91.3	(297)
1세	16.4	30.8	36.5	6.0	10.4	100.0	90.1	(299)
2세	16.7	32.1	34.4	6.7	10.0	100.0	90.2	(299)
3세	15.7	34.4	31.8	7.4	10.7	100.0	92.5	(299)
4세	15.7	35.8	29.8	8.4	10.4	100.0	94.1	(299)
5세	14.8	35.6	29.9	7.7	12.1	100.0	95.6	(298)
6세	14.5	35.5	29.4	8.8	11.8	100.0	97.0	(296)
7세	14.7	35.6	27.4	9.6	12.7	100.0	98.9	(292)
8세	12.0	30.7	30.0	12.7	14.5	100.0	107.8	(283)
9세	12.9	30.5	29.0	12.5	15.1	100.0	108.3	(279)
10세	13.0	29.3	29.3	12.0	16.3	100.0	109.1	(276)
11세	13.6	29.0	29.0	12.5	15.8	100.0	110.0	(272)
12세	13.7	28.4	29.5	12.9	15.5	100.0	109.8	(271)
13세	14.4	27.3	29.9	12.9	15.5	100.0	109.7	(271)
14세	14.8	22.3	27.3	15.6	19.9	100.0	123.5	(256)
15세	14.6	22.4	26.0	15.4	21.7	100.0	125.8	(254)
16세	13.9	22.7	25.5	15.9	21.9	100.0	129.5	(251)

구분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평균 금액	(명)
17세	13.3	21.8	24.2	11.7	29.0	100.0	139.8	(248)
18세	13.4	21.9	23.5	12.1	29.1	100.0	140.5	(247)
19세	13.4	22.0	23.2	11.8	29.7	100.0	142.4	(246)

주: 해당 연령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포함하였음.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각종 지원금, 수당 관련 금액 인상이나 연령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의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 난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절 전문가 의견

1. 전문가 조사 개요

전문가 조사는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여 이메일(E-mail)을 통한 서면 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전문가 조사 대상자는 아동수당에 관해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16명이다. 전문가 대상 조사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주일간 진행하였다. 조사 문항은 아동수당의 목적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 아동 대상의 현금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조사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4-35〉 참조).

〈표 4-35〉 전문가 조사 문항

항목	내용
아동수당의 목적	• 아동수당의 목적으로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저출산 완화의 적절성 • 적절한 아동수당의 목적
아동수당의 효과성	• 아동수당의 목적(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저출산 완화) 달성에 있어서의 효과성 • 아동수당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저출산 완화 달성 외의 효과성
개선 방향	• 아동수당의 개선 사항 •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적절성 •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의 개선 사항

자료: 필자 작성.

2. 아동수당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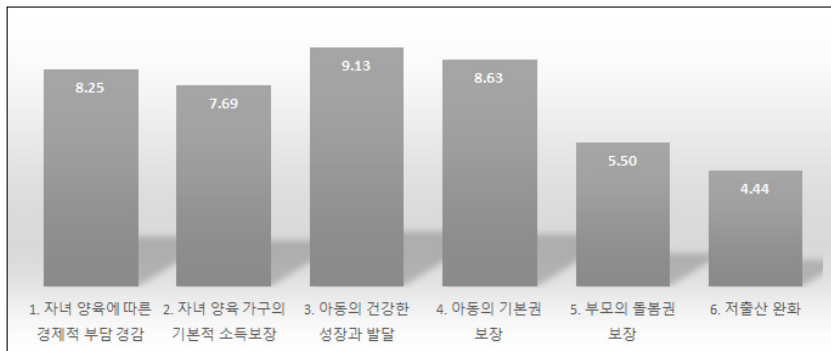
기존의 아동수당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목적은 대체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저출산 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된 아동수당의 각 목적이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적합한지에 관해 1점(부적합)부터 10점(매우 적합)의 척도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목적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아동수당의 목적으로서의 적합성에 과반의 전문가가 10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한 명의 전문가만 6점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적절한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아동수당의 목적으로서의 적합성에 7명의 전문가가 10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6점부터 9점까지 다양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다음으로 적절한 아동수당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 4명의 전문가가 10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6점부터 9점까지 다양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6점 미만으로 적합성이 낮게 평가된 아동수당의 목적은 부모의 돌봄권 보장과 저출산 완화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의 돌봄권 보장이라는 목적은 평균 5.5점으로 2점부터 8점까지의 점수로 평가되었다. 저출산 완화라는 목적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6점 미만을 부여하여 적합도 점수는 평균 4.4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적합(1점)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명이 있었다.

[그림 4-26] 아동수당의 목적

(단위: 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저출산 완화 외의 목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빈곤 예방과

아동 가구의 빈곤 완화, 자녀를 둔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소득 형평성 제고 또는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와 같은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목적이 적합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돌봄의 국가·사회 책임, 국가의 양육 공동 책임이라는 목적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전반의 지원 체계 확립이라는 목적이 적합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아동수당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인만큼 아동과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목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저출산 대책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저출산 완화라는 목적은 아동수당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적합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목적으로는 적합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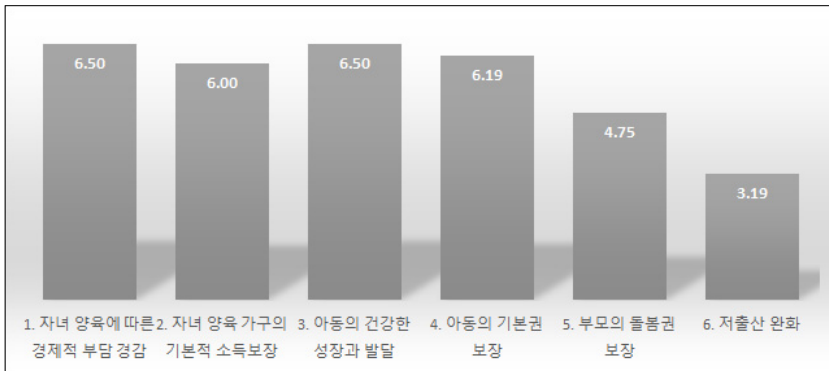
전문가 조사를 통해 기존의 아동수당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수당의 목적(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저출산 완화 등) 달성을 위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아동수당이 기존에 논의된 아동수당의 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도를 1점(전혀 효과 없음)부터 10점(매우 효과적임)의 척도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결과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평균 6점 이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서는 2인의 전문가가

10점을 부여하였고, 1인의 전문가가 3점을 부여하여 평균적으로 6.5점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3점부터 10점까지 다양하게 점수가 부여되어 평균적으로 6.5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부모의 돌봄권 보장과 저출산 완화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5점 미만으로 달성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우선 아동수당이 부모의 돌봄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2점부터 8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었고 평균 4.75점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는 과반이 1점을 부여하여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고, 평균 3.19점으로 효과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4-27] 아동수당의 효과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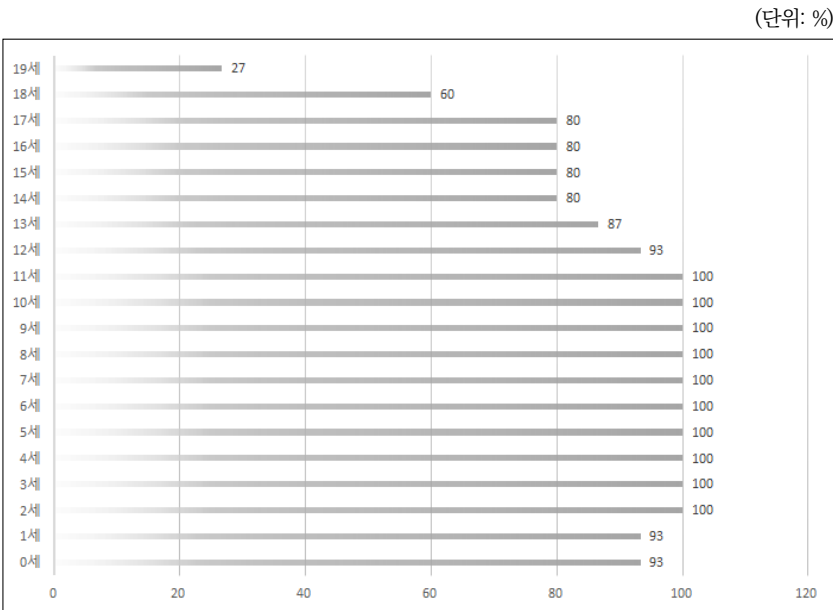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4. 아동수당의 적정 연령 및 금액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아동수당의 적정 연령과 금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 0~1세의 경우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감안해서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부터 월평균 약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체로 만 11세까지는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후 연령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여 전체 전문가의 27%가 만 19세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8] 아동수당의 적정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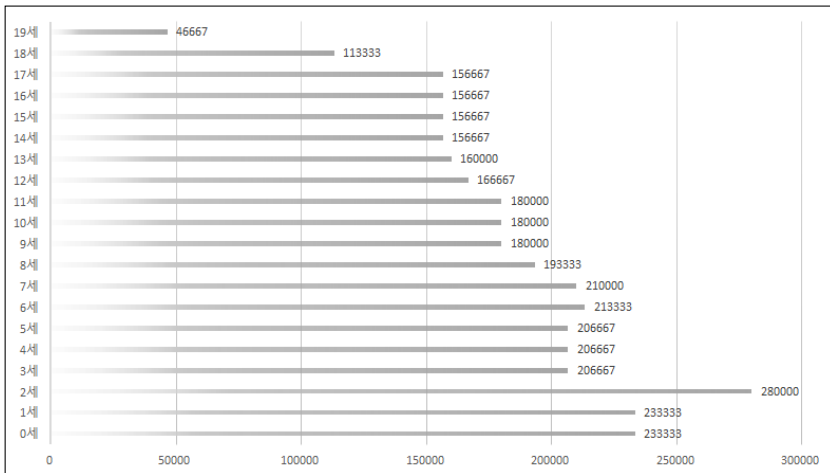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조세 지원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고려했을 때 연령별 아동수당의 적정 금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해당 연령 아동 대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하여 연령별 평균값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정 금액은 첫만남이용권 등 만 0~1세의 정부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만 3세 대상 금

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 3세의 경우 월평균 28만 원이 적절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나타났고, 만 19세의 경우는 월평균 4만 7천 원 정도가 적절한 금액으로 나타났다. 0세부터 만 19세까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할 경우 월평균 약 18만 2천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아동수당의 연령별 적정 금액

(단위: 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5. 아동 대상 정책의 지원 방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부담 비율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금, 서비스, 부모의 시간 지원 중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6.3%였고 찬성이 62.5%, 매우 찬성 31.1%로 나타났다. 서비스(돌봄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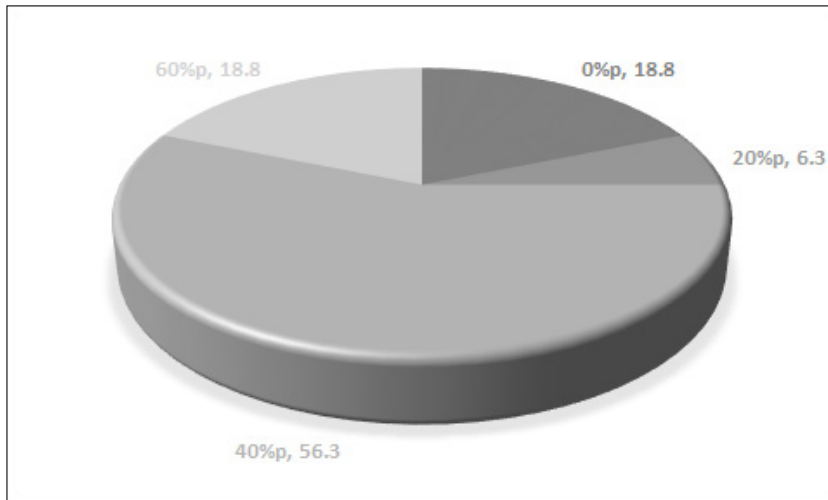
비스 및 교육 서비스 등)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 62.5%, 매우 찬성 31.3%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돌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이 18.8%, 매우 찬성이 82.1%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시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동 양육 가구의 자녀 양육으로 지출되는 비용에서 국가와 부모는 각각 어느 정도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국가와 부모가 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8%로 나타났고,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3.8%, 부모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로 나타났다. 책임 분담 비율은 20%부터 80%까지 나타났다.

국가와 부모 분담 비율의 차이는 대체로 40%p로 응답하였고, 20%p(6.3%)부터 60%p(18.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4-30]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책임 분담 비율 차이

(단위: %)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아동수당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수급 및 아동수당 수급 경험, 자녀 계획 및 정책 욕구 등의 내용에 관해 온라인 실태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심층적인 자녀 양육 관련 사항과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에 대한 경험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살펴보았다. FGI를 통해 현재의 자녀 양육 방식과 자녀 양육비,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 관련 사항과 각종 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방법과 사용처, 정부 지원 정책의 영향 및 개선점 등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욕구를 수렴하여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수당의 목적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관한 의견, 아동 대상의 현금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는 경우가 60% 정도, 모르는 경우가 40%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42.8%가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 출산 후에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수당의 목적에 있어서 아동수당 경험 가구 및 신혼 무자녀 가구의 70% 이상이 아동수당의 목적을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

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이 모두 적합한 것이며, 이 중 가장 적합한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의견이 가장 주도적이었다. 즉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정책의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수당의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의 적정 지원 연령과 월평균 적정 금액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수당 경험 가구가 아동 연령별로 아동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취학 연령대는 96% 정도, 초등학생 연령대는 87~92%, 중학생 이상 연령대는 77~8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적절한 현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0원으로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대체로 월평균 50만 원 전후였다. 신혼 무자녀 가구도 0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80% 이상이 19세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적절한 월평균 지원 금액으로는 미취학 연령의 경우는 약 90~100만 원 미만, 초등학생 연령은 약 107~110만 원, 중학생 연령은 약 120~130만 원, 고등학생 연령은 약 140만 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수요자와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만 11세까지는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0세부터 만 19세까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18만 2천 원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연령별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전문가가 제안한 지원 연령별 월평균 금액은 다음 표로 요약된다.

〈표 4-36〉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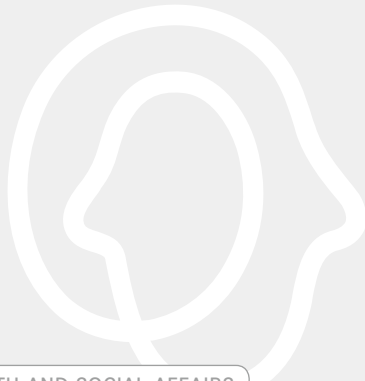
구분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전문가
0세	49.8	23.3
1세	48.3	23.3
2세	47.3	28.0
3세	46.5	20.7
4세	47.2	20.7
5세	48.3	20.7
6세	48.5	21.3
7세	49.0	21.0
8세	52.2	19.3
9세	51.5	18.0
10세	52.1	18.0
11세	52.1	18.0
12세	52.7	16.7
13세	53.6	16.0
14세	56.7	15.7
15세	56.8	15.7
16세	57.7	15.7
17세	61.1	15.7
18세	61.5	11.3
19세	63.1	4.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분석.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아동수당 재정 전망

제1절 추계 방법

제2절 추계 결과

제5장 아동수당 재정 전망

제1절 추계 방법

아동수당의 소요 재정은 향후 10년간(2023~2032년) 연도별 대상 아동 수와 1인당 지급액을 활용하여 추계하고자 한다. 우선 연도별 대상 아동 수는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1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수는 2019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보다 실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2021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되 2023~2032년간 중위 출산율, 중위 기대수명, 중위 국제 순이동을 가정하는 중위 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적용한다. 추가로 장래인구추계 기준 시점인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될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의 아동 수를 적용하였다. 출생 순위별 아동의 수는 2022년 인구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출생 순위별 아동 비율이 향후 1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출생 순위별 아동 비율과 과거 10년간의 추세가 향후 1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출생 순위별 아동 비율을 적용하였다. 연간 아동수당에 소요되는 금액은 다음의 식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text{연간 소요 재정} = \text{아동수당 지급액(월)}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지급률}^* \times \text{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

* 아동수당 지급률은 지난 3년간의 지급률(97.2%, 97.7%, 97.5%)의 평균(97.47%)임.

재정 추계를 위한 시나리오의 기준은 대상과 금액의 확대이다. 대상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령 기준, 정책 수요자가 기대하는 지원 연령, 전문가가 판단하는 적정 연령을 감안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 17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금액은 아동수당 경험자들의 평균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월평균 금액 50만 원을 아동수당 대상 전체 연령에 적용하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월평균 금액인 20만 원을 아동수당 대상 전체 연령에 적용한다. 출생 순위별 차등 금액은 20만 원과 50만 원을 토대로 첫째자녀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액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여덟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행 유지,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상 연령 확대,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금액 확대, 네 번째 시나리오는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경우이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금액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되 금액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일곱 번째 시나리오는 금액을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여덟 번째 시나리오는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되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이다. 각 시나리오는 대상 아동 수를 적용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라 중위 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와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두 가지의 재정 전망 결과가 도출된다.

〈표 5-1〉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구분	대상	월 급여
시나리오 1	8세 미만	10만 원
시나리오 2	18세 미만	10만 원
시나리오 3-1	8세 미만	20만 원
시나리오 3-2		50만 원
시나리오 4-1	18세 미만	20만 원
시나리오 4-2		50만 원
시나리오 5-1	8세 미만	연령별 차등(전문가)
시나리오 5-2		연령별 차등(정책 수요자)
시나리오 6-1	18세 미만	연령별 차등(전문가)
시나리오 6-2		연령별 차등(정책 수요자)
시나리오 7-1	8세 미만	출생 순위별 차등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
시나리오 7-2		출생 순위별 차등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
시나리오 8-1	18세 미만	출생 순위별 차등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
시나리오 8-2		출생 순위별 차등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

2023~2032년까지 출생 순위별 출생아 수 비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첫째아 비율의 증가이다. 특히 2021~2022년 사이에 큰 폭으로 높아졌는데, 2021~2022년의 예외적인 빠른 증가 추이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22년의 출생아 수 비중이 유지된다는 가정보다는 과거 10년의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과거 10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아 비중의 증가와 함께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셋째아 비중이 약간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둘째아 대비 셋째아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2021년과 202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여기에서는 둘째 이상 출생아(둘째아

와 셋째아 이상의 합)에서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의 2012~2022년 추이가 향후 1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전망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아의 비율은 2012~2022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첫째아 비율 변화 추이가 향후 1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2012~2022년 연평균 첫째아 비율 변화를 계산하면 1.12%p이므로 2022+y년의 첫째아 비율은 $(62.7+1.12y)\%$ 로 계산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둘째아 비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할 수 있다. 둘째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78.4% $[38.1/(38.1+10.5)]$, 2022년 81.8% $[30.5/(30.5+6.8)]$ 이다. 따라서 2012~2022년 둘째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의 연평균 변화는 0.34%p이므로 2022+y년의 둘째아 비율은 $[100-(62.7+1.12y)] \times (0.818+0.0034y)$ 이다.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첫째아와 둘째아 비율의 잔차 $[100-(\text{첫째아 비율}+\text{둘째아 비율})]$ 로 계산된다. 이 방법에 따라 2032년도의 첫째아 비율은 73.9%, 둘째아 비율은 22.2%, 셋째아 이상 비율은 3.9%로 추산할 수 있다.

〈표 5-2〉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율: 2012~2022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첫째아	51.5	51.6	51.9	52.3	52.5	52.7	54.5	55.7	56.6	56.8	62.7
둘째아	38.1	38.0	38.1	38.0	37.7	37.5	36.9	35.8	35.1	35.0	30.5
셋째아 이상	10.5	10.4	10.1	9.7	9.8	9.8	8.7	8.5	8.3	8.2	6.8

자료: 통계청 (2023). 2022년 출생 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6806에서 2023.9.2. 인출.

제2절 추계 결과

1. 현행 유지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1은 현행 아동수당의 기준을 향후 10년간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이다. 현행대로 만 7세까지 아동 1인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2조 9,58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2조 5,68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25조 1,623억 원, 연평균 2조 5,162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3〉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1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29,742	29,588.87
	2024	2,327,864	27,227.63
	2025	2,175,590	25,446.57
	2026	2,075,841	24,279.87
	2027	2,017,717	23,600.03
	2028	2,001,645	23,412.04
	2029	2,016,810	23,589.42
	2030	2,055,390	24,040.66
	2031	2,116,450	24,754.85
	2032	2,195,805	25,683.01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68,227	30,039.01
	2024	2,406,180	28,143.64
	2025	2,292,600	26,815.17
	2026	2,217,500	25,936.77
	2027	2,169,955	25,380.66
	2028	2,150,299	25,150.76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9	2,147,661	25,119.90
	2030	2,143,748	25,074.13
	2031	2,131,704	24,933.26
	2032	2,112,680	24,710.75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6만 명의 아동에게 약 3조 3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11만 명의 아동에게 약 2조 4,71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현행 지급 기준을 유지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26조 1,304억 원, 연평균 2조 6,130억 원으로 추계된다.

2. 대상 연령 확대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2는 대상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이다. 만 17세 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8조 2,40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2,89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71조 8,700억 원, 연평균 7조 1,870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8조 2,85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2,82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72조 9,852억 원, 연평균 7조 2,985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4〉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2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45,642	82,408.65
	2024	6,836,570	79,963.26
	2025	6,614,945	77,371.04
	2026	6,379,689	74,619.39
	2027	6,190,896	72,411.20
	2028	6,021,333	70,427.92
	2029	5,828,071	68,167.45
	2030	5,654,132	66,132.99
	2031	5,498,111	64,308.11
	2032	5,376,907	62,890.46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84,127	82,858.78
	2024	6,914,886	80,879.27
	2025	6,731,955	78,739.64
	2026	6,521,348	76,276.29
	2027	6,343,134	74,191.83
	2028	6,169,987	72,166.64
	2029	5,958,922	69,697.94
	2030	5,753,044	67,289.90
	2031	5,551,270	64,929.87
	2032	5,371,024	62,821.65

3. 지급 금액 확대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3-1은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월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이고, 시나리오 3-2는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월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이다. 만 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3-1)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5조 9,17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5조 1,36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

리오 3-1) 중위 가정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50조 3,246억 원, 연평균 5조 324억 원으로 추계된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6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7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11만 명의 아동에게 약 4조 9,42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3-1)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52조 2,608억 원, 연평균 5조 2,261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5〉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3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3-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29,742	59,177.75	147,944.37
	2024	2,327,864	54,455.26	136,138.14
	2025	2,175,590	50,893.14	127,232.85
	2026	2,075,841	48,559.73	121,399.33
	2027	2,017,717	47,200.05	118,000.13
	2028	2,001,645	46,824.08	117,060.20
	2029	2,016,810	47,178.83	117,947.08
	2030	2,055,390	48,081.33	120,203.32
	2031	2,116,450	49,509.69	123,774.23
	2032	2,195,805	51,366.03	128,415.07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68,227	60,078.02	150,195.05
	2024	2,406,180	56,287.29	140,718.22
	2025	2,292,600	53,630.33	134,075.83
	2026	2,217,500	51,873.53	129,683.84
	2027	2,169,955	50,761.32	126,903.31
	2028	2,150,299	50,301.51	125,753.79
	2029	2,147,661	50,239.80	125,599.51
	2030	2,143,748	50,148.27	125,370.67
	2031	2,131,704	49,866.53	124,666.31
	2032	2,112,680	49,421.50	123,553.75

만 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3-2)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14조 7,94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12조 8,41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3-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25조 8,115억 원, 연평균 12조 5,812억 원으로 추계된다.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6만 명의 아동에게 약 15조 19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11만 명의 아동에게 약 12조 3,55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3-2)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30조 6,520억 원, 연평균 13조 652억 원으로 추계된다.

4. 대상 연령 및 지급 금액 확대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4-1은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월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이고, 시나리오 4-2는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월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경우이다. 만 1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4-1)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16조 4,81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2조 5,78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때 향후 10년간(2023~2032년)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약 143조 7,401억 원, 연평균 14조 3,740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6조 5,71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12조

5,64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45조 9,704억 원, 연평균 14조 5,970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6〉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4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4-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45,642	164,817.29	412,043.24
	2024	6,836,570	159,926.51	399,816.29
	2025	6,614,945	154,742.09	386,855.21
	2026	6,379,689	149,238.79	373,096.97
	2027	6,190,896	144,822.39	362,055.98
	2028	6,021,333	140,855.84	352,139.60
	2029	5,828,071	136,334.90	340,837.25
	2030	5,654,132	132,265.98	330,664.95
	2031	5,498,111	128,616.21	321,540.53
	2032	5,376,907	125,780.91	314,452.28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84,127	165,717.57	414,293.92
	2024	6,914,886	161,758.55	404,396.36
	2025	6,731,955	157,479.28	393,698.19
	2026	6,521,348	152,552.59	381,381.47
	2027	6,343,134	148,383.67	370,959.16
	2028	6,169,987	144,333.27	360,833.18
	2029	5,958,922	139,395.87	348,489.68
	2030	5,753,044	134,579.81	336,449.52
	2031	5,551,270	129,859.75	324,649.37
	2032	5,371,024	125,643.29	314,108.23

만 1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4-2)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41조 2,04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31조 4,45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1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4-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359조 3,502억 원, 연평균 35조 9,350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41조 4,29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31조 4,10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17세까지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할 때(시나리오 4-2)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364조 9,259억 원, 연평균 36조 4,926억 원으로 추계된다.

5. 연령별 차등 지급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5-1은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월 지급액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이다. 시나리오 5-2는 현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월 지급 금액을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이다. 연령별 차등 금액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연령별 지원 금액(시나리오 5-1에 적용)과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별 지원 금액(시나리오 5-2에 적용)을 각각 적용하되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평균 금액을 적용하였다.

〈표 5-7〉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의 연령별 지급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전문가가 제시한 월평균 금액 (시나리오 5-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제시한 월평균 금액 (시나리오 5-2)
0세	23	50
1세	23	48
2세	28	47
3세	21	47

구분	전문가가 제시한 월평균 금액 (시나리오 5-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제시한 월평균 금액 (시나리오 5-2)
4세	21	47
5세	21	48
6세	21	49
7세	21	49
8세	19	52
9세	18	52
10세	18	52
11세	18	52
12세	17	53
13세	16	54
14세	16	57
15세	16	57
16세	16	58
17세	16	61

만 7세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5-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5,50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5조 7,77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5-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56조 1,924억 원, 연평균 5조 6,192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6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6,54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11만 명의 아동에게 약 5조 5,22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5-1)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58조 3,169억 원, 연평균 5조 8,317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8〉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5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5-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29,742	65,507.43	142,519.89
	2024	2,327,864	60,373.40	131,134.18
	2025	2,175,590	56,498.12	122,565.88
	2026	2,075,841	53,992.39	116,975.10
	2027	2,017,717	52,642.71	113,712.92
	2028	2,001,645	52,420.00	112,797.22
	2029	2,016,810	52,957.60	113,611.35
	2030	2,055,390	54,059.98	115,726.87
	2031	2,116,450	55,700.21	119,121.48
	2032	2,195,805	57,772.31	123,571.64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68,227	66,542.74	144,745.66
	2024	2,406,180	62,542.34	135,612.35
	2025	2,292,600	59,782.32	129,181.69
	2026	2,217,500	57,946.46	124,895.72
	2027	2,169,955	56,782.28	122,161.93
	2028	2,150,299	56,292.16	121,027.51
	2029	2,147,661	56,211.99	120,874.57
	2030	2,143,748	56,088.93	120,653.78
	2031	2,131,704	55,751.85	119,973.44
	2032	2,112,680	55,228.06	118,900.80

만 7세까지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5-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14조 2,52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12조 3,57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5-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21조 1,737억 원, 연평균 12조 1,174억 원으로 추계된다.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6만 명의 아동

에게 약 14조 4,74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11만 명의 아동에게 약 11조 8,90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5-2)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25조 8,027억 원, 연평균 12조 5,803억 원으로 추계된다.

6. 대상 연령 확대 및 연령별 차등 지급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6-1은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이고, 시나리오 6-2는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이다. 연령별 차등 금액은 전문가가 판단한 연령별 국가 지원 금액(시나리오 6-1에 적용)과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별 국가 지원 금액(시나리오 6-2에 적용)을 각각 적용하되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평균 금액을 적용하였다. 만 17세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6-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15조 5,28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2조 22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6-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35조 378억 원, 연평균 13조 15,038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5조 6,32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11조 9,35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6-1)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37조 4,360억 원, 연 평균 13조 7,436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9〉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6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6-1	시나리오 6-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45,642	155,286.52	431,871.62
	2024	6,836,570	149,894.59	420,293.18
	2025	6,614,945	144,481.45	407,710.80
	2026	6,379,689	139,158.99	393,594.15
	2027	6,190,896	135,052.97	382,411.30
	2028	6,021,333	131,582.91	372,265.35
	2029	5,828,071	127,877.06	360,053.67
	2030	5,654,132	124,732.81	348,783.42
	2031	5,498,111	122,086.18	338,290.69
	2032	5,376,907	120,224.60	329,959.59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84,127	156,321.83	434,097.39
	2024	6,914,886	152,063.52	424,771.35
	2025	6,731,955	147,765.66	414,326.61
	2026	6,521,348	143,113.07	401,514.78
	2027	6,343,134	139,192.53	390,860.30
	2028	6,169,987	135,455.07	380,495.64
	2029	5,958,922	131,131.45	367,316.89
	2030	5,753,044	126,996.30	354,352.23
	2031	5,551,270	122,967.86	341,448.09
	2032	5,371,024	119,352.62	329,986.71

만 17세까지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별 국가 지원 금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6-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43조 1,87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32조 9,96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별 국가 지원 금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6-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378조 5,234억 원, 연평균 37조 8,523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43조 4,09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32조 9,98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령별 국가 지원 금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시나리오 6-2)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383조 9,170억 원, 연평균 38조 3,917억 원으로 추계된다.

7.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7-1은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월 지급 금액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이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7-1에서는 전문가가 판단한 월평균 적정 국가 지원 금액인 2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고 둘째아와 첫째아는 각 각 15만 원과 10만 원으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7-2는 대상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월 지급액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이다. 시나리오 7-2에서는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금액인 5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고 둘째아와 첫째아는 각 20만 원씩 감소한 금액인 30만 원과 10만 원으로 적용하였다.

만 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7-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하면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3조 7,32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3조 11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7-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30조 5,749억 원, 연평균 3조 575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3조 7,32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3조 11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7-1)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 2032년) 약 31조 7,549억 원, 연평균 3조 1,755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10〉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7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7-1	시나리오 7-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29,742	37,327.05	60,531.04
	2024	2,327,864	34,071.87	54,598.92
	2025	2,175,590	31,545.52	49,839.95
	2026	2,075,841	29,829.90	46,488.14
	2027	2,017,717	28,730.00	44,128.05
	2028	2,001,645	28,232.29	42,708.83
	2029	2,016,810	28,172.14	41,932.09
	2030	2,055,390	28,531.04	42,007.74
	2031	2,116,450	29,194.88	42,524.38
	2032	2,195,805	30,114.46	43,413.33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2,568,227	37,873.98	61,368.52
	2024	2,406,180	35,180.11	56,284.86
	2025	2,292,600	33,195.96	52,337.51
	2026	2,217,500	31,824.00	49,495.21
	2027	2,169,955	30,870.60	47,349.90
	2028	2,150,299	30,323.49	45,858.76
	2029	2,147,661	30,019.33	44,730.88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7-1	시나리오 7-2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30	2,143,748	29,792.40	43,954.92
	2031	2,131,704	29,449.07	43,007.92
	2032	2,112,680	29,020.01	41,953.54

만 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7-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3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53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20만 명의 아동에게 약 4조 3,41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 만 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7-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46조 8,172억 원, 연평균 4조 6,817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257만 명의 아동에게 약 6조 1,36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211만 명의 아동에게 약 4조 1,95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 만 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7-2)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48조 6,342억 원, 연평균 4조 8,634억 원으로 추계된다.

8. 대상 연령 확대 및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 시 재정 전망

시나리오 8-1은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문가가 판단한 월평균 적정 국가 지원 금액인 2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고 둘째아와 첫째아는 각각 15만 원과 10만 원으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8-2는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금액인 5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고 둘째아와 첫째아는 각 20만 원씩 감소한 금액인 30만 원과 10만 원으로 적용하였다.

만 1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8-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10조 5,54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7조 7,03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1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8-1)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90조 5,522억 원, 연평균 9조 522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0조 6,09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7조 7,03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만 1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2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8-1)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91조 9,105억 원, 연평균 9조 1,911억 원으로 추계된다.

〈표 5-11〉 아동수당 재정 소요 시나리오 8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8-1	시나리오 8-2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45,642	105,546.56	174,885.90
	2024	6,836,570	102,177.86	168,752.19
	2025	6,614,945	98,640.26	162,381.75
	2026	6,379,689	94,829.17	155,390.79
	2027	6,190,896	91,669.57	149,392.65
	2028	6,021,333	88,691.39	143,437.43
	2029	5,828,071	85,319.55	136,744.12
	2030	5,654,132	82,230.00	130,499.46
	2031	5,498,111	79,382.50	124,586.22
	2032	5,376,907	77,035.06	119,464.50

구분	해당 연도	대상자 수(명)	재정 소요(억 원)	
			시나리오 8-1	시나리오 8-2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2023	7,084,127	106,093.49	175,723.38
	2024	6,914,886	103,286.10	170,438.14
	2025	6,731,955	100,290.71	164,879.31
	2026	6,521,348	96,823.27	158,397.85
	2027	6,343,134	93,810.17	152,614.50
	2028	6,169,987	90,782.60	146,587.36
	2029	5,958,922	87,166.74	139,542.92
	2030	5,753,044	83,642.02	132,678.96
	2031	5,551,270	80,175.62	125,895.25
	2032	5,371,024	77,033.92	119,668.21

만 1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8-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5만 명의 아동에게 약 17조 4,88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1조 9,466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8-2)할 때 중위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46조 5,535억 원, 연평균 14조 6,554억 원으로 추계된다.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는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23년 약 708만 명의 아동에게 약 17조 5,72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32년 약 537만 명의 아동에게 약 11조 9,66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즉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시나리오 8-2)할 때 2020년 합계출산율 유지 가정 인구추계 적용 시 향후 10년간(2023~2032년) 약 148조 6,426억 원, 연평균 14조 8,643억 원으로 추계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결과 종합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아동수당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현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계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수당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검토하였으며, 적절한 수준의 아동수당 금액과 지원 대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재정 추계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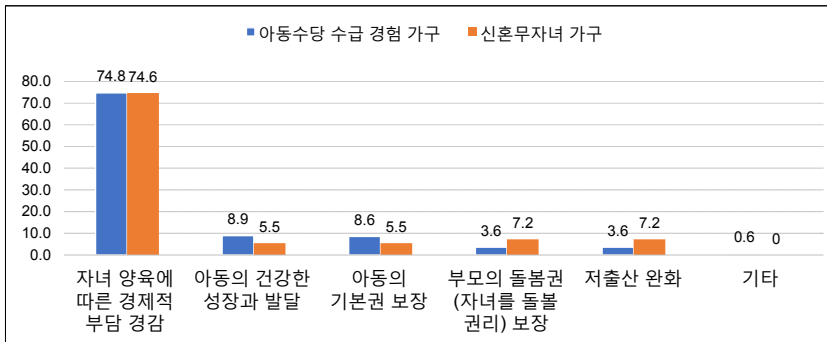
1. 아동수당의 목적

아동수당법 제1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수당의 목적은 복합적이며 수준 또한 다양하다.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8.9%, '아동의 기본권 보장' 8.6%, '부모의 돌봄권(자녀를 돌볼 권리) 보장' 3.6%, '저출산 완화' 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를 1~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서의 도움은 5.75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는 5.62점, 본인의 삶의 질에는 5.35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6-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아동수당 목적에 관한 인식

(단위: %)



주: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는 총 2,000명 응답, 신혼 무자녀 가구는 총 181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신혼 무자녀 가구가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모의 돌봄권 보장'과 '저출산 완화'가 각각 7.2%,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각각 5.5%로 나타났다. 즉 정책을 경험한 사람과 잠재적 수요자는 모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가 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 보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아동수당의 목적 중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적절한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순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조사 결과를 요약할 때 응답자에 따라 체감하고 지향하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 제1조에 명시한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수요자에게 체감되며, 전문가들에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은 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통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통해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2025년)의 목표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러하다. 즉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통해 아동과 아동 양육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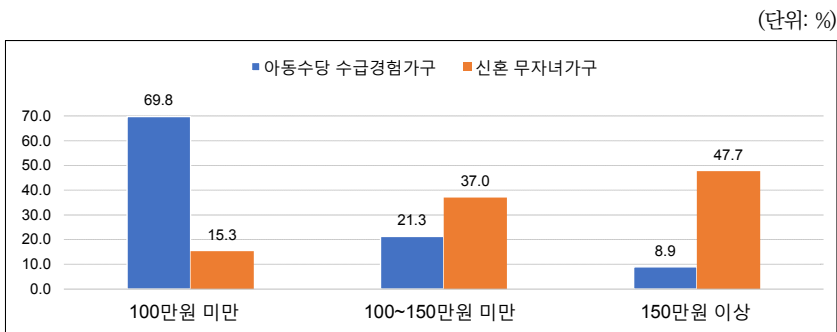
2.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을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지출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자녀 약 3천 2백 명의 월평균 양육비는 71.7만 원이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0~2세가

63.3만 원, 3~5세가 63.1만 원으로 미취학 자녀의 연령별 양육비에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고, 6~8세 73.2만 원, 9~11세 80.3만 원, 12세 이상 84.1만 원이었다. 취학 이후에는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월평균 양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 비용은 140.7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예상 양육 비용이 높아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예상 양육비를 130.8만 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평균 예상 양육 비용을 158.1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거주 주택이 자가이면 자가가 아닌 경우보다 예상하는 월평균 양육 비용이 높았다. 계획하는 자녀 수별로는 자녀 계획이 1명 이하일 때 월평균 예상 양육비를 137.6만 원으로 응답하였으나 2명 이상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128.7만 원이라고 답하였다.

[그림 6-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자녀 1인당 실제 양육비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예상 양육비



주: 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는 총 2,000명이 응답하였으나 자녀별 양육비를 계산하여 총 3,184명의 자녀가 포함되었고 신혼 무자녀 가구는 총 181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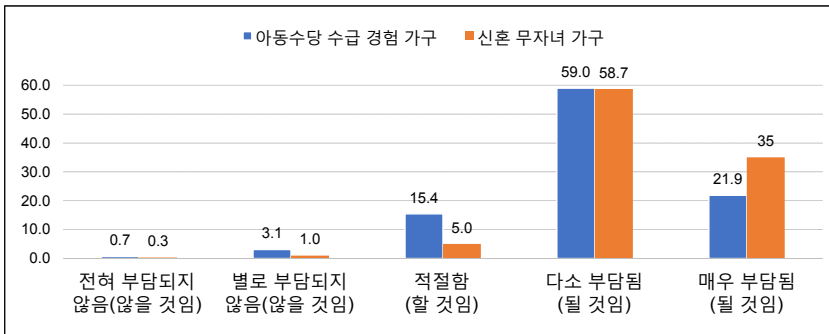
2)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 비용은 71.7만 원이며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예상 양육 비용은 평균 140.7만 원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아동수당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 3.98점으로 다소 부담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가 3.81점인 반면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가 4.37점으로 나타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가계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3]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의 전체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는 총 2,000명 응답, 신혼 무자녀 가구는 총 300명 응답.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다소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58.7%, 매우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35.0%였다. 즉 신혼 무자녀 가구의 93.7%는 자녀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적절할 것이라는 응답은 5%,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0.3%에 불과하였다. 예상 자녀 양육비의 가계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부담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정도를 다소 낮게 인식하였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예상하는 양육비의 수준도 높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예상 양육비 차이가 가구소득 차이보다는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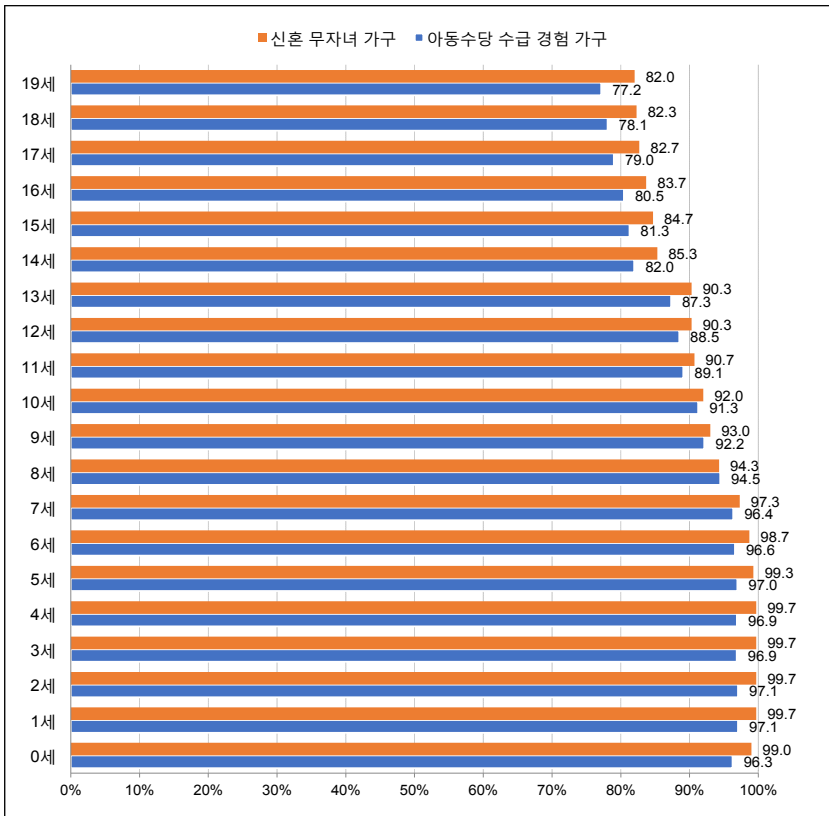
3. 아동수당 개선 방안: 적정 지원 연령 및 금액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월평균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원 기간은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취학 연령대는 96% 이상이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연령대는 약 87~92%, 중학생 이상 연령대는 약 77~82%가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령별로 자녀 양육 관련 정부의 적절한 현금 지원 금액(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0원으로 포함)에 대해서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50만 원 전후였다. 자녀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적절한 지원 금액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연령대 자녀의 경우 적절한 지원 금액 평균이 48만 원에서 49.8만 원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연령대 자녀는 52만 원에서 54만 원, 중학생 연령대 자녀는 평균 56만 원에서 58만 원, 고등학생 연령대 자녀는 평균 60만 원 초반이었다.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 한정하여 적절한 지원 금액을 살펴본 결과, 3세 48만 원에서 19세 81.8만 원까지 연령별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신혼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경우, 19세까지 연령별로 1인당 월평균 적정 지원 금액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동수당의 경험자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원 대상에서 0세를 제외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각 연령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두 80% 이상이었다.

[그림 6-4]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주: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는 총 2,000명 응답, 신혼 무자녀 가구는 총 30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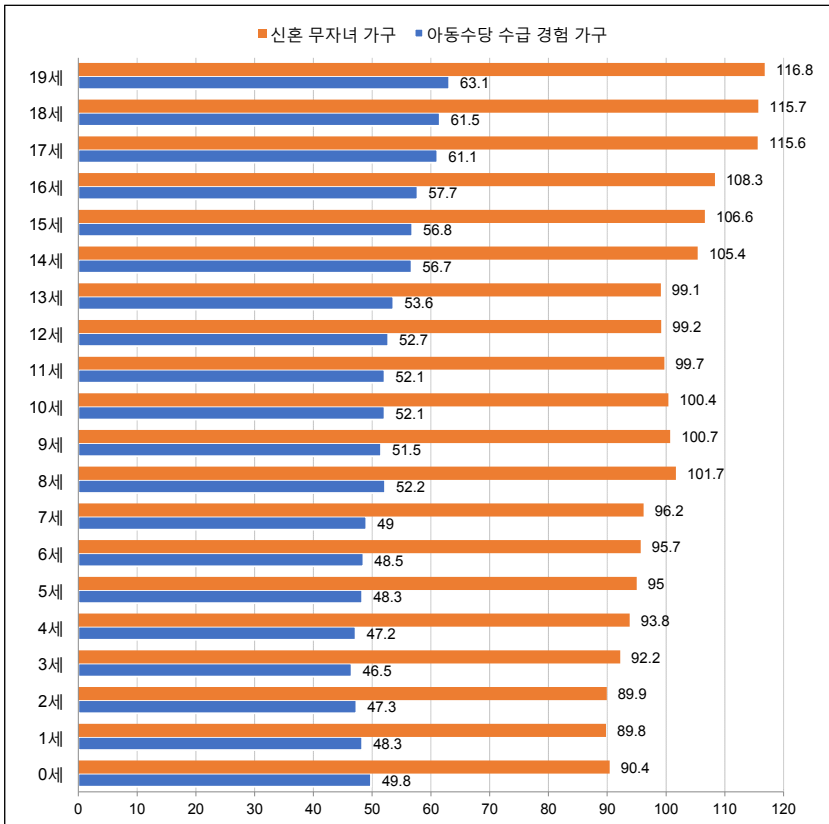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별 평균 적정 지원 금액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0원으로 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100만 원 전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적절 지원 금액이 높아졌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국한하여 월평균 적정 지원 금액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절 지원 금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대략 90~100만 원 미만을 적절한 지원 금액이라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 자녀는 107~110만 원, 중학생 자녀는 120~130만 원, 고등학생 자녀는 140만 원 정도를 적절한 지원 금액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수당 경험 가구와 아동수당을 경험하지 않은 신혼 무자녀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신혼 무자녀 가구가 양육비를 높게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 지원 금액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신혼 무자녀 가구의 이러한 경향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낮은 지원이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6-5]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신혼 무자녀 가구의 자녀 연령별 월평균 정부
적절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주: 1)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는 총 2,000명 응답, 신혼 무자녀 가구는 총 300명 응답.

2) 해당 연령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0만 원으로 포함.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원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아동수당의 적정 연령과 적정 지원 금액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 0~1세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감안해서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부터 월평균 약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6-1〉 자녀 연령별 정부 지원 필요도 및 월평균 적절 지원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월평균 금액 (0원 포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월평균 금액 (0원 포함)
0세	96.3	49.8	93.3	23.3
1세	97.1	48.3	93.3	23.3
2세	97.1	47.3	100.0	28.0
3세	96.9	46.5	100.0	20.7
4세	96.9	47.2	100.0	20.7
5세	97.0	48.3	100.0	20.7
6세	96.6	48.5	100.0	21.3
7세	96.4	49.0	100.0	21.0
8세	94.5	52.2	100.0	19.3
9세	92.2	51.5	100.0	18.0
10세	91.3	52.1	100.0	18.0
11세	89.1	52.1	100.0	18.0
12세	88.5	52.7	93.3	16.7
13세	87.3	53.6	86.7	16.0
14세	82.0	56.7	80.0	15.7
15세	81.3	56.8	80.0	15.7
16세	80.5	57.7	80.0	15.7
17세	79.0	61.1	80.0	15.7
18세	78.1	61.5	60.0	11.3
19세	77.2	63.1	26.7	4.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수급 가구 조사」 원자료,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 조사」 원자료 분석.

대체로 만 11세까지는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후 연령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여 전체 전문가의 27%가 만 19세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적정 금액은 첫만남이용권 등 만 0~1세의 정부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만 3세 대상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만 3세의 경우 월평균 28

만 원이 적정 금액의 평균값으로 나타났고, 만 19세의 경우는 월평균 4만 7천 원 정도가 적정 금액으로 나타났다. 0세부터 만 19세까지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경우 월평균 약 18만 2천 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동수당 수급 경험 가구와 전문가의 의견은 차이를 보인다.

4. 아동수당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향후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용 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에 기초한 분석 결과는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합계출산율과 유배우 출산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합계출산율을 0.011(분석 기간 평균의 0.9%), 25~39세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1.24명(분석 기간 평균의 1.1%), 30세 결혼 유배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9.35명(분석 기간 평균의 1.14%)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대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은 상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여성의 출산에 더 큰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젊은 유배우 여성의 선택성(selectivity)을 반영한 것이거나, 젊은 유배우 여성들의 출생아 중 첫째자녀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무자녀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 특히 강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다수의 결혼한 부부가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는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즉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출산의 경계에

더 가까이 있어서 비교적 소액의 현금 지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를 가질 결정을 내리거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의 공통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면, 2015년 이후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의 크기가 2015년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래에 들어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근래에 와서 더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시간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증가하면서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출산지원금 지급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첫째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지원금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합계출산율과 30세 결혼 유배우 출산율을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2020년 출산지원금이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미만 이었던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컸고, 800만 원 이상인 시군구에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25세 결혼 유배우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2020년 출산지원금이 800만 원 이상 이었던 시군구에서 압도적으로 크고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현금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한계 효과가 대체로 300만 원 이상 800만 원 구간 혹은 800만 원 이상 구간의 어떤 수준까지는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그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FGI 결과, 아동수당이

추가 자녀 계획이나 아동의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은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불만 혹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색내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덧붙여 아동수당 수급 가구 온라인 실태 조사에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중복 응답 가능),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고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지원 대상의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56.1%로 높았다. 또 비교적 어린 시기의 한시적 지원보다는 꾸준한 지원, 그리고 금액 확대에 대하여 더 큰 욕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금 태어나는 자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녀에 대한 혜택, 초중고등학생 자녀까지 생각한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며 이것이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등의 욕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아동수당은 보편적이며 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급 방식과 지급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이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금 지원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액과 급여 기간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FGI 결과 아동수당이 증액된다면 추가 자녀 출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아동 대상의 현금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최근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아동수당 정책의 저출산 완화 효과성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지자체의 출산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여 합계출산율이 0.011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을 8년간 지급하므로 단순 총액은 960만 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한 액수는 이보다 작다. 예컨대 할인율 5%를 적용하면 약 821만 원, 10%를 적용하면 약 716만 원이다. 분석에서 얻은 추정치에 이를 적용하면,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0.084~0.090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 합계출산율(0.78)의 10.8~11.5%로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감소했지만, 만약 아동수당 지급이 없었다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이라는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국가는 아동수당 지급의 주목적을 아동 보호 및 건강·인적 자본 개선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더하여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자원 투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현금 지원의 한계 효과가 대체로 일시금 환산 1,000만 원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는 추후 아동수당 지급액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느끼는 현금 지원의 할인율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경우 분할 지급보다 일시금 지급이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박창우, 송헌재, 2014)를 고려하건대 체감하는 할인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할인율 10% 적용 시 일시금 환산 가치가 71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 정도 액수를 증액해도 출산에 대한 한계 효과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또 일시금 환산 1,0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높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더 높은 대안적인 정책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또는 부모의 돌봄 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제도의 목적 실

현과 대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려할 때도 추가적인 차등 지급은 필요하다. 즉 아동수당을 보편적인 수당으로써 정액 급여로 지급하고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지급 방식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액을 차등화(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즉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 예방 또는 해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은 조세정책 위주로 되어 고소득 분위일수록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한 급여의 보편수당은 역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정찬미, 2017). 이 점을 고려할 때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차등 지급 방식 적용도 필요하다. 특히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1차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아기 이후 연령에 대한 지급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비가 증대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아동수당이 증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장애아이거나 만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 상황이라면 추가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자녀 수(또는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심층 분석 결과 현금 지원은 주로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 강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다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자녀의 수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에서 살펴본 국외 아동수당 제도에서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이

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차등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등적인 아동수당 지급은 출산을 제고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출산 의향이 비교적 강한 무자녀 여성과 달리 다자녀 여성에게는 소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별다른 추가 출산의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 자녀 혹은 다자녀 가구에 추가 출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추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육아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을 유지한다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편적인 정액 급여를 유지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은 범정부적 저출산에 대응한 중장기적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수당의 목적은 저출산 대응이라는 측면을 포함해야 하며, 자녀 수(또는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향후 현금과 바우처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7세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확대된다면 청소년에게는 주양육자의 계좌 대신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바우처 지급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아동수당의 사용처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바우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나이를 초등 단계 이상으로 상향하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발달계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수당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할 때 사교육비로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령 기준, 정책 수요자가 기대하는 지원 연령, 전문가가 판단하는 적정 연령을 감안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장기적으로 만 17세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은 단기적으로 현재 10만 원인 지급 수준을 적어도 20만 원 수준으로까지 증액해야 한다. 정책이 정책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의 국제적인 급여 수준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아동수당의 목적, 자녀 양육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부담과 정책에 대한 욕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아동수당의 확대는 필연적인 경로이다.



- 강지영 (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72(1), 63-87.
- 강지영, 전용, 안서연 (2020). 아동수당 도입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변화시켰는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7, 5-31.
- 고제이, 하솔잎, 나원희, 박소은, 이진이, 최환용 (2022).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미곤, 고제이, 이철희, 홍석철, 전병목, 여유진, ... 서효진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우영, 이정만 (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노동정책연구, 18(2), 61-98.
- 김현숙 (2021).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8(2), 23-47.
- 남상호 (2018).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4), 93-119.
- 남재현 (2021).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70), 133-166.
- 노대명, 김대중, 김영아, 김은경, 나병균, 박찬용, ... 봉인식 (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 대한민국 정부 (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 박창우, 송헌재 (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16(1), 5-34.
- 보건복지부 (2018).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1).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2023a).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3c).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2.4.22.).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도자료.
- 손동기 (2022). 프랑스 가족정책 개혁 내용과 시사점: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40(2), 219-250.
- 송현재, 김현아 (2014).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응용경제, 16(3), 165-199.
- 유해미, 박은정, 홍희정, 신윤정, 송신영 (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희, 민인식 (2018).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활용. 조사연구, 19(2), 25-49.
- 이래혁, 남재현 (2020).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9(3), 27-56.
- 이소영, 박종서, 장인수, 이철희, 이윤경, 오신휘 (2021). 제1차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강원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장인수, 이철희, 고은아, 김세진, 김은정, ... 최선영 (2022).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및 심층평가 모델개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숙, 하솔잎, 고숙자 (2021). 경기변동의 아동양육 영향 분석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아동수당 개선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복 (2004).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의 비교연구-저출산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아동복지연구, 2(2), 97-113.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을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철희 (2019).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효과 - 아동수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시사점. 김미곤 외,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37).
- 이철희 (2022).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이질성 분석: 현금지원 및 보육지원 정책의 소득분위별 효과. 한국경제포럼, 15(3), 53-85.
- 이철희, 이소영 (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 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경제학연구, 70(2), 61-93.
-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 민규량 (2023): 저출산 정책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예정.
- 장인수, 정찬우, 이소영, 이도훈, 김세진 (202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일주, 최영진 (2015). 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시사점. 법학연구, 23(2), 179-206.
-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찬미 (2017).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사회복지정책, 44(1), 47-78.
- 최경덕, 이소영, 장인수, 황남희, 오신휘, 최인선 (2023).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예정)
- 최영 (2017).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 5-15.
- 통계청 (2023). 2022년 출생 통계.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26806에서 2023.9.2. 인출.
- Böhmer, M., Matuschke, M., & Zweers, U. (2008). Dossier: Kindergeld in Deutschland-Familien wirksam fördern. Basel,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Boyer, George R. (1990), *An Economic History of the English Poor Law, 1750-18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A., Dehejia, R., & Romanov, D. (2013).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1), 1-20.
- Fuller, R., Landrigan, P. J., Balakrishnan, K., Bathan, G., Bose-O'Reilly, S., Brauer, M., ... & Yan, C. (2022). Pollution and health: a progress update. *The Lancet Planetary Health*, 6(6), e535-e547.
- Garganta, S., Gasparini, L., Marchionni, M., & Tappatá, M. (2017). The Effect of Cash Transfers on Fertility: Evidence from Argentin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6(1), 1-24.
-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 Hong, S. C., Kim, Y. I., Lim, J. Y., & Yeo, M. Y. (2016). Pro-natalist cash grants and fertility: A panel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32(2), 331-354.
- ILO(2015). *Social protection for children: Key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 Kauffman, Kyle D., and L. Lynne Kiesling (1997), "Was There a Nineteenth Century Welfare Magnet in the United States? Preliminary Results from New York City and Brooklyn."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37, 439-448.
- Magda, I., Kiełczywska, A., & Brandt, N. (2020). The effect of child benefit on female labor supply. *IZA Journal of Labor Policy*, 10(1).
- Milovanska-Farrington, S. (2021). The Effect of Child Benefits on Financial Difficulties and Spending Habits: Evidence from Poland's Family 500+ Program (No. 14274). IZA Discussion Papers.
- Paradowski, P. R., Wolszczak-Derlacz, J., & Sierminska, E. (2020). Inequality, poverty and child benefi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No. 799). LIS Working Paper Series.

- Parent, D., & Wang, L. (2007).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in Canada: quantum vs tempo effec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40(2), 371-400.
- Rainer, H., Bauernschuster, S., Danzer, N., Hener, T., Holzner, C., & Reinkowski, J. (2012). Kindergeld (No. 60). ifo Forschungsberichte.
- Riphahn, R. T., & Wijnck, F. (2017).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0(4), 1135-1184.
- Schirle, T. (2015). The effect of universal child benefits on labour suppl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e*, 48(2), 437-463.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6).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https://www.ssa.gov/policy/docs/progdesc/ssptw/>에서 2017. 9. 22. 인출.
- Sorvachev, I., & Yakovlev, E. (2020). Short-and long-run effects of a sizable child subsidy: evidence from Russia (No. 13019). IZA Discussion Papers.
- こども未来戦略会議. (2023.6.13.). 「こども未来戦略方針」案.
- 아동수당법 제1조, 법률 제19455호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 2023.6.1. 인출.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의안 현황. (<https://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32&cntsDivCd=BILL>). 2023.9.2. 인출.
- 독일 아동수당 관련 웹사이트. (<https://www.kindergeld.org>). 2023.6.2. 인출.
-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 2023. 9.26. 인출.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 2023.6.2. 인출.
- 프랑스 가족수당 관련 웹사이트. (<https://expat-in-france.com/child-benefit-in-france/>, <https://www.welcometofrance.com/en/fiche/family-allowances>). 2023.6.2. 인출.



[부록 1]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 설문지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주관 기관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명 연구위원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혜 전문연구원 (전화: 044-287-8264)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연령, 지역 등), 자녀 양육 관련 사항, 정책 요구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수집 및 이용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이해하였고,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동의학 ☐ 동의학안학

2023년 월 일 조사대상자 :

6. 출생순위별 자녀의 출생년월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았습니까?

출생 순위	6-1. 출생년월	6-2. 자녀 장애 여부	6-3. 아동수당 수급 경험	6-4. 아동수당 수급 시기 (6-3 ②, ③ 응답자)	6-5. 아동수당을 받기 전과 비교해서 받은 이후 자녀 양육비 지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6-4 ② 응답자)	6-6. 양육비 관련 다음 항목 중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까? (6-5 ① 응답자)
첫째아	____년 ____월	① 장애 있음 ② 장애 없음	① 받아본 적 없음 ② 과거에 받은 적 있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① 생후 6개월 이전부터 ② 생후 6개월 부터	①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② 변화가 없었다	① 유아동용품비 ② 식간식비 ③ 돌봄서비스비 ④ 교육비(학원비) ⑤ 의료비 ⑥ 저축, 보험, 투자(주식 등) ⑦ 기타()
둘째아	____년 ____월	① 장애 있음 ② 장애 없음	① 받아본 적 없음 ② 과거에 받은 적 있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① 생후 6개월 이전부터 ② 생후 6개월 부터	①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② 변화가 없었다	① 유아동용품비 ② 식간식비 ③ 돌봄서비스비 ④ 교육비(학원비) ⑤ 의료비 ⑥ 저축, 보험, 투자(주식 등) ⑦ 기타()
...	____년 ____월	① 장애 있음 ② 장애 없음	① 받아본 적 없음 ② 과거에 받은 적 있음 ③ 현재 받고 있음	① 생후 6개월 이전부터 ② 생후 6개월 부터	①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② 변화가 없었다	① 유아동용품비 ② 식간식비 ③ 돌봄서비스비 ④ 교육비(학원비) ⑤ 의료비 ⑥ 저축, 보험, 투자(주식 등) ⑦ 기타()

[문6-1에서 2012년 10월 이전 출생자들은 문6-3의 1번 필수 응답]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256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인 만18세 기준(2005년 이후)부터 입력 가능]

8. 귀하와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구분	출생년월	
1) 본인	____년 ____월	
2) 배우자	____년 ____월	◎ 해당없음

< 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

※ 다음 문항은 막내 자녀(____년 ____월 출생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상기 자녀 정보에서 막내자녀 생년월이 표시되게 하기

※ 정책 종류별 해당 정책의 설명을 화면에 함께 제시

종류	정책 설명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현금(계좌)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1.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0세는 월 70만 원, 만1세는 월 35만 원 현금 지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는 어린이집 비용 월 51만4천 원을 뺀 나머지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지원, 만1세는 어린이집 비용만 지원 <table><tr><th colspan="3">2023년</th></tr><tr><th>연령</th><th>만0세</th><th>만1세</th></tr><tr><td rowspan="2">보육</td><td>사실 미이용 월 70 (현금)</td><td>월 35 (현금)</td></tr><tr><td>사실 이용 월 51.4 (아파트) + 월 18.6 (현금)</td><td>월 51.4 (아파트)</td></tr></table>	2023년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사실 미이용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사실 이용 월 51.4 (아파트) + 월 18.6 (현금)	월 51.4 (아파트)
2023년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사실 미이용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사실 이용 월 51.4 (아파트) + 월 18.6 (현금)	월 51.4 (아파트)										
보육·교육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지원	만 0~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유치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월 약 10만 원~60만 원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22년1월1일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개월수 및 장애여부, 지역(농어촌 여부) 등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금(계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귀하의 막내 자녀는 현재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금 지원을 얼마만큼 받고 있습니까?

종류	수급 여부	수금액
아동수당	① 비수급 ② 수급 ③ 잘 모름	
부모 급여	① 비수급 ② 수급 ③ 잘 모름	① 월 70만 원(0세) ② 월 35만 원(1세) ③ 잘 모름
보육·교육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비) 지원 (※ 부모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에 체크해 주세요.)	① 비수급 ② 수급 ③ 잘 모름	① 월____만 원 ② 잘 모름
가정양육수당 (※ '22년1월1일 이전 출생아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 보육료지원에 체크하고 가정양육수당에도 체크하는 경우 알람 표시가 뜨게 해주세요.)	① 비수급 ② 수급 ③ 잘 모름	① 월____만 원 ② 잘 모름

[보육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은 동시 수령이 안되게 설정함]

2. 귀하의 막내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 지역(시도, 시군구)에서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종류	수급 여부	수금액
일시금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한 번 받는 출산지원 금,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등)	① 비수급 ② 수급 ③ 잘 모름	① 지금까지 총 _____만 원 ② 잘 모름
분할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등)	① 비수급 ② 수급 ③ 잘 모름	① 지금까지 총 _____만 원 ② 잘 모름

〈 아동수당 관련 문항 〉

1. (※ 과거에 수급 경험이 있으나 현재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막내 자녀가 아동수당의 대상자였을 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대체로 어디에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 다둥이인 경우 나중에 태어난 자녀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 (※ 현재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귀하의 자녀가 받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대체로 어디에 어느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다둥이인 경우 나중에 태어난 자녀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사용 금액
해당자녀 비용	1) 유아동용품(유모차, 의류, 장난감, 기저귀 등) 비용	_____원
	2) 식·간식비	_____원
	3) 돌봄 서비스(양육도우미 비용, 보육비, 아이돌봄비 등) 비용	_____원
	4) 교육비(학원비 등)	_____원
	5) 병원, 약국 등 의료비	_____원
	6)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 투자(주식 등) 비용	_____원
	7) 기타 비용 ()	_____원
해당자녀 외 가족 비용		_____원

2. 귀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②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③ 아동의 기본권 보장 ④ 부모의 돌봄권(자녀를 돌볼 권리) 보장
⑤ 저출산 완화 ⑥ 기타()
3. 귀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 3-1번 문항으로)
②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고 있을 때 (→ 3-2번 문항으로)
③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 출산 후에 (→ 3-2번 문항으로)
- 3-1. 귀하가 그 자녀(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아동수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②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

[문5에서 1명 응답자는 3번 자동 응답]

- 3-2.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아동수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②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
③ 해당없음(이후 자녀를 출산하지 않음)

4. 귀하는 아동수당이 다음 항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10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매우 도움이 되었음
1)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 부담 경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의 삶의 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는 아동수당의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②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지원 대상의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
 ④ 자녀가 많은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⑤ 다른 유사한 수당(부모급여,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과 합해야 한다
 ⑥ 기타()

6.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음)~10점(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함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자녀 계획 관련 사항 및 정책 욕구 〉

1. 귀하는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을 계획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 응답해 주시고,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0명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_____명 ② 미정

[추가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만 (1번 문항 1명 이상 응답자만)]

2. 추가 자녀 출산을 계획할 때 아동수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이상 부터 입력 가능]

3. 귀댁의 각 자녀별 월 평균 양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출생 순위	해당 자녀 양육비용(해당 자녀에게만 들어가는 양육 비용, 교육 비용 등)
첫째아	월 _____ 만 원
둘째아	월 _____ 만 원
...	월 _____ 만 원

4. 귀댁의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다소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5. 귀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각 연령별로 1명 당 월 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총 금액으로 응답해 주세요.

※ 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0원을 입력해주세요.

연령	지원 금액
0세	월 _____ 만 원
1세	월 _____ 만 원
2세	월 _____ 만 원
3세	월 _____ 만 원
...	월 _____ 만 원
18세	월 _____ 만 원
19세	월 _____ 만 원

6. 출산 및 자녀양육 정책 관련하여 제안해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심층면접조사 참여 의향 확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본 조사에서 응답한 내용과 관련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 소정의 답례(수당)를 제공합니다.

1. 귀하께서는 7~10월에 진행되는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2. 심층면접조사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하신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기간 후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 조사 종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하는 자 : 엠브레인리서치
- 수집 및 이용 목적 : 실태면접조사 대상자 선정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연령,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거주형태, 아동수당
수급 자녀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6개월간

3. 심층면접조사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기간 후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① 동의합니다 [→ 다음 페이지 안내문 제시 후 조사 종료]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 조사 종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공/이용 목적 : 심층면접조사 진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연령, 휴대전화번호, 거주지역, 거주형태, 아동수당 수급 자녀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심층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심층면접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의향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을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설문지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주관 기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이소영 연구위원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지혜 전문연구원 (전화: 044-287-8264)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연령, 지역 등), 자녀 양육 관련 사항, 정책 욕구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실태 및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및 보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수집 및 이용됩니다.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조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23년 월 일 조사대상자 : _____

〈 기본 사항 〉

1. 귀하는 현재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결혼년월 ____년 ____월) ※ 2018년 07월 이전 결혼한 경우 조사 대상 아님
(※ 결혼년월은 혼인신고, 결혼식, 동거일 등 본인이 결혼한 날로 생각하는 일자 작성)
- ② 없다 ※ 조사 대상 아님

2. 귀하와 배우자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임신 중 ※ ①, ② 조사 대상 아님
- ③ 아니오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18세 이상만 입력 가능]

4. 귀하와 배우자의 연령은 만으로 몇 살입니까?

- 1) 본인: 만 ____세 2) 배우자: 만 ____세

5.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____시/도 ____시/군/구

[문5에서 서울, 대전, 광주 응답자는 자동으로 "① 동" 지역 선택하고 다음 문항으로 이동]

5-1. 귀하의 거주 지역은 동 지역입니까 읍 또는 면 지역입니까?

- ① 동 ② 읍 또는 면

6. 귀하와 배우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 ____ 배우자: ____

- ① 정규직 임금근로자 ②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함)
- ⑥ 비경제활동 (무직,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 없음)

7.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⑥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 ⑦ 무상(부모님댁, 관사, 사택 등) ⑧ 기타()

266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8.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공적 이전 소득(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현금 및 현물 등), 사적 이전 소득(친인척 등으로부터 받는 현금 및 현물)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세금 공제 전 금액)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⑥ 500~600만 원 미만
 ⑦ 600~700만 원 미만 ⑧ 700~800만 원 미만 ⑨ 800~900만 원 미만
 ⑩ 900~1000만 원 미만 ⑪ 1000만 원 이상

〈 자녀 계획 관련 사항 및 정책 욕구 〉

9. 귀하와 배우자는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입니까?

(※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0명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_____명 ② 미정

[9번 문항 1명 이상 응답자만]

10. 귀하와 배우자는 첫 번째 자녀를 언제 출산할 계획입니까?

- ① 1년 이내 ② 1년 후 ~ 2년 이내 ③ 2년 후 ~ 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모르겠음/미정

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자녀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정책 종류별 해당 정책의 설명을 화면에 함께 제시

종류	정책 설명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현금(계좌)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부모 급여	2023년 <table><tr><th>연령</th><th>만0세</th><th>만1세</th></tr><tr><td rowspan="2">보육</td><td>사립 미이용 월 70 (현금)</td><td>월 35 (현금)</td></tr><tr><td>사립 이용 월 51.4 (비유치원) 월 186 (현금)</td><td>월 51.4 (비유치원)</td></tr></table> 1.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0세는 월 70만 원, 만1세는 월 35만 원 현금 지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는 어린이집 비용 월 51만4천 원을 뺀 나머지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지원, 만1세는 어린이집 비용만 지원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사립 미이용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사립 이용 월 51.4 (비유치원) 월 186 (현금)	월 51.4 (비유치원)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사립 미이용 월 70 (현금)	월 35 (현금)							
	사립 이용 월 51.4 (비유치원) 월 186 (현금)	월 51.4 (비유치원)							
보육·교육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비) 지원	만 0~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유치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월 약 10만 원~60만 원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22년1월1일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개월수 및 장애여부, 지역(농어촌 여부) 등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금(계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8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16. 귀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언제까지 그리고 각 연령별로 1명 당 월 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총 금액으로 응답해 주세요.

※ 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0원을 입력해주세요.

연령	지원 금액
0세	월 _____ 만 원
1세	월 _____ 만 원
2세	월 _____ 만 원
3세	월 _____ 만 원
...	월 _____ 만 원
18세	월 _____ 만 원
19세	월 _____ 만 원

17. 출산 및 자녀양육 정책 관련하여 제안해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설문을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아동수당 효과성 관련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의 효과성을 분석해보고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귀한 고견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8일(월)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 의: 이지혜 전문연구원(yijihye@kihasa.re.kr)

목적

문1. 아동수당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수당의 목적으로서의 적합 정도를 1점(부적합)~10점(매우 적합)으로 기입해 주세요.

세부 목적	적합도
1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점
2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보장	점
3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점
4 아동의 기본권 보장	점
5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점
6 저출산 완화	점
7 기타(위 항목 외 아동수당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기입해 주세요)	점
8 기타()	점
9 기타()	점
10 기타()	점

효과성

문2. 아동수당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전혀 효과 없음)~10점(매우 효과 있음)으로 기입해 주세요.

세부 목적	효과성
1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점
2 자녀 양육 가구의 기본적 소득보장	점
3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점
4 아동의 기본권 보장	점
5 부모의 돌봄권 보장	점
6 저출산 완화	점
7 기타(위 항목 외 아동수당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기입해 주세요)	점
8 기타()	점
9 기타()	점
10 기타()	점

개선 방안

문3.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동수당은 연령별로 월 평균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0원으로 기입해 주세요)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유사한 아동 대상 현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세요.)

만연령	정책명	지원 금액
0세	첫만남이용권	연간 20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24년부터 월 1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514천원은 보육료 바우처, 186천원은 현금
	아동수당	월 10만 원
1세	부모급여	월 35만 원('24년부터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보육료 바우처
	아동수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2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보육료	월 375천 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어린이집 미이용)
3~5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보육·교육비	월 280천 원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6~7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0~20세	조세지원	인적공제, 세액공제, 출산공제 등

※ 지자체 지원금은 지역별, 연령별 상이

만연령	아동수당 적정 금액
0세	만 원
1세	만 원
2세	만 원
3세	만 원
4세	만 원
5세	만 원
6세	만 원
7세	만 원
8세	만 원
9세	만 원
10세	만 원
11세	만 원
12세	만 원
13세	만 원
14세	만 원
15세	만 원
16세	만 원
17세	만 원
18세	만 원
19세	만 원

문4. 보편적인 수당으로 월별 주양육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소득별 또는 출생 순위별 차등 지급,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 등)

문5. 국가가 아동양육가구를 지원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방식	동의 정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1 현금 지원				
2 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등)				
3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 지원(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문6.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양육비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는 각각 어느 정도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적정 분담 비율
국가	%
부모	%
합계	100%

문7. 기타 **아동수당**과 다른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자체 유사 수당 등)에 대한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